

#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5년 여름호  
Vol. 43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동향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2  
(재무제표 개정 사항)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재정통계 동향  
2024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공기업·준정부기관·공익법인회계 동향  
2024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분석

# CONTENTS

## 2025년 여름호

Vol. 43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 국가회계 재정통계

### vol. 43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5년 여름호

**발행인** 이 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분석팀장(결산분석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전화** 044-414-2440(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5년 6월 30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 국가회계 동향

- 04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2(재무제표 개정 사항)
- 16 2025년 1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 63 해외 재무결산 동향(캐나다)
- 69 『2024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 발간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72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 75 2025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7~9월)



## 재정통계 동향

- 80 2024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 81 『2023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 84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 공기업·준정부기관·공익법인회계 동향

- 94 2024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분석
- 106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안내(9~11월)
- 108 2023년 공익법인 재무 현황



## 공지사항

- 131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 국가회계 동향



-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2(재무제표 개정 사항)
- 2025년 1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 해외 재무결산 동향(캐나다)
- 『2024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 발간

# 01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2

## (재무제표 개정 사항)



### 가. 시리즈의 구성

국가결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결산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결산보고서 체계가 개편되었으며, 2025회계연도부터 개편된 내용을 적용하여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이를 맞아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총 4개의 시리즈로 구성하여 소개할 계획이다. 앞서 2025년 봄호에서 시리즈 1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각 시리즈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시리즈 1: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시리즈 2: 재무제표 개정 사항**

시리즈 3: 국가회계예규 및 계정과목(COA) 주요 개정 사항

---

시리즈 4: 결산보고서(결산개요, 주석) 주요 개정 사항

---

이 중 두 번째 시리즈인 '재무제표 개정 사항'에서는 재무제표 개정의 핵심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현금흐름표 신규 도입 등 재무제표 구성 서류의 변동사항, 재무제표의 개정 내용, 개정 배경 및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알림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종류와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 재정상태표 간소화

### 1) 장·단기 통합

재정상태표에 공시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개별 항목들을 장기 및 단기의 구분 없이 항목별로 통합하였다. 가령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의 계정을 합쳐서 투자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1년을 기준으로 현금화 가능 여부 및 상환 의무를 구분하는 장기, 단기 분류 방식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을 운용하는 정부 차원에서는 구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다만 상기 개정에 따라 재정상태표의 공시과목에서 장·단기의 분류 방식은 사라지지만, 실질적 분류 목적 등을 위해 하위레벨에서의 구분은 유지한다. 그 예시로 투자증권에 관한 장·단기 분류에 관한 부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8 금융상품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자산	금융자산	투자증권	지분증권	주식/단기
				주식/장기
				기타지분증권/단기
				기타지분증권/장기
			채무증권	국채/단기
				국채/장기
				공채/단기
				공채/장기
				지방채/단기
			〈후략〉	

## 2) 공시 계정과목 간소화

기존의 재정상태표는 공시항목이 많아 8페이지에 걸쳐 제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체계 개편을 통해 재정상태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공시 계정과목을 단순화 하였으며, 주석을 강화함으로써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부분을 보완하였다.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을 그룹별로 분류하는 중간 단계의 구분 기준과 관련하여 자산은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고, 부채는 차입부채와 총당부채 및 기타부채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들은 기존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보다 명료하게 계정 과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간소화된 재무제표를 통해 큰 분류의 계정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세부사항은 주석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표 1 재정상태표**

당기: 20XY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20XX년 12월 31일 현재

00부처, 00기금, 대한민국 정부

(단위: )

	주석	20XY	20XX
<b>자산</b>			
<b>I. 금융자산</b>			
1. 현금및현금성자산	X	XXX	XXX
2. 금융상품	X	XXX	XXX
3. 투자증권	X	XXX	XXX
4. 정부출자금	X	XXX	XXX
5. 대여금	X	XXX	XXX
6. 미수채권	X	XXX	XXX
7. 기타 금융자산	X	XXX	XXX
<b>II. 유·무형자산</b>			
1. 일반유형자산	X	XXX	XXX
2. 사회기반시설	X	XXX	XXX
3. 무형자산	X	XXX	XXX
<b>III. 기타자산</b>			
		XXX	XXX
<b>자산계</b>		XXX	XXX

**표 1** 의 계속

	주식	20XY	20XX
<b>부채</b>			
<b>I. 차입부채</b>		XXX	XXX
1. 국채	X	XXX	XXX
2. 차입금	X	XXX	XXX
3. 국고채무부담행위액	X	XXX	XXX
4. 기타 차입부채	X	XXX	XXX
<b>II. 총당부채</b>		XXX	XXX
1. 연금총당부채	X	XXX	XXX
2. 퇴직수당총당부채	X	XXX	XXX
3. 보증총당부채	X	XXX	XXX
4. 보험총당부채	X	XXX	XXX
5. 기타 총당부채	X	XXX	XXX
<b>III. 기타부채</b>		XXX	XXX
<b>부채계</b>		<b>XXX</b>	<b>XXX</b>
<b>순자산</b>			
I. 기본순자산		XXX	XXX
II. 적립금및잉여금		XXX	XXX
III. 순자산조정		XXX	XXX
<b>순자산계</b>		<b>XXX</b>	<b>XXX</b>
<b>부채와순자산계</b>		<b>XXX</b>	<b>XXX</b>

## ● 자산

세부 분류를 포함하여 73개의 자산 공시 항목을 15개 항목으로 크게 간소화하였다. 자산 과목을 금융상품, 일반유형자산 등 보다 넓은 분류의 계정과목 중심으로 표기하였으며, 장·단기 분류 폐지, 계정 항목의 총액법 대신 순액법으로의 개편 등이 반영되었다.

**표 2 재정상태표 개편(자산)**

개정 전(73개)	개정 후(15개)
<p><b>자산</b></p> <p>I. 유동자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금및현금성자산</li> <li>2. 단기금융상품</li> <li>3. 단기투자증권</li> <li>4. 미수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li> <li>미수채권대손충당금</li> <li>...</li> </ul> </li> </ol> <p>II. 투자자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기금융상품</li> <li>...</li> </ol> <p>III. 일반유형자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사용수익권</li> <li>...</li> </ul> </li> </ol> <p>IV. 사회기반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감가상각누계액</li> <li>도로사용수익권</li> <li>...</li> </ul> </li> </ol> <p>V. 무형자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재산권</li> <li>...</li> </ol> <p>VI. 기타비유동자산</p> <p>...</p>	<p><b>자산</b></p> <p>I. 금융자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금및현금성자산</li> <li>2. 금융상품</li> <li>3. 투자증권</li> <li>4. 정부출자금</li> <li>5. 대여금</li> <li>6. 미수채권</li> <li>7. 기타 금융자산</li> </ol> <p>II. 유·무형자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유형자산</li> <li>2. 사회기반시설</li> <li>3. 무형자산</li> </ol> <p>III. 기타자산</p>

## ● 부채

세부 분류 포함 24개의 부채 공시 항목이 15개 항목으로 간소화되었다. 자산과 마찬가지로 장·단기 분류 폐지, 계정 항목의 총액법 대신 순액법으로의 개편 등이 반영되었다.

총당부채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퇴직급여총당부채를 기타총당부채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면서, 퇴직수당총당부채와 보증총당부채를 공시항목으로 조정하는 등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는 개편도 함께 이루어졌다.

**표 3 재정상태표 개편(부채)**

개정 전(24개)	개정 후(12개)
<b>부채</b> I. 유동부채 1. 단기국채 ... 2. 단기공채 ... 3. 단기차입금 4. 유동성장기부채 5. 기타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II. 장기차입부채 1. 국채 국채할증발행차금 국채할인발행차금 2. 공채 공채할증발행차금 공채할인발행차금 3. 장기차입금 4. 기타장기차입부채 III. 장기총당부채 1. 퇴직급여총당부채 2. 연금총당부채 3. 보험총당부채 4. 기타장기총당부채 IV. 기타비유동부채 1. 장기미지급금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	<b>부채</b> I. 차입부채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액 4. 기타이자발생부채 II. 총당부채 1. 연금총당부채 2. 퇴직수당총당부채 3. 보증총당부채 4. 보험총당부채 5. 기타총당부채 III. 기타부채

### 다. 분야별 재정운영표(개정)

부처별 재정운영표를 분야별 사업원가 집계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분야별 순원가는 부처별 원가에서 간접비 성격의 항목들을 제외하고,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가를 예산 15대 분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개편 전후의 재정운영표 항목 구성 등의 비교는 <표 4>와 같다.

**표 4** 재정운영표 개편

기존 재정운영표			개편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			분야별 재정운영표		
대한민국			(단위: ) 대한민국		
	주석	20XY		주석	20XY
<b>I. 재정운영순원가</b>	X	XXX			총원가 수익 순원가
1. 중앙관서(A)		XXX	<b>I. 사업순원가</b>	X	XXX (XXX) XXX
2. 중앙관서(B)		XXX	1. 분야(A)		XXX (XXX) XXX
3. 중앙관서(C)		XXX	2. 분야(B)		XXX (XXX) XXX
4. 중앙관서(D)		XXX	3. 분야(C)		XXX (XXX) XXX
5. 중앙관서(E)		XXX	4. 분야(D)		XXX (XXX) XXX
6. 중앙관서(F)		XXX	5. ...		XXX (XXX) XXX
7. 중앙관서(G)		XXX	<b>II. 관리운영비</b>	X	XXX
...		XXX	<b>III. 비배분비용</b>	X	XXX
<b>II. 비교환수익 등</b>		XXX	<b>IV. 비배분수익</b>	X	XXX
1. 국세수익	X	XXX	<b>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b>		XXX
2. 부담금수익	X	XXX	<b>VI. 비교환수익 등</b>		XXX
3. 제재금수익	X	XXX	1. 국세수익	X	XXX
4. 사회보험수익	X	XXX	2. 사회보험수익	X	XXX
5. 채무면제이익	X	XXX	3. 부담금수익	X	XXX
6. 기타비교환수익	X	XXX	4. 제재금수익	X	XXX
7. 기타재원조달및이전	X	XXX	5. 기타 이전수익 등	X	XXX
<b>III. 재정운영결과(I - II)</b>		XXX	<b>VII. 재정운영결과(V - VI)</b>		XXX

중앙관서와 기금은 기존과 같이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를 작성하므로 중앙관서와 기금의 재정운영표와 국가 재정운영표의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기존 부처별 재정운영표는 주석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여 연속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였다.

## 라. 성질별 재정운영표(신설)

현행 재정운영표는 원천별 구분을 기반으로 수익 및 비용을 발생단계별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성질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충정보로 공시되었던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성질별 구분에 기반한 수익 비용의 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기 위함이다.

성질별 재정운영표에서 수익은 성질에 따라 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으로 분류하고, 비용은 성질에 따라 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으로 분류한다. 또한 유사한 성격의 여러 비용 항목을 통합하여 공시 과목을 단순화하였다. 일례로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인쇄비 등 여러 비용 항목은 운영비로 통합되었다.

###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③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세수익: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재정운영표 개정을 통해 정보이용자들은 분야별 재정운영표를 이용함으로써 분야별 순원가를 파악할 수 있고 예산결산 분야와의 비교 또한 가능해진다. 또한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통해 기존의 프로그램원가, 배분비용 및 수익, 비교환수익 등의 분류 대신 보다 직관적인 수익과 비용의 틀에 기반한 정보 확인을 할 수 있어 재정운영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서식은 <표 5>와 같다.

**표 5** 성질별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

	주식	20XY	20XX
<b>수익(I+II+III)</b>			
<b>I. 국세수익</b>		XXX	XXX
<b>II. 이전수익</b>		XXX	XXX
1. 사회보험수익	X	XXX	XXX
2. 부담금수익	X	XXX	XXX
3. 체재금수익	X	XXX	XXX
4. 기타 이전수익	X	XXX	XXX
<b>III. 국가운영수익</b>		XXX	XXX
1.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X	XXX	XXX
2. 연금수익	X	XXX	XXX
3. 이자수익	X	XXX	XXX
4. 배당수익	X	XXX	XXX
5. 자산처분이익	X	XXX	XXX
6. 자산평가이익	X	XXX	XXX
7. 기타 국가운영수익	X	XXX	XXX
<b>비용(IV+V)</b>			
<b>IV. 이전비용</b>		XXX	XXX
1. 국고보조사업비	X	XXX	XXX
2. 출연사업비	X	XXX	XXX
3. 사회보험비용	X	XXX	XXX
4. 지방교부금	X	XXX	XXX
5. 기타 이전비용	X	XXX	XXX
<b>V. 국가운영비용</b>		XXX	XXX
1.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X	XXX	XXX
2. 연금비용	X	XXX	XXX
3. 인건비	X	XXX	XXX
4. 이자비용	X	XXX	XXX
5. 운영비	X	XXX	XXX
6. 감가상각비	X	XXX	XXX
7. 자산평가손실	X	XXX	XXX
8. 기타 국가운영비용	X	XXX	XXX
<b>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b>		<b>XXX</b>	<b>XXX</b>

## 마. 현금흐름표 신설

발생주의 도입국의 대부분은 재무제표의 서류 중 하나로 현금흐름표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현금흐름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표를 신설하였다. 발생주의 회계 도입 당시에는 세입·세출결산을 통해 현금흐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도입을 보류하였고, 현재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를 작성 중이나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 내역만을 공시하여 실질적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구 조문〉	〈신 조문〉
<b>제5조(재무제표와 부속서류)</b>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 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b>제5조(재무제표)</b>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b>현금흐름표</b> 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 제53조의2(현금흐름표)

-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②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현금흐름표는 국가의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각 활동별 현금 조달의 원천 및 사용 결과 등 상세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별 설명은 <표 6>과 같다.

**표 6** 현금흐름의 활동별 분류

분류	설명
<b>운영활동</b>	- 국가의 기본적인 활동수행에 대한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 - 재정활동별 현금의 증감 파악 가능 - 예시: 국세수입(현금유입), 인건비(현금유출) 등
<b>투자활동</b>	- 국가가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 예시: 금융상품, 투자증권, 유형자산 등의 처분(현금유입) 및 취득(현금유출) 등
<b>재무활동</b>	- 국가지출재원 마련을 위한 부채 발행 및 상환 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정보 제공 - 정부 지출 중 조세수입 또는 세외수입 등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국채 발행 등의 규모를 파악 가능 - 예시: 국채 발행(현금유입) 국채 상환(현금유출) 등

현금흐름표는 운영활동 작성 방식에 따라 직접법 및 간접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법 방식은 운영활동 각각에 대한 현금흐름을 기재하는 반면, 간접법 방식은 재정운영결과에서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수익, 비용 등을 제외하여 운영활동 순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국가회계는 직접법 방식이 활동 내역을 명시적으로 공시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직접법 방식을 채택하였다. 현금흐름 표의 서식은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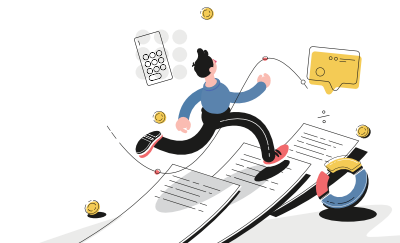
**표 7 현금흐름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OO부처, OO기금, 대한민국 정부		(단위: )	
	주석	20XY	20XX
<b>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X	XXX	XXX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XXX	XXX
(1) 국세수입		XXX	XXX
(2) 사회보험수익		XXX	XXX
(3) 부담금·제재금수입		XXX	XXX
(4) 이자수입		XXX	XXX
...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XXX	XXX
(1) 보조금 지급		XXX	XXX
(2) 출연금 지급		XXX	XXX
(3) 지방교부금 지급		XXX	XXX
(4) 사회보험지출		XXX	XXX
(5) 인건비 지급		XXX	XXX
(6) 이자지급		XXX	XXX
...			
<b>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X	XXX	XXX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XXX	XXX
(1) 금융상품, 투자증권 처분		XXX	XXX
(2) 대여금 회수		XXX	XXX
(3)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처분		XXX	XXX
(4) 무형자산 처분		XXX	XXX
...			

**표 7** 의 계속

	주식	20XY	20XX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XXX	XXX
(1) 금융상품, 투자증권 취득		XXX	XXX
(2) 대여금 지급		XXX	XXX
(3)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취득		XXX	XXX
(4) 무형자산 취득		XXX	XXX
...			
<b>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X	XXX	XXX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XXX	XXX
(1) 국공채 발행		XXX	XXX
(2) 차입금 차입		XXX	XXX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XXX	XXX
(1) 국공채 상환		XXX	XXX
(2) 차입금 상환		XXX	XXX
...			
<b>Ⅳ. 현금의 증감(Ⅰ+Ⅱ+Ⅲ)</b>		XXX	XXX
<b>V. 기초의 현금</b>		XXX	XXX
<b>Ⅵ. 기말의 현금(Ⅳ+Ⅴ)</b>		XXX	XXX



## 02 2025년 1분기 IPSASB<sup>1)</sup> 정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 가. 출장 개요

**목 적:**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정례회의 참석

**출장기간:** 2025. 3. 17.(월) ~ 2025. 3. 23.(일) (5박 7일)

**출 장 지:** 워싱턴 D.C., 미국

**출 장 자:** 임정혁 특수전문직2급



2025년 IPSASB 정례회의(2025. 3., 워싱턴 D.C.)

### 나. 주요 내용

#### 1. IPSAS 기준과 GFSM의 연계 강화(Strengthening the Linkages between IPSAS Standards and the GFSM)

‘IPSAS 기준과 GFSM의 연계 강화’ 프로젝트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PSASB’)가 IPSAS 기준과 「정부재정통계지침(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이하 GFSM)」 간의 불필요한 차이점을 해소해 나간다는 IPSASB의 주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12월부터 추진된 IPSASB의 새로운 과제이다.

1)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IPSAS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이하 GFS) 보고서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보고기준이나, 발생주의 기반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및 현금흐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006년 이후 IPSAS 기준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의 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정부재정통계를 GFSM 2014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IPSASB는 공공부문실체가 IPSAS 기준에 기반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통계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GFSM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IPSAS 국가들이 재무제표와 정부재정통계 보고서를 보다 용이하게 작성하도록 돕는 동시에 IPSAS의 도입을 유도하는 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IPSASB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IPSAS 기준과 GFSM 간 정합성 분석 대시보드’를 개발하여 매 정례회의에서 보고하고, 각 IPSAS 기준서의 인식·측정 규정이나 선택 가능한 회계정책 중 GFSM과 연계되는 부분과 인식·측정의 차이가 있어, 추가적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비강제적 지침(non-authoritative guidance)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 3월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IPSAS 기준과 GFSM의 연계 강화’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개요서(Project Brief)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하였다. 또한 IPSAS와 GFSM 간 정합성 분석 결과와 비강제 지침의 개발에 대한 접근법을 논의하였으며, 공개초안에 포함될 예시사례(illustrative examples)에 대한 착수 논의를 진행하였다.



**표 1** GFSM 연계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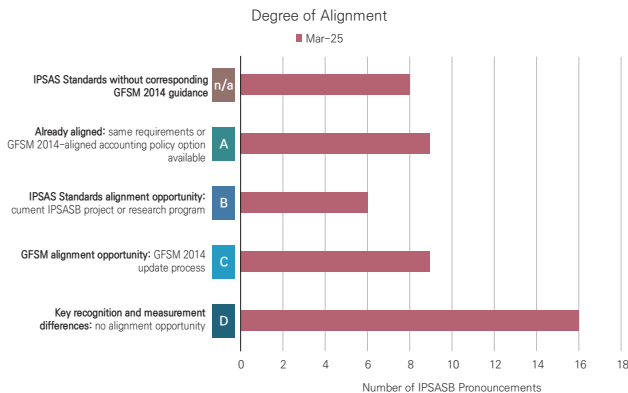
■ 안건 4: IPSAS 기준과 GFSM의 연계 강화 (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IPSAS Standards and the GFSM)	
안건 항목	내용
	<p><b>Project Brief: 승인(Approval)</b></p>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12월 회의에서 IPSASB는 'IPSAS 기준과 GFSM 간 연계 강화' 프로젝트 개요 (Project Brief)의 초안을 논의하였으며, 본 프로젝트 개요에는 다음의 두 단계로 구성된 프로젝트 추진 방안이 포함됨</li> <li>• <b>1단계:</b> IPSAS 기준과 GFSM 간 이미 서로 일치하는 영역, 또는 IPSAS 기준 내에서 GFSM과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영역 등을 명확히 함</li> <li>• <b>2단계:</b> GFSM 2014의 개정 과정상 도출되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IPSAS 기준과 GFSM 간의 정합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li> </ul>
4.2.1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건 4.3.1은 'IPSAS 기준과 GFSM 간 연계 강화' 프로젝트 개요의 초안을 제시하며, 해당 개요는 지난 2024년 12월 회의의 버전에서 일부 수정 사항이 표시된 문서임</li> <li>• 수정된 프로젝트 개요 초안은 지난 2024년 12월 회의에서 IPSASB가 지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GFSM이 현행뿐만 아니라 향후 개정판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는 2단계 구성으로 프로젝트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프로젝트 목적 등에서 '2014' 연도를 삭제하고 개요서 전반에서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함</li> <li>(b) 프로젝트 일정이 수정되어 2025년 9월에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승인하고, 2026년 3월에 최종 기준서(final pronouncement)를 승인하는 것으로 조정됨</li> <li>(c) 본 프로젝트에 따라 IPSAS 22에 비규정 지침이 추가될 수 있으며, 지난 2012년 10월에 IPSASB에서 발표한 자문보고서 - "IPSAS와 정부 재정 통계 보고 지침(<i>IPSASs and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Reporting Guidelines</i>)"에서 제안된 GFS 비교표의 작성에 대한 설명이 추가됨</li> </ul> </li> </ul>
	<p><b>지침의 개발에 대한 접근법(Approach to Developing Proposed Guidance)</b></p> <p><b>[Staff 권고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IPSASB가 다음의 문서에 포함된 지침 개발에 대한 접근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 기준과 GFSM 간 정합성 분석 대시보드</li> <li>(b) 공개초안 - IPSAS 기준과 GFSM 2014 간 연계 강화</li> </ul> </li> </ul>
4.2.2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12월 회의에서 IPSASB가 Staff에게 지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 기준과 GFSM 간 정합성 대시보드의 개발</li> <li>(b) 공개초안에 포함될 예정인 추가적인 IPSAS 22 적용지침을 위한 비규정적 지침의 개발</li> </ul> </li> </ul> <p><b>[분석]</b></p> <p><b>IPSAS 기준과 GFSM 간 정합성 분석 대시보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 기준과 GFSM 간 정합성 분석 대시보드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 기준과 GFSM 간의 연계 현황 전달</li> <li>(b) 각 IPSAS 기준에서 다음의 주요 항목을 요약하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이미 GFSM과 연계되어 있거나, 연계가 가능한 회계정책이 존재하는 항목</li> <li>(ii) IPSAS 기준과 GFSM 양쪽 모두에서 추가적인 연계 가능성이 있는 항목</li> <li>(iii) 두 프레임워크 간의 개념적 차이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연계 가능성이 없는 항목</li> </ul> </li> </ul> </li> </ul>

**표 1** 의 계속

**안건 4: IPSAS 기준과 GFSM의 연계 강화**  
**(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IPSAS Standards and the GFSM)**

- IPSAS 기준과 GFSM 간 정합성 분석 대시보드의 구조와 특성은 다음과 같음
- (a) 정합성의 정도(Degree of Alignment)
  - (i) 해당 없음(n/a): GFSM 2014와 대응되는 항목이 없는 IPSAS 기준
  - (ii) 기 연계됨(Already aligned): 동일한 규정이 있거나, GFSM 2014에 부합하는 회계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
  - (iii) IPSAS 기준과의 연계 가능성(IPSAS Standards alignment opportunity): 현재 IPSASB 프로젝트 또는 연구 프로그램과 관련된 항목
  - (iv) GFSM 2014 개정과 관련된 연계 가능성(GFSM 2014 alignment opportunity):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항목
  - (v) 주요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차이: 현재로서는 연계 가능성이 없는 항목

〈IPSAS 기준과 GFSM 간 정합성의 정도〉



4.2.2

- (b) 표 1 - IPSAS 기준/권장실무지침(RPG)과 GFSM 간의 정합성 요약
- (c) 표 2 - 과제별 작업반에 따른 GFSM 개정 연구 프로젝트
- (d) 표 3 - IPSAS 기준과 GFSM 2014에 관한 세부 사항
- (e) 표 4 - 권장실무지침과 GFSM 2014에 관한 세부 사항

**공개초안 - IPSAS 기준과 GFSM 2014 간 연계 강화**

**‘IPSAS 22에 추가되어야 할 비규정적 지침’**

공개초안에 포함될 비규정적 지침의 구조와 관련하여 Staff는 다음과 같이 제안함

- IPSAS 기준을 다음의 6개 그룹으로 분류
  - ☞ 일반원칙, 회계적 범위(Accounting boundaries),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수 및 이전지출, 기타 비용 및 비금융부채
- 각 그룹은 인식 및 측정 기준을 다루는 IPSAS 기준을 포함하며, 이에 대응되는 GFSM 지침 또한 존재함
- 또한 다음의 항목에 대한 질의응답을 포함
  - (a) IPSAS 기준의 인식 및 측정 요건 또는 회계정책의 선택 사항 중 어떤 부분이 GFSM과 연계되는가?
  - (b) 인식 및 측정의 차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가?

**표 1** 의 계속

■ **안건 4: IPSAS 기준과 GFSM의 연계 강화**

**(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IPSAS Standards and the GFSM)**

- Staff는 일부 IPSAS 기준에 대해 IPSASB의 검토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공개초안에는 다음의 기준들에 대한 지침이 포함됨
- ☞ IPSAS 4(환율 변동의 효과), IPSAS 5(차입원가), IPSAS 31(무형자산), IPSAS 43(리스), IPSAS 45(유형자산)

**‘GFS와의 비교표’**

- 4.2.2
- 공개초안은 각 IPSAS 기준서의 마지막에 ‘GFS와의 비교표(Comparison with GFS)’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
  - Staff는 이 비교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IPSAS 기준서들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IPSAS 1부터 41까지를 포함함. 다만 다음의 기준서는 제외함
    - (a) 더 최신의 기준으로 대체될 예정인 기준서(IPSAS 9, 11, 13, 17, 23)
    - (b) 공시 요건을 다루는 기준서(IPSAS 20, 22, 30, 38)
    - (c) GFSM 2014와 대응되는 지침이 없는 기준서(IPSAS 3, 10, 18, 24, 29, 33, 34)

**2. 중요성 판단 기준(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중요성 판단 기준’ 프로젝트는 일부 공공부문실체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요성 판단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IPSASB가 지난 2024년 12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신규 과제이다.

IPSASB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부문실체가 IPSAS에 따라 일반목적재무보고서(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이하 GPFS)를 작성할 때 필요한 중요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PSASB는 이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추진 단계	단계별 계획
<b>[Phase 1] 중요성 정의의 일관성 검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 문헌 전반에 걸쳐 일관된 중요성 개념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li> <li>• 중요성 정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사항 개발</li> </ul>
<b>[Phase 2] 재무보고서에서의 중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RS 실무지침서 2, 중요성 판단에 부합하는 비강제 지침(non-authoritative guidance) 개발</li> </ul>
<b>[Phase 3] 지속가능성 보고에서의 중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 SRS(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서)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 개발</li> </ul>

IPSASB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상기의 추진 계획이 포함된 ‘중요성 판단 기준’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개요서(PB)를 최종 승인하는 한편, IPSASB 문헌 내 중요성과 관련된 지침의 일관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공개초안인 ED 93, “Definition of Material”을 검토하고 그 공개 자문 기간을 60일로 설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ED 93은 ‘중요성 판단 기준’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IPSASB 개념체계 및 IPSAS 1,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IPSASB 문헌	개정 사항	기대 효과
IPSASB 개념체계 제3장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를 ‘주요(primary) 이용자’로 수정	중요성 판단 수행 시에 모든 정보이용자가 아닌 ‘주요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밝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를 ‘주요(primary) 이용자’로 수정	개념체계 개정 사항과의 일관성 확보
	중요성 판단의 기준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uld influence)’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influence)’로 완화	거의 모든 정보가 주요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으로, 과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 방지
IPSAS 1 재무제표 표시	중요성 판단의 요소로 ‘불분명해지는 것(obscuring)’을 추가	‘누락(omitting)’, ‘왜곡표시(misstating)’는 물론, 과도한 정보가 제공되어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 불분명해지는 경우에도 중요성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시

## ● 시사점

IPSASB는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는 본 프로젝트를 총 세 단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IPSAS 재무 보고 지침 전반에서 중요성 정의가 일관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러한 정의의 일관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제안하고, 뒤이어 재무 보고와 지속가능성 보고에서의 중요성 판단 기준을 검토하여 각각 ‘IFRS 실무 지침서 2, 중요성 판단’ 및 ‘IPSASB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과 정합하는 지침을 개발하는 계획이다.

2025년 1분기 회의에서는 그중 첫 번째 단계인 중요성 정의의 일관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IPSAS 기준서상 언급된 중요성의 정의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요 이용자(primary users)'의 정보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성 정의에 명시된다. 기존 IPSASB '개념체계 제3장'의 중요성 정의에서는 '이용자(user)'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실체가 중요성 판단을 수행할 때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모든 정보이용자가 아닌 주요 정보이용자의 정보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중요성 정의에서 '이용자'를 '주요 이용자'로 수정하는 것이다.

개념체계의 중요성 정의를 이와 같이 수정하면 중요성의 정의가 IPSASB 문헌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후속 개정이 수반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IPSAS 1, 재무제표의 표시 기준서에서도 '주요 이용자' 개념이 반영될 것이다. 이와 별개로 IPSAS 1에 대해서는 중요성 판단의 기준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uld influence)'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influence)'로 완화하고, 중요성 판단의 요소에 '불분명해지는 것(obscuring)'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국가회계의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의 실무해설 2와 실무해설 4, 실무해설 5에서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중요성의 개념적 정의와 중요성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요소(계정잔액, 계정 간의 상호 관련성, 거래 및 공시사항, 법률과 규정상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IFRS 및 IPSASB는 중요성 판단 기준을 비강제적(non-authoritative) 지침 지위의 별도 실무서 지침 형태로 제공하고 있거나 개발할 예정으로, 중요성의 일반적 정의뿐만 아니라 주요 이용자와 그들의 정보 수요를 식별하고 중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에서도 중요성 관련 규정을 문단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실무해설 수준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해 보이나, IFRS 및 개발 예정인 IPSAS 지침을 참고하여 원론적인 정의의 수준을 넘어 재무제표 작성자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침을 제공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요성 판단 기준이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의 형태로 제시된다면 공공부문실체 또한 재무보고에서 중요성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는 한편, 국가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중요성 판단 기준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5: 중요성 판단 기준(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안건 항목	내용
<b>Project Brief: 승인(Approval)</b>	
5.2.1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024년 12월에 IPSASB는 중요성 판단 기준 프로젝트의 목적, 범위, 산출물 및 주요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함</li> </ul>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12월 회의에서, IPSASB는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의 개요(Project Brief)를 논의하였으며,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동의함</li> <li>• IPSASB는 본 프로젝트를 다음의 세 단계에 걸쳐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1단계 - IPSAS 재무 보고 지침 전반에서 중요성 정의가 일관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러한 정의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개정을 제안</li> <li>(b) 2단계 - 재무 보고에서의 중요성: IFRS 실무 지침서 2, 중요성 판단에 부합하는 비규정 지침의 개발</li> <li>(c) 3단계 - 지속가능성 보고에서의 중요성: IPSASB SRS(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의 중요성 판단 지침 개발</li> </ul> </li> <li>• 본 프로젝트 개요서에 이러한 단계별 접근법이 반영되었으며, 3단계의 주요 이슈, 시사점, 개발 절차 및 기타 산출물은 IPSAS SRS ED 1(IPSAS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공개초안 1)에 대한 의견 수렴이 마무리된 이후에 결정</li> <li>• 지난 12월 IPSASB의 지시 사항에 따라 Staff는 이상과 같은 단계별 접근법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IPSASB는 본 프로젝트 개요서를 검토하고 개요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필요한 경우 제시할 것임</li> </ul>
<b>중요성의 정의 - 주요 이용자(Definition of Material - Primary Users)</b>	
5.2.2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12월, IPSASB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작성 시의 중요성 판단 기준 지침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단계별 접근 방식을 채택함</li> <li>• 2025년 3월 회의에서 IPSASB는 1단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1단계에서는 IPSASB 재무 보고 지침 문단 전반에서 중요성의 정의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사항을 제안함</li> <li>• IPSAS 기준상 일관된 중요성 정의의 적용과 관련, 다음의 두 가지 이슈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중요성 판단 수행 시에 정보이용자 전체가 아닌 '주요 이용자(primary users)'의 정보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함 - 해당 안건은 개념체계 제3장의 '이용자(users)' 앞에 '주요(primary)'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함</li> <li>(b) 중요성 정의의 일관성 - IPSASB 재무 보고 지침 전반에서 중요성의 정의를 일관되게 적용</li> </ul> </li> </ul>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체계 제3장에서는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또는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해지는 것이 해당 실체의 책임 이행이나 정보이용자가 실체의 일반목적재무제표를 기초로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정보는 중요함. 중요성은 각 실체의 특정 상황에서 판단되는 항목의 성격(질적 측면)과 금액(양적 측면) 모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li> </ul> </li> </ul>

**표 2** 의 계속

■ **안건5: 중요성 판단 기준(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018년, IASB는 개념체계에서 다음과 같이 '주요'라는 단어를 중요성에 대한 설명에 추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특정 보고 실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기초로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정보는 중요함</li> </ul> </li> <li>• 이러한 개정은 실체가 중요성 판단을 수행할 때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모든 정보이용자가 아닌, 주요 이용자의 정보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함</li> <li>• IASB의 이해관계자들은 '이용자'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함. 더 구체적으로는 '이용자'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실체가 중요성 판단을 수행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이용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함</li> </ul>
	<p><b>해당 개정 사항이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성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작성 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핵심 개념이며, 개념체계 제5장 문단 3.32에서 언급된 '이용자'라는 용어는 공공부문 실체에 의해서도 유사하게 해석될 것으로 보임</li> <li>• 가능한 모든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실체가 작성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그러한 GPFR을 작성하는 것에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여 그 이점을 초과함. 또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정보의 유용성을 해칠 수 있음</li> <li>• 실체가 중요성 판단을 수행할 때, '주요 이용자'의 정보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개념체계에 부합함. 개념체계에 따르면 재무 보고의 범위는 주요 이용자의 정보 수요로 정의됨. 또한 GPFR 상의 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도 유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GPFR은 주요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명시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설명함</li> </ul>
5.2.2	<p><b>비규정적 지침에 대한 개정 권고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체계 문단 3.32의 중요성 정의에서 '이용자' 앞에 '주요'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실체가 GPFR의 일반적인 이용자가 아닌 '주요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li> <li>(b) '주요'라는 단어의 누락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간 중요성 개념의 적용에 서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함</li> </ul> </li> <li>• 또한 이는 IASB의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와 IPSASB의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IPSASB SRS ED 1, Climate-related Disclosures)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IFRS 실무서 2에 부합하는 중요성 판단 비규정 지침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견고한 근거를 제공함</li> </ul>

**표 2** 의 계속

■ **안건5: 중요성 판단 기준(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안건 항목	내용
	<p><b>중요성의 정의 - 일관성(Definition of Material - Consistency)</b></p> <p><b>[Staff 권고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IPSASB에 다음을 권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 1, 재무제표의 표시의 중요성 정의와 관련 지침을 수정</li> <li>(b) IPSAS 3,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수정의 중요성 설명 삭제</li> <li>(c) IPSAS 14, 보고기간 후 사건과 IPSAS 19,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후속 개정 사항 포함</li> </ul> </li> </ul>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12월, IPSASB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작성 시의 중요성 판단 기준 지침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단계별 접근 방식을 채택함</li> <li>• 2025년 3월 회의에서 IPSASB는 1단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1단계에서는 IPSASB 재무 보고 지침 문단 전반에서 중요성의 정의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사항을 제안함</li> <li>• IPSAS 기준상 일관된 중요성 정의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이슈가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중요성 판단 수행 시에 정보이용자 전체가 아닌 '주요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함 - 해당 안건은 개념체계 제3장의 '이용자' 앞에 '주요'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함</li> <li>(b) 중요성 정의의 일관성 - IPSASB 재무 보고 지침 전반에서 중요성의 정의를 일관되게 적용</li> </ul> </li> </ul>
5.2.3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체계 개정(Conceptual Framework Update) 프로젝트에는 IPSAS 기준에 대한 후속 개정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IPSASB의 재무 보고 문헌 전반에서 중요성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들이 존재함. IPSASB 문헌 내에서의 중요성 정의가 서로 다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IPSASB가 이러한 정의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실무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를 의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li> <li>• Staff는 IPSASB가 이상과 같이 서로 다른 중요성의 정의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개념체계의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IPSAS 기준상의 중요성 개념에 대한 개정은 개념체계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 별도로 수행될 것임</li> <li>• IPSAS에서의 중요성 개념을 개념체계와 대응되도록 정렬하는 것은 타당함. 개념체계는 IPSAS 기준을 개발할 때 적용되는 개념들을 제시함. 이와 같이 중요성의 정의를 정렬하는 경우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성 판단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이 명확해질 수 있음</li> </ul> <p><b>중요성의 정의에 대해 제안된 개정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 1에서 중요성의 정의는 개념체계와 정렬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정 사항은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이용자' 앞에 '주요'를 추가함 - 이는 재무제표는 주요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임</li> </ul> </li> </ul>

**표 2** 의 계속

■ **안건5: 중요성 판단 기준(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중요성 판단의 기준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uld influence)'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influence)'로 완화 - 개념체계가 개정된 이유와 유사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의 모든 정보가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인하여 과도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음</li> <li>(c) 중요성 판단의 요소로 '불분명해지는 것(obscuring)'을 추가함 - 개념체계가 개정된 이유와 유사하며, '누락(omitting)' 또는 '왜곡표시(misstating)'는 정보의 부재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과도한 정보가 제공되어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 불분명해지는 경우에도 중요성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이상과 같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중요성의 정의는 개정된 개념체계와의 일관성이 확보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또는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해지는 것이 해당 실체의 책임 이행이나 정보이용자가 실체의 일반목적재무제표를 기초로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정보는 중요함</li> </ul> </li> <li>• IPSAS 3은 중요성에 대해 IPSAS 1과 동일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중복을 피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IPSAS 3의 문단 8에 있는 관련 지침은 삭제되어야 함. 또한 이상과 같이 제안된 중요성 정의의 적용 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IPSAS 14 및 IPSAS 19에 대한 후속 개정이 필요함</li> </ul>

**Exposure Draft: 승인(Approval)**  
**- ED 93, 중요성의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Staff 권고사항]**

- Staff는 IPSASB에 다음을 권고함
  - (a) IPSAS ED 93, 중요성의 정의(IPSAS 1, IPSAS 3, 개념체계 제3장 개정) 승인
  - (b) ED 93을 60일의 기간 동안 공개함

**[분석]**

**ED의 구조 및 내용**

- 5.2.4
- Staff는 해당 공개초안을 새로운 기준서 형태로 발행할지 혹은 기존 IPSAS 기준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제시할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ED 93은 기존의 IPSAS 기준을 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을 권고함. 이는 ED 93에 따른 개정의 범위가 기존 IPSAS 기준서의 개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정 소요의 범위와 유사하기 때문임
  - IPSAS ED 93의 내용은 다음 기준들에 대한 개정을 포함함
    - (a) 제3장: 공공부문 실체의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 (b) IPSAS 1, 재무제표의 표시
    - (c) IPSAS 3,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수정
    - (d) IPSAS 14, 보고기간 후 사건 및 IPSAS 19,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후속 개정

**표 2** 의 계속

■ **안건5: 중요성 판단 기준(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의 성격과 형식을 고려하여 ED 93의 경우 의견요청사항(Specific Matter for Comment)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며, 결론의 근거(Basis for Conclusions)는 IPSAS 기준 개선안 형식 및 IASB 문헌 검토 및 적용 절차를 따를 것임</li> </ul>
	<p><b>공개 및 의견 조회 기간</b></p>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ED 93을 60일의 기간 동안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을 권고함</li> <li>• 공식 운영 절차 등에 따르면 국제 기준서의 일반적인 공개 기간은 통상 12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IPSAS 기준 개정안에 해당하는 ED는 대체로 60일간 공개되었음</li> <li>• 또한 IASB 개념체계상의 중요성 개념에 부합하도록 개념체계 제3장을 개정하는 내용을 이미 공개한 바 있음을 고려하여, 본 프로젝트의 2단계에 해당하는 비규정적 지침의 개발에 우선 착수할 것임</li> </ul>

**3. 사후이행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s)**

지난 2024년 12월에 IPSASB는 현행 IPSAS 기준서 등의 실제 적용 효과를 평가하는 절차인 사후이행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s, 이하 PIR)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후이행검토’ 프로젝트를 게시하기 위해 PIR의 공식 운영 절차(안)을 논의한 바 있다.

PIR은 재무제표 이용자와 작성자, 감사인, 규제담당자에 대한 IPSAS 기준서(IPSASB 지속가능성 기준서 포함) 규정의 적용 효과가 기준서 개발 당시의 의도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IPSASB의 공식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다음 2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① (이슈 검토) IPSASB 회의, 학계 연구, 자문단(CAG) 의견, 이해관계자 피드백 등을 통한 사안 식별 및 검토
- ② (위원회 심의) 공개 자문, 재무제표 또는 재무정보 분석 결과, 학계 연구결과 등을 고려한 IPSASB 심의 및 결과 보고서 발표

이러한 절차를 통해 IPSASB는 규정의 목적 및 원칙의 명료성과 적합성, 규정을 적용하면서 불거진 특정 관점에서의 질의 제기 여부, 규정 적용의 원가 대비 효익, 개발 과정에서의 논쟁적 주제의 존재 여부와 해당 이슈의 실무 적용 시 해소 여부를 고려하여 PIR 필요 대상을 선정한다.

IPSASB는 2025년 3월 정례회의에서 IPSAS 20, 특수관계자 공시에 대해 PIR 절차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PIR 운영절차(안)가 실효성을 갖는지 검증하기로 결정하였다. IPSASB는 이러한 결정의 근거로 IPSAS 20의 경우 하나의 보고 실체에 포함되는 개별 실체들의 공시 범위에 대한 판단 이슈가 IPSAS 도입국들로부터 보고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IPSASB는 각국 기준 제정자를 대상으로 각국에서 어느 IPSAS 기준서를 수정하여 도입하였거나 도입하지 않았는지 조사하여 차기 PIR 대상 기준서의 우선순위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 ● 시사점

IPSASB는 IPSAS 기준서들에 대한 사후이행검토(PIR) 제도를 실제 운영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적으로 적용할 IPSAS 기준서 후보를 선정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후이행검토 제도는 특정 IPSAS 기준서의 발표 이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분석하여 당해 기준서의 당초 개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재무제표의 작성자와 감사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IPSAS 기준서의 적용상 문제점의 분석 및 해소를 통해 그 기준서의 실질적인 도입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기준 제정자인 IPSASB 입장에서는 회계기준 개발 과정에서 실무 적용 이슈를 완벽히 고려하기 위한 과도한 인적·물적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IPSAS 기준서를 발표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회계의 경우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가 각각 기획재정부 시행규칙과 예규의 형식을 가짐에 따라 IPSASB에 비해 회계기준 제·개정 of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계다가 국가회계실체의 실무 적용상 문제에서 출발하여 국가회계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개발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는 2024년 국가회계제도심의회 폐지 이후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물론 『국가회계편람』을 통해 국가회계예규 이용자의 실무 적용을 도울 수 있는 실무 해설, 적용사례, 계정과목해설서 등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법규 형식의 회계기준이 갖는 한계를 고려할 때 지침의 적용상 문제가 상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에 따른 소송충당부채 등 우발부채 공시,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간접원가 배부기준 설정, 용자 회계처리지침에 따른 용자 사업 분류 등의 경우 실무 적용상 이슈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IPSASB의 사후이행검토 절차를 참고하여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의 개선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표 3 사후이행검토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 8: 사후이행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s)	
안건 항목	내용
<b>PIR: IPSAS 18 검토 제안</b>	
<b>[배경]</b>	
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12월 회의에서 Staff는 사후이행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s, 이하 PIR)의 운영 절차(안)을 IPSASB에 보고함</li> <li>• PIR 운영 절차(안)은 회의 중 제기된 IPSASB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 지속가능성 보고기준과 관련된 모든 사례 삭제</li> <li>- 매 3년마다 운영 절차를 재검토한다는 조항 추가</li> <li>- 최초로 도래하는 재검토 단계에서 IPSASB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의 PIR 대상 포함 여부를 심의한다는 조항 추가</li> <li>- 정당한 경우 기준서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도 PIR을 개시할 수 있음을 명시</li> <li>- PIR 결과, 적용지침(AG) 또는 비규정 지침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들은 IPSASB의 연차개선 과정을 통해 기준서로 통합될 수 있음을 명시</li> <li>- PIR 이행 후에는 반드시 검토 결과의 세부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Report and Feedback Statement)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li> </ul> </li> <li>• Staff는 PIR 절차가 의도한 바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PIR 운영 절차를 적용하여 1개의 IPSAS 기준서를 좁은 범위로 검토할 것을 제안함</li> </ul>

**표 3** 의 계속

■ **안건 8: 사후이행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s)**

안건 항목	내용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PIR 절차가 의도한 바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의 PIR 운영 절차를 적용하여 1개의 IPSAS 기준서를 좁은 범위로 검토할 것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검토 대상 사안 식별</li> <li>(b)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개발</li> <li>(c) 의견조회 결과 분석</li> <li>(d) 추가 조치 필요성 평가</li> <li>(e) 결과보고서(Report and Feedback Statement)를 통한 검토 결과 보고</li> </ul> </li> <li>• Staff는 PIR의 시범 운영 대상 기준서로 IPSAS 18, Segment Reporting을 선정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근거와 관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li> </ul>														
	<p><u>IPSAS 18, 부문별 보고 검토의 타당성</u></p> <p>(이해관계자의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의 2019-2023 전략 및 업무계획에 대한 2021년 3월 자문 결과, 이해관계자들은 IFRS 8과의 불필요한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IPSAS 18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li> <li>• 같은 회의에서 IPSASB는 대응 조치로서 IPSAS 18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남아공과 뉴질랜드의 관련 사례 참고할 것을 Staff에게 지시하였으나, 한정된 Staff 인력 문제로 당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음</li> <li>• 이해관계자의 IPSAS 18 관련 실무 적용 문제 대응 및 종전의 IPSASB 지시 이행을 위해 IPSAS 18을 PIR 시범 운영 대상 기준서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함</li> </ul>														
8.2.1	<p>(타 기준서와의 비교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의 2024-2028 전략 및 업무계획에 대한 자문 과정에서 IPSASB는 다수의 IPSAS 기준서를 PIR의 후보로 제안하고 있으나, IPSAS 18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서</th> <th style="text-align: center;">PIR 적용시 문제점</th> </tr> </thead> <tbody> <tr> <td>IPSAS 2, 현금흐름표</td> <td>•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진행 결과에 따른 개정 가능성 있음</td> </tr> <tr> <td>IPSAS 20, 특수관계자 공시</td> <td>•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의 개정에 따라 발생한 IPSAS 20과의 차이 점*이 공공부문에 중요하지 않음 * 정부의 통제 또는 중대한 영향을 받는 실체의 경우 동일 정부의 통제 또는 중대한 영향을 받는 모든 기타 실체와의 거래에 대한 공시를 부분적으로 면제</td> </tr> <tr> <td>IPSAS 22, 일반정부 부문의 재무정보 공시</td> <td>• IPSAS 기준서와 GFSM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IPSAS 22의 회계정책 선택지 개정 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개정 가능성 있음</td> </tr> <tr> <td>IPSAS 24, 예산정보의 재무제표 표시</td> <td>•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진행 결과에 따른 개정 가능성 있음</td> </tr> <tr> <td>IPSAS 40, 공공부문 결합</td> <td>• 내재된 이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PIR 운영 절차의 유효성 검증 대상으로는 부적절함</td> </tr> <tr> <td>권장실무지침</td> <td>• IPSASB SRS 1, 기후 관련 공시의 완성 과정에서 개정 가능성 있음</td> </tr> </tbody> </table>	기준서	PIR 적용시 문제점	IPSAS 2, 현금흐름표	•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진행 결과에 따른 개정 가능성 있음	IPSAS 20, 특수관계자 공시	•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의 개정에 따라 발생한 IPSAS 20과의 차이 점*이 공공부문에 중요하지 않음 * 정부의 통제 또는 중대한 영향을 받는 실체의 경우 동일 정부의 통제 또는 중대한 영향을 받는 모든 기타 실체와의 거래에 대한 공시를 부분적으로 면제	IPSAS 22, 일반정부 부문의 재무정보 공시	• IPSAS 기준서와 GFSM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IPSAS 22의 회계정책 선택지 개정 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개정 가능성 있음	IPSAS 24, 예산정보의 재무제표 표시	•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진행 결과에 따른 개정 가능성 있음	IPSAS 40, 공공부문 결합	• 내재된 이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PIR 운영 절차의 유효성 검증 대상으로는 부적절함	권장실무지침	• IPSASB SRS 1, 기후 관련 공시의 완성 과정에서 개정 가능성 있음
기준서	PIR 적용시 문제점														
IPSAS 2, 현금흐름표	•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진행 결과에 따른 개정 가능성 있음														
IPSAS 20, 특수관계자 공시	•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의 개정에 따라 발생한 IPSAS 20과의 차이 점*이 공공부문에 중요하지 않음 * 정부의 통제 또는 중대한 영향을 받는 실체의 경우 동일 정부의 통제 또는 중대한 영향을 받는 모든 기타 실체와의 거래에 대한 공시를 부분적으로 면제														
IPSAS 22, 일반정부 부문의 재무정보 공시	• IPSAS 기준서와 GFSM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IPSAS 22의 회계정책 선택지 개정 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개정 가능성 있음														
IPSAS 24, 예산정보의 재무제표 표시	•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진행 결과에 따른 개정 가능성 있음														
IPSAS 40, 공공부문 결합	• 내재된 이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PIR 운영 절차의 유효성 검증 대상으로는 부적절함														
권장실무지침	• IPSASB SRS 1, 기후 관련 공시의 완성 과정에서 개정 가능성 있음														

**표 3** 의 계속

■ **안건 8: 사후이행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비해 IPSAS 18의 경우 당해 전략 및 업무계획 자문 과정에서 이상적인 PIR 대상으로 추천되었으며 다른 기준서와의 접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된 자원 내에서 PIR 시범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함</li> </ul>
	<p>IPSAS 18에 대한 PIR 수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가 IPSAS 18을 채택한다는 전제하에 Staff는 PIR 절차를 다음의 일정에 따라 수행할 것을 제안함</li> </ul>
시기	절차 수행 계획
2025년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 18 관련 잠재적인 이슈를 식별하기 위한 예비 연구 수행 및 IFRS 8과 일치시키는 것을 지지하는지 여부 등을 묻는 정보요청서(RFI) 개발</li> </ul>
2025년 6월 정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의 정보요청서(안) 승인</li> </ul>
2025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되었을 경우 9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진행</li> </ul>
2025년 12월 정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의견에 대한 예비 분석결과 보고</li> </ul>
2026년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의견 분석을 통한 추가 필요조치 발굴</li> </ul>
2026년 3월 정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의견 분석결과 보고 및 추가 필요조치 제안</li> </ul>
2026년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 피드백 반영한 PIR 결과보고서(Report and Feedback Statement) 개발</li> </ul>
2026년 6월 정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의 PIR 결과보고서 승인</li> </ul>
2026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되었을 경우 PIR 결과보고서 발표</li> </ul>



#### 4. 측정-적용단계(Measurement-Application Phase)

‘측정 - 적용단계’ 프로젝트는 공공부문 특유 측정기준으로 신설된 IPSAS 46, 측정의 현행운영가치(Current Operational Value, 이하 COV)가 자산의 인식 및 측정을 다루는 여러 IPSAS 기준서에서 적용 가능한지 평가하기 위한 과제이다. IPSASB는 IPSAS 46, 측정 및 개념체계 제7장의 개정 사항의 맥락에서 COV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2023년 3월부터 추진해 왔다.

2024년 6월 회의에서는 IPSASB는 적용 가능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ED 90, Amendments to IPSAS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IPSAS 46, Measurement(IPSAS 46의 적용으로 인한 IPSAS 개정 사항)를 승인하고, 다음 사항에 관한 120일간의 공개 자문을 진행하였다.

- (Part 1) IPSAS 12, 재고자산 및 IPSAS 31, 무형자산에서 적용 가능한 최초 및 후속 측정기준 중 하나로 COV를 추가하는 것
- (Part 2)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에서 회수가능서비스금액(recoverable service amount)의 정의 개선
- (Part 3) IPSAS 46과 일치하는 ‘회계추정’ 정의를 IPSAS 3,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추가
- (Part 4) IPSAS 기준서의 현행가치 측정 관련 공시사항들의 일관성 제고

이번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ED 90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ED 90의 제안사항 중에서 COV 측정기준을 IPSAS 12, 재고자산과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사용권자산에 대해 COV를 적용하는 것을 지지하였으며, IPSAS 기준서 간 현행가치 측정 관련 공시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지 의견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IPSAS 31, 무형자산에 대한 COV의 적용 제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다소 복잡하고 혼재된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IPSASB는 무형자산의 COV 적용과 관련된 이슈를 별도의 한정 범위(limited scope) 프로젝트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보고, Staff에게 무형자산의 경우 더 광범위한 재무보고 현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IPSAS 31에 COV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분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 ● 시사점

IPSASB는 측정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서 공공부문실체의 자산의 측정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는 여러 IPSAS 기준서들을 대상으로 ‘현행운영가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을 수행 중에 있다.

현행운영가치는 IPSAS 46, Measurement의 개발 과정에서 새로 편입된 측정기준으로 측정일 현재 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의 가치로 정의되며, 공공부문실체의 운영역량(operational capacity)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에 적용된다. 현행운영가치는 공정가치와 달리 개념적 요소에 ‘시장참여자 자료의 사용 극대화’와 ‘최고 최선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IPSASB는 관련 규정에서 공정가치를 현행운영가치로 대체할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 및 적용이 어려워져 발생하는 공공부문 자산의 측정과 관련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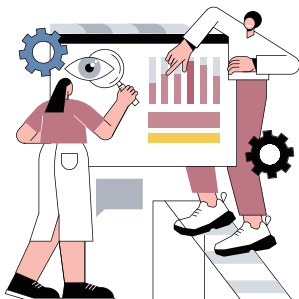
IPSASB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IPSAS 기준서에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루는 IPSAS 31, Intangible Assets도 포함되어 있다. 즉 무형자산을 현행가치모형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하였을 때 현행 규정처럼 공정가치가 아닌 현행운영가치로 후속 측정하는 제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회계의 경우「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에서 무형자산의 측정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IPSAS 31과 비교해 볼 때 무형자산 지침은 무형자산을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방법만 허용하고 있어 후속 측정 과정에서 공정가치를 포함한 현행가치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만 무형자산에 손상이 일어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가치가 적용될 여지가 생긴다. 같은 지침 문단 15에 의거해 무형자산의 손상에 따라 인식해야 할 감액손실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회수가능가액은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의미한다.

정부 등 공공부문실체가 보유하는 무형자산의 경우 그 특성상 관련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별도의 감정평가 과정이 필요하므로, 대개의 경우 정보의 원가 대비 효익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사용가치는 통상적으로 잔여 내용연수에 걸쳐 무형자산으로 인해 유입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산정되는데, 정부가 보유하는 대부분의 무형자산이 비현금창출자산의 성격을 갖는 전산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임을 고려할 때 사용가치의 산정 역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IPSASB가 공공부문에 특화된 현행가치 측정기준으로 개발한 현행운영가치는 유입가격(entry price)에 해당하며, 현재 용도상의 운영역량을 대체하기 위한 원가를 반영하고, 시장참여자의 가정이 아닌 실체의 가정을 반영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의 감액과 관련된 규정에서 시장가치 및 사용가치를 현행운영가치로 대체한다면 정부의 무형자산 보유 용도에 부합하는 가치평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IPSASB의 관련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 측정 - 적용단계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 10: 측정 - 적용단계(Measurements - Application Phase)

안건 항목	내용																																										
	<b>ED 90 응답 분석 결과</b>																																										
	<p><b>[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D 90, IPSAS 46의 적용으로 인한 IPSAS 개정 사항의 응답 분석결과 보고</li> </ul>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PSASB는 2023년 3월부터 IPSAS 46, 측정 및 개념체계 제7장의 개정 사항의 맥락에서 COV의 IPSAS 기준서별 적용 가능성 평가를 주된 목표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옴</li> <li>2024년 6월 회의에서 IPSASB는 적용 가능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ED 90, IPSAS 46의 적용으로 인한 IPSAS 개정 사항을 승인함. ED 90은 총 120일간의 공개 자문을 거쳤으며, 주요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Part 1) IPSAS 12, 재고자산 및 IPSAS 31, 무형자산에서 적용 가능한 최초 및 후속 측정기준 중 하나로 COV를 추가하는 것</li> <li>(b) (Part 2)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에서 회수가능서비스금액(recoverable service amount)의 정의 개선</li> <li>(c) (Part 3) IPSAS 46과 일치하는 '회계추정' 정의를 IPSAS 3,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추가</li> <li>(d) (Part 4) IPSAS 기준서의 현행가치 측정 관련 공시사항(current value measurement disclosures, 이하 CVMD)들의 일관성 제고</li> </ul> </li> </ul>																																										
10.2.1	<p><b>[ED 90 응답 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D 90에 대하여 IPSASB는 지역별·기능별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으로부터 총 26개의 의견서를 수취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ED 90의 제안사항에 강한 지지를 표명하였음</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15%;">구분</th>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총 26개 의견서</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ED 90</th> <th style="text-align: center;">동의+부분동의*</th> <th style="text-align: center;">동의</th> <th style="text-align: center;">부분동의</th> <th style="text-align: center;">부동의</th> <th style="text-align: center;">무응답</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SMC 1 -IPSAS 12</td> <td style="text-align: center;">84%</td> <td style="text-align: center;">20개(77%)</td> <td style="text-align: center;">1개(4%)</td> <td style="text-align: center;">4개(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개(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SMC 1 -IPSAS 31</td> <td style="text-align: center;">64%</td> <td style="text-align: center;">14개(54%)</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8개(31%)</td> <td style="text-align: center;">4개(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SMC 2 (a)</td> <td style="text-align: center;">83%</td> <td style="text-align: center;">17개(65%)</td> <td style="text-align: center;">2개(8%)</td> <td style="text-align: center;">4개(15%)</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1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SMC 2 (b)</td> <td style="text-align: center;">89%</td> <td style="text-align: center;">15개(68%)</td> <td style="text-align: center;">1개(5%)</td> <td style="text-align: center;">2개(9%)</td> <td style="text-align: center;">4개(1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SMC 3</td> <td style="text-align: center;">88%</td> <td style="text-align: center;">15개(58%)</td> <td style="text-align: center;">6개(23%)</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12%)</td> <td style="text-align: center;">2개(8%)</td> </tr> </tbody> </table>		구분	총 26개 의견서				ED 90	동의+부분동의*	동의	부분동의	부동의	무응답	SMC 1 -IPSAS 12	84%	20개(77%)	1개(4%)	4개(15%)	1개(4%)	SMC 1 -IPSAS 31	64%	14개(54%)	(-)	8개(31%)	4개(15%)	SMC 2 (a)	83%	17개(65%)	2개(8%)	4개(15%)	3개(12%)	SMC 2 (b)	89%	15개(68%)	1개(5%)	2개(9%)	4개(18%)	SMC 3	88%	15개(58%)	6개(23%)	3개(12%)	2개(8%)
	구분	총 26개 의견서																																									
ED 90	동의+부분동의*	동의	부분동의	부동의	무응답																																						
SMC 1 -IPSAS 12	84%	20개(77%)	1개(4%)	4개(15%)	1개(4%)																																						
SMC 1 -IPSAS 31	64%	14개(54%)	(-)	8개(31%)	4개(15%)																																						
SMC 2 (a)	83%	17개(65%)	2개(8%)	4개(15%)	3개(12%)																																						
SMC 2 (b)	89%	15개(68%)	1개(5%)	2개(9%)	4개(18%)																																						
SMC 3	88%	15개(58%)	6개(23%)	3개(12%)	2개(8%)																																						
	<p>* 무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 중 동의 및 부분동의 의견의 비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D 90의 제안사항이 응답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았다는 점과 응답자들이 제기한 의견의 대다수가 ED 90 개발 과정에서 이미 고려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Staff는 IPSASB의 승인 과정 이전에 ED 90 제안사항에 대한 추가 연구 및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함</li> <li>다만 IPSAS 31, 무형자산에 COV를 추가하는 제안사항의 경우, 응답자들이 소수의견(Alternative view)에 복잡하고 혼재된 의견을 제기하였음을 고려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6월 정례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임</li> </ul>																																										

표 4 의 계속

■ 안건 10: 측정 - 적용단계(Measurements - Application Phase)

안건 항목	내용																							
	<p><b>[향후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번 회의에서 IPSASB는 의견요청사항(SMC)의 응답 및 Part 3과 Part 4에 대해 제기된 의견의 분석결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li> <li>(a) IPSAS 12, 재고자산에서 COV의 적용 가능성(SMC 1) → 안건 10.2.2 참조</li> <li>(b) IPSAS 45, 유형자산에서 실체가 사용권자산에 대해 후속측정 시 현행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COV의 적용 가능성(SMC 2) → 안건 10.2.3 참조</li> <li>(c)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에서 회수가능서비스금액(recoverable service amount)의 정의 개선 → 안건 10.2.4 참조</li> <li>(d) IPSAS 3,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회계추정' 정의 추가 및 IPSAS 기준서의 현행가치 측정 관련 공시사항(CVMD)의 개선 → 안건 10.2.5 참조</li> </ul>																							
	<p><b>[IPSASB 의결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없음</li> </ul>																							
	<p><b>SMC 1 - IPSAS 12, 재고자산에서의 COV 적용 가능성</b></p>																							
	<p><b>[Staff 권고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taff는 IPSASB에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을 제안</li> <li>(a) 비교환거래로 취득한 재고자산의 최초 측정 시 COV가 적용 가능한 측정기준임을 반영할 것</li> <li>(b) 저가법을 적용하여 원가와 현행대체원가(Current Replacement Cost, 이하 CRC)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측정할 때 현행대체원가를 COV로 대체할 것</li> </ul>																							
10.2.2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D 90의 Part 1은 다음과 같은 COV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제안하고 있으며, SMC 1은 그 동의 여부를 묻고 있음</li> <li>(a) 비교환거래로 취득한 재고자산의 최초 측정 시 COV가 적용 가능한 측정기준임을 반영할 것</li> <li>(b) 다음 중 하나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으로서, 저가법을 적용하여 원가와 CRC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할 때 현행대체원가*를 COV로 대체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무상(이전비용) 또는 명목상의 대가를 받고 배포</li> <li>(ii) 무상(이전비용) 또는 명목상의 대가를 받고 배포할 제품의 생산과정에 소비</li> <li>(iii) 무상(이전비용) 또는 명목상의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li> </ul> </li> </ul> <p>* 현행대체원가는 유입가치(entry value) 개념이며, 현재용도(existing use)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행운영가치(current operational value)와 공통점이 있음(현행대체원가는 원가접근법으로 측정된 현행운영가치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p>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답자들은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 시 CRC를 COV로 대체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총 26개 의견서</th> </tr> <tr> <th>동의+부분동의</th> <th>동의</th> <th>부분동의</th> <th>부동의</th> <th>무응답</th> </tr> </thead> <tbody> <tr> <td>ED 9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SMC 1 - IPSAS 12</td> <td>84%</td> <td>20개(77%)</td> <td>1개(4%)</td> <td>4개(15%)</td> <td>1개(4%)</td> </tr> </tbody> </table>	구분	총 26개 의견서					동의+부분동의	동의	부분동의	부동의	무응답	ED 90						SMC 1 - IPSAS 12	84%	20개(77%)	1개(4%)	4개(15%)	1개(4%)
구분	총 26개 의견서																							
	동의+부분동의	동의	부분동의	부동의	무응답																			
ED 90																								
SMC 1 - IPSAS 12	84%	20개(77%)	1개(4%)	4개(15%)	1개(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들은 주로 CRC와 COV가 유사한 원칙을 공유한다는 점, 공공부문 특유의 측정 규정한 IPSAS 46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찬성 근거로 밝힘</li> </ul>																							

**표 4** 의 계속

■ **안건 10: 측정 - 적용단계(Measurements - Application Phase)**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동의 의견을 밝힌 응답자들은 IPSASB에 COV의 산정 조건 및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부동의 의견을 밝힌 응답자들은 COV로 대체함에 따른 효익이 원가보다 적고 일부 국가 또는 실체의 경우 COV의 산정 적용이 어려운 선천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반대근거로 제시함</li> <li>• Staff는 이에 대해 상기의 부분동의 또는 부동의 근거는 ED 90의 개발 과정에서 이미 고려되었던 것이며, CRC와 COV가 유사한 원칙을 공유하므로 COV로 대체하기 위한 원가가 효익보다 크지 않을 것이므로 ED 90의 제안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권고함</li> </ul>

**[IPSASB 의결사항]**

- 상기 Staff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

**SMC 2 - 사용권자산에 대한 COV 적용 가능성**

**[Staff 권고사항]**

- Staff는 IPSAS 45의 현행가치 모형에 따른 사용권자산의 후속 측정에 대한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IPSASB의 결정을 고수할 것을 권고함

**[배경]**

- ED 90은 IPSAS 45, 유형자산에 따라 실체가 사용권자산에 대해 후속측정 시 현행가치 모형을 선택한 경우 COV를 적용 가능하며, 사용권자산의 현행가치 후속측정과 관련된 추가 개정은 불필요함을 언급함
- SMC 2는 이와 관련하여 COV가 사용권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와, 적용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IPSAS 46의 현행 지침만으로 COV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음

**[분석]**

- 응답자들은 COV가 사용권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될 수 있으며 IPSAS 46의 현행 지침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ED 90의 제안사항을 강력히 지지함

10.2.3

	구분		총 26개 의견서			
	ED 90	동의+부분동의	동의	부분동의	부동의	무응답
SMC 2 (a)		<b>83%</b>	17개(65%)	2개(8%)	4개(15%)	3개(12%)
SMC 2 (b)		<b>89%</b>	15개(68%)	1개(5%)	2개(9%)	4개(18%)

- 대부분의 응답자가 실체가 IPSAS 43 문단 36에 따른 '다른 측정모형(Other Measurement Models)'을 선택한 경우 COV를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지지하였고, 현재 IPSAS 43의 지침에 따라 COV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하였음
- 부동의 의견을 밝힌 응답자들은 반대근거로서 다음을 제시함
  - (a) COV의 측정기법 중 하나인 이익접근법(income approach)을 사용하지 않으면 COV를 사용권자산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 (b) 사용권자산의 성격상 역사적원가 모형이 더 적절함
  - (c) COV의 도입은 회계처리 절차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 (d) 사용권자산에 COV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추가 지침이 필요함

**표 4** 의 계속

■ **안건 10: 측정 - 적용단계(Measurements - Application Phase)**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대해 Staff는 상기의 부동의 근거는 ED 90의 개발 과정에서 이미 고려되었던 것이며, IPSAS 45에 따른 사용권자산의 현행가치 후속측정은 IPSAS 43, 리스에서는 실체의 판단에 따라 선택 가능한 회계정책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다음을 근거로 IPSASB에 ED 90의 제안사항을 유지할 것을 권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COV는 IPSAS 45에 따라 현행가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특정 유형자산 유형과 관련된 사용권자산이고, 리스이용자가 IPSAS 43에 따라 원가모형이 아닌 '다른 측정모형'을 선택한 경우 COV는 적용 가능한 후속측정 기준임</li> <li>(b) 이익접근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IPSAS 46의 현행 지침은 사용권자산의 COV를 산정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음</li> </ul> </li> </ul> <p><b>[IPSASB 의결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Staff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li> </ul>

**SMC 3 - 회수가능서비스금액의 정의**

**[Staff 권고사항]**

- Staff는 IPSAS 21의 회수가능서비스금액의 정의에서 비현금창출자산의 사용가치를 COV로 대체하는 개정안의 유지와 IPSAS 21의 문단 39C 개정안의 폐기에 동의할 것을 권고함

**[배경]**

- ED 90은 비현금창출자산의 회수가능서비스금액의 정의를 수정하면서, 특히 비현금창출자산의 '사용가치'를 'COV'로 대체하는 것과 비현금창출자산 사용가치의 산정 방법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함
- SMC 3는 이와 관련하여 IPSAS 21의 회수가능서비스금액의 정의에서 비현금창출자산의 사용가치를 COV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묻고 있음

**[분석]**

- 응답자들은 IPSAS 21의 회수가능서비스금액의 정의에서 비현금창출자산의 사용가치를 COV로 대체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함

10.2.4

구분		총 26개 의견서			
ED 90	동의+부분동의	동의	부분동의	부동의	무응답
SMC 3	88%	15개(58%)	6개(23%)	3개(12%)	2개(8%)

- 지지 의견을 밝힌 응답자들은 COV와 상각후대체원가가 유사한 원칙을 갖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들은 개정된 회수가능서비스금액의 정의의 적용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부분동의 의견을 밝힌 응답자들은 이미 ED 90의 개발과정에서 고려되었던 다음과 같은 점을 이슈로 제기함
  - (a) '과거 운영 목적의 자산으로서 측정일 현재 더 이상 서비스 잠재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COV는 '0이다'라는 서술의 경우, COV의 산정을 위한 새로운 지침의 도입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4** 의 계속

■ **안건 10: 측정 - 적용단계(Measurements - Application Phase)**

안건 항목	내용
	<p>(b) 무형자산(IPSAS 31) 및 사용권자산의 손상 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서비스금액의 정의에는 COV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의 의견을 밝힌 응답자들은 반대근거로 다음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IPSAS 21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IPSASB가 수행해야 함</li> <li>(b) COV의 산정-적용을 막는 국가 차원 혹은 실체 차원의 근거가 보고됨</li> </ul> </li> <li>• 이에 대해 Staff는 상기의 부분동의 근거와 부동의 근거가 ED 90 제안사항의 변경 필요성을 야기하는지 검토한 결과, 다음의 두 가지 변경사항이 잠재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과거 운영 목적의 자산으로서 측정일 현재 더 이상 서비스 잠재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COV는 '0'이다'라는 서술의 경우 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COV의 측정에 관한 포괄적인 지침과 관련되어 있어 삭제하고, IPSAS 46의 적용지침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함. 다만 IPSAS 46의 개정은 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벗어남</li> <li>(b) 결론도출근거에 포함된 회수가능서비스금액의 정의 개정 과정에 대한 서술이 현재 선택된 방법과 관련된 논의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li> </ul> </li> </ul>

**[IPSASB 의결사항]**

- 상기 Staff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

**회계추정의 정의 및 현행가치 측정 관련 공시사항의 개선**

**[Staff 권고사항]**

- Staff는 ED 90의 Part 3과 관련하여 다음을 제안함
  - (a) 회계추정의 정의를 추가하는 제안사항을 유지할 것
  - (b) 현행가치 측정 관련 공시사항(current value measurement disclosures, 이하 CVMD)의 용어를 개선하는 제안사항을 유지할 것
  - (c) 편집상의 이유로 문단 8의 문구를 변경할 것

**[배경]**

- ED 90의 Part 3은 '회계추정' 용어의 정의를 IASB가 2021년 2월에 발표한 회계추정의 정의(IAS 8 개정 사항)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IPSAS 3에 추가함으로써, IPSAS 3의 용어 정의를 IPSAS 46과 일관성 있게 개선할 것을 제안함
- 10.2.5 • ED 90의 Part 1 및 Part 4는 IPSAS 간 CVMD 내의 용어를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당해 공시사항에서 'recurring and non-recurring(반복적으로나 비반복적으로)'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함
- ED 90은 상기 사항에 대해 별도의 의견요청사항(SMC)을 두고 있지 않음

**[분석]**

- 일부 응답자들은 CVMD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함
  - (a) 'recurring and non-recurring' 문구를 삭제할 경우 IFRS 13, 공정가치 측정과의 정합성이 결여되며,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공정가치 측정치로 최초 인식을 하게 되는 범위가 늘어남
  - (b) IPSAS 12의 문단50C(a)-(f)에 포함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하는 공정가치 측정치' 지침은 IFRS 13 및 IPSAS 45의 CVMD와 불일치하게 됨

**표 4** 의 계속

■ **안건 10: 측정 - 적용단계(Measurements - Application Phase)**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CVMD에 대해 응답자들이 제기한 의견의 근거를 평가함으로써 공개초안의 제안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한 결과, CVMD의 용어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변경 사항이 잠재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함</li> <li>(a) IPSAS 12의 문단 50A.(b)와 같은 특정 문단에서 'recurring' 문구를 삭제할 경우, ED 90의 의도와는 달리 최초 측정인 경우에도 수준 3의 투입변수를 사용한 공정가치 측정치가 당기손익 또는 순자산에 미친 영향을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음. Staff는 이에 대해 IPSAS 12의 문단 50A.(b) 및 유사한 타 IPSAS 기준서 문단에 '최초 인식 후 재무상태표에'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CVMD의 범위가 후속 측정에만 해당 되도록 유지할 것을 권고함</li> <li>(b) CVMD에 관한 특정 문단의 경우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 가치 측정치' 및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추정된 공정가치'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후자의 경우 IPSAS 내 주요 CVMD 지침과 일치하는 요구사항이 아니며, IFRS 13의 CVMD와도 불일치함. Staff는 IPSAS 12의 문단 50C(d)-(f) 및 유사한 타 IPSAS 기준서 문단에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추정된 공정 가치'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CVMD 범위와의 일관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함</li> </ul>
	<p><b>[IPSASB 의결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Staff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li> </ul>

**5.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는 현행의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와 연관된 기준서들의 개정 사항을 개발하기 위한 IPSASB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6월에 프로젝트 개요서(PB)가 승인된 이후 단계 별로 추진되어 왔다.

IPSASB는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현행 IPSAS 1,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2006년 최초 개정)와 IPSASB 개념체계(2014년 발표) 사이에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IPSAS 1의 개발 토대였던 IAS 1, 재무제표 표시가 2024년 중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로 개정 대체됨에 따라 IFRS와의 정합성을 적절히 유지한다는 IPSASB 정책에 근거하여 IFRS 18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IPSASB는 2025년 3월 정례회의에서 재무성과표상 표시 방법과 관련된 IPSASB의 예비견해(preliminary view)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채택된 예비견해는 추후 발표될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무성과표상 수익 및 비용 과목을 범주화하기 위한 접근법으로서 IFRS 18에서 요구하는 범주를 사용하는 방안과 정부재정통계지침(GFSM)에 따른 정부운영표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특유의 범주를 새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당기순손익의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과 비용 항목의 표시 위치에 대해서는 IFRS 18과 일치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재무성과표 표시)과 현행 IPSAS 1의 규정을 가능한 유지하는 방안(자본/순자산변동표 표시)이 거론되었는데, 결과적으로 IPSASB는 이 중 후자를 자신의 예비견해로 채택할 것을 결정하였다.

## ● 시사점

IPSASB는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지난 2024년에 발표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IPSASB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재무제표 요소별 정의나 상계 표시와 같은 일반원칙 등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주요 재무제표별로 그 본문에 표시될 정보의 유형과 성격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여 왔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특히 재무성과표상에 수익·비용 과목을 IFRS 18과 같은 종류의 범주인 ‘영업, 투자, 재무’로 나누어 표시하는 방안과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재무성과표의 경우 재무상태표나 순자산변동표와 달리 공공부문의 운영 성과를 다루는 만큼 공공부문의 거래 목적이나 특징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재무제표이므로, 재무성과표에 표시할 범주를 정할 때 ‘운영역량, 재무역량’ 또는 ‘교환거래, 비교환거래’와 같은 공공부문 특유의 개념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IPSASB는 공공부문실체의 목적과 성과는 실체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전 세계 모든 공공부문실체에게 목적적합하면서 적용 가능한 범주를 따로 만들어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익·비용 정보를 IFRS와 다르게 표시할 경우 이용자의 혼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공공부문실체의 접근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근거로 IFRS 18의 범주와 일치시키는 방향의 대안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PSASB의 이러한 판단은 공공부문 재무정보와 민간부문 재무정보가 서로 손쉽게 통용되도록 만드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IPSAS 적용 이슈나, 공공부문 재무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접근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회계의 경우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국가결산 체계개편 작업의 결과로 주요 재무제표의 본문에 표시될 재무정보의 유형이 큰 폭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러한 개정에는 국가재정운영표를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기능별 재정운영표로 이원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 체계 개편의 목표로 ‘국민 체감형 국가결산 체계로의 개편’을 언급하면서 개편 방향 중 하나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용이한 결산보고서 작성’으로 설정한 바 있지만, IPSASB와 같이 민간과 공공 사이의 정보의 상호운용성까지 비중 있게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능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국가의 예산편성 체계 중 하나인 ‘분야’를 중심으로 산정한 순원가 정보를 그 본문에 표시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운영표의 주요 이용자를 재정당국과 같이 국가예산체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자로 상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민간회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진 일반 국민의 경우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만약 기능별 재정운영표의 수익·비용 범주를 IFRS와 유사하게 ‘운영·투자·재무’로 설정하거나 이와 같은 범주를 이용한 주식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면, 민간부문 재무제표와의 상호운용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공기업과의 연결을 통한 통합 재무제표의 작성이나 자본시장에서의 국가 재무제표 정보의 유용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11.2.1	<p><b>재무성과표상 수익 및 비용의 범주화</b></p> <p><b>[Staff 권고사항]</b>                      Staff는 IPSASB가 다음에 대해 동의할 것을 권고함                      (a) 안건 11.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문보고서의 탭터 4를 구성할 것                      (b) 재무성과표에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 과목들을 IFRS 18과 일치하는 범주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예비견해를 자문보고서에 포함시킬 것</p>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는 현재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를 위한 자문보고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공부문에도 적합하다면 IFRS 18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향의 전략적 접근법을 채택한 바 있음</li> <li>• 재무성과표는 공공부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정보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데, 2000년에 처음 발표된 IPSAS 1은 최소한의 표시 및 공시 규정만을 두어 범주화 측면에서 IFRS 18에 비해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기준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일 기간의 모든 수익 및 비용을 재무성과표에 표시하도록 요구</li> </ul> </li> <li>• 2024년 12월 회의에서 IPSASB는 재무성과표상 수익·비용을 특정 범주로 분류하여 표시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개념적으로 볼 때 정보의 범주화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재무성과 정보를 이해·분석·비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li> <li>(b) 실무적으로 볼 때 공공부문의 수익 및 비용을 IFRS 18과 일치하는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유용한지 심의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RS 18은 수익·비용 과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이상 5개의 특정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며, 그중 영업, 투자, 재무는 신규 범주임</li> </ul> </li> </ul> </li> <li>• IPSASB는 범주화가 실무적으로 재무성과표에 어떤 방법으로 도입되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Staff에게 공공부문 재무성과표에 관한 추가적인 사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함</li> </ul>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는 교육기관, 건강보험, 정부 이상 세 가지의 공통적인 공공부문실체 유형을 식별하였으며, 해당 유형의 실체들의 최근 재무제표를 30개 이상 입수함</li> <li>• Staff 수익 및 비용, 잠정적인 범주의 성격과 실질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재무성과표에 범주화를 도입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 사례들로부터 IFRS 18과 일치하는 범주로 수익·비용 과목을 분류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음</li> <li>(b) 분석 결과, 지난 12월 회의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IFRS 18과 일치하는 범주로 수익·비용 과목을 분류하는 것이 예상되는 범주화의 효익을 달성할 수 있음</li> </ul> </li> <li>• Staff는 자문보고서 논의 지원을 위해 IFRS 18과 일치하는 범주를 적용하였을 때 수익 및 비용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사례를 개발하였음(부록 1 참고)</li> </ul>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사례 1: 뉴질랜드 교육기관〉

Illustrative Example 1 (IFRS 18 Categories): Education Institute – New Zealand

Current presentation		Proposed presentation	Expected Category
<b>Education Institute - New Zealand</b> for the year ended [MM] [DD] [YYYY]		<b>Education Institute - New Zealand</b> for the year ended [MM] [DD] [YYYY]	
Government grants	xx	Government grants	xx Operating
Tuition fees	xx	Tuition fees	xx Operating
Research and contracts	xx	Research and contracts	xx Operating
Other revenue	xx	Other revenue (operating portion)	xx Operating
Other gains/(losses)	xx	Transfer of funds from restricted to unrestricted	xx Operating
Transfer of funds from restricted to unrestricted	xx	<b>Total operating revenue</b>	<b>xx Operating</b>
<b>Total operating revenue</b>	<b>xx</b>		
People costs	xx	People costs	xx Operating
Operating costs	xx	Operating costs	xx Operating
Finance costs of borrowing	x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xx Operating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xx	<b>Total operating expenses</b>	<b>xx Operating</b>
<b>Total operating expenses</b>	<b>xx</b>	<b>Operating surplus or deficit</b>	<b>xx Operating</b>
<b>Net surplus/(deficit) before tax</b>	<b>xx</b>	Other revenue (investing portion)	xx Investing
		Other gains/(losses)	xx Investing
Income tax expense/(benefit)	xx	<b>Surplus or deficit before financing and income taxes</b>	<b>xx Investing</b>
<b>Net surplus/(deficit) after tax</b>	<b>xx</b>	Finance costs of borrowing	xx Financing
		<b>Surplus or deficit before income taxes</b>	<b>xx Financing</b>
		Income tax expense/(benefit)	xx Income taxes
		<b>Net surplus/(deficit)</b>	<b>xx Income taxes</b>

〈사례 2: 스위스 지역 병원〉

Illustrative Example 2 (IFRS 18 Categories): Regional Hospital – Switzerland

11.2.1

Current presentation		Proposed presentation	Expected Category
<b>Regional Hospital - Switzerland</b> for the year ended [MM] [DD] [YYYY]		<b>Regional Hospital - Switzerland</b> for the year ended [MM] [DD] [YYYY]	
Income inpatients	xx	Income inpatients	xx Operating
Income outpatients	xx	Income outpatients	xx Operating
External contracts and other medical income	xx	External contracts and other medical income	xx Operating
Income from research and teaching	xx	Income from research and teaching	xx Operating
<b>Net revenue from deliveries and services</b>	<b>xx</b>	Non-medical income (grants, services-in-kind)	xx Operating
		Transfers from Swiss States	xx Operating
Non-medical income (grants, services-in-kind)	xx	Income from own work capitalized	xx Operating
Transfers from Swiss States	xx	Change in treatments started	xx Operating
Income from own work capitalized	xx	<b>Total operating revenue</b>	<b>xx Operating</b>
<b>Other operating income</b>	<b>xx</b>		
Change in treatments started	xx	Personnel expenses	xx Operating
<b>Operating income</b>	<b>xx</b>	Medical fees	xx Operating
		Medical expenditure	xx Operating
Personnel expenses	xx	Non-Medical expenditure	xx Operating
Medical fees	xx	Rental expenses	xx Operating
Medical expenditure	xx	Depreciation of fixed assets and PPE	xx Operating
Non-Medical expenditure	xx	Amortization of intangible assets	xx Operating
<b>Operating expenses excluding rental expenses</b>	<b>xx</b>	<b>Total operating expenses</b>	<b>xx Operating</b>
		<b>Operating surplus or deficit</b>	<b>xx Operating</b>
Withdrawal/(contribution): funds in debt transfer funds	xx	Financial result (investing portion)	xx Investing
<b>Operating result: EBITDAR</b>	<b>xx</b>	Result from associated companies (dividend income)	xx Investing
Rental expenses	xx	<b>Surplus or deficit before financing</b>	<b>xx Investing</b>
<b>Operating result: EBITDA</b>	<b>xx</b>	Financial result (financing portion)	xx Financing
Depreciation of fixed assets and PPE	xx	Withdrawal/(contribution): funds in debt transfer funds	xx Financing
Amortization of intangible assets	xx	<b>Net surplus/(deficit)</b>	<b>xx Financing</b>
<b>Operating result: before financial result: EBIT</b>	<b>xx</b>		
Financial result (interest on borrowings, instruments)	xx		
Result from associated companies (dividend income)	xx		
<b>Profit or loss of the period</b>	<b>xx</b>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	----

〈사례 3: 캐나다 지방정부〉

Illustrative Example 3 (IFRS 18 Categories): Municipal Government Body – Canada

Current presentation		Proposed presentation	Expected Category
<b>Municipal Government Body – Canada</b> for the year ended [MM][DD][YYYY]		<b>Municipal Government Body – Canada</b> for the year ended [MM][DD][YYYY]	
Property taxes and taxation from other governments	xx	Property taxes and taxation from other governments	xx <b>Operating</b>
Government transfers	xx	Government transfers	xx
User charges	xx	User charges	xx
Municipal land transfer tax	xx	Municipal land transfer tax	xx
Rent and concessions	xx	Rent and concessions	xx
Development charges	xx	Development charges	xx
Investment income	xx	Other revenue sources	xx
Government business enterprises earnings	xx	<b>Total operating revenue</b>	<b>xx</b>
Other revenue sources	xx		
<b>Total revenues</b>	<b>xx</b>		
Transportation	xx	Transportation (operating portion)	xx
Social and family services	xx	Social and family services (operating portion)	xx
Protection to persons and property	xx	Protection to persons and property (operating portion)	xx
Environmental services	xx	Environmental services (operating portion)	xx
Recreation and cultural services	xx	Recreation and cultural services (operating portion)	xx
Social housing	xx	Social housing (operating portion)	xx
General government	xx	General government (operating portion)	xx
Health services	xx	Health services (operating portion)	xx
Planning and development	xx	Planning and development (operating portion)	xx
<b>Total expenses</b>	<b>xx</b>	<b>Total operating expenses</b>	<b>xx</b>
<b>Annual surplus</b>	<b>xx</b>	<b>Operating surplus or deficit</b>	<b>xx</b>
		Investment income	xx <b>Investing</b>
		Government business enterprises earnings	xx
		<b>Surplus or deficit before financing</b>	<b>xx</b>
<b>Annual surplus</b>	<b>xx</b>	Interest expense on long-term debt	xx <b>Financing</b>
		<b>Net surplus/(deficit)</b>	<b>xx</b>

공공부문 특화 범주에 대한 논의

11.2.1

- 일부 IPSASB 위원은 국가 간 혹은 국가 내 공공부문의 재무성과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IFRS 18과 상이한 세트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바 있음
- 공공부문실체의 현재 및 미래 기간의 목표와 역할, 활동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 특화된 범주를 식별하고 요구하는 것이 주목할 만한 이점이 있으나, IFRS 18의 범주를 대체할 실현 가능한 대안은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는 등 IFRS 18과 다른 세트의 범주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 Staff 및 T/F는 공공부문 특화 범주의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음
  - (a) 공공부문에서 표준화된 범주는 전 세계 공공부문의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정보 수요를 이루기 위해 충분한 수준으로 포괄적이면서도 이해 가능해야 함. 공공부문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는 서로 매우 다르며, 이로 인해 주요 이용자의 그룹과 그들 각각의 정보 수요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임
  - (b) 실체별로 자신에게 적절한 범주를 정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에도 검토하였으나, 이 방안은 파편화된 보고 관행을 줄이거나 정보의 비교 가능성 및 유용성을 높일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c) 일부 IPSASB 위원이 제안한 바 있는 ‘운영역량(operational capacity)/재무역량(financial capacity)’ 또는 ‘교환/비교환과 같이 타 IPSAS 개발 과정에서 개발된 기존 개념을 차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이러한 개념은 특정 용도로 고안된 것으로 재무성과를 범주화하는 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d) 다음 대안과 같이 다른 일부 IPSASB 위원이 제안한 바 있는 IFRS 18 범주 중 특정 범주를 통합하거나 범주의 구성 및 명칭을 수정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하였음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안) IFRS 18 범주 구성의 변형 공공부문실체의 현재 및 미래의 서비스 전달 목표 달성 여부 및 미래 서비스 전달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활동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IFRS 18의 범주를 일부 변형하여 도입</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범주</th> <th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수익 및 비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운영(Operating)</td> <td>현재 서비스 또는 현재의 운영역량 변화와 관련된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투자(Investing)</td> <td>미래 서비스를 위한 투자액 또는 미래의 운영역량 변화와 관련된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예: 특정 수선유지비, 손상차손, 현행가치 측정 관련 손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자금조달(Funding)</td> <td>미래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활동, 영업외 실제 투자자산의 회수, 실체의 재무거래 효과에 기인하는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td> </tr> </tbody> </table>	범주	해당 수익 및 비용	운영(Operating)	현재 서비스 또는 현재의 운영역량 변화와 관련된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	투자(Investing)	미래 서비스를 위한 투자액 또는 미래의 운영역량 변화와 관련된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예: 특정 수선유지비, 손상차손, 현행가치 측정 관련 손익)	자금조달(Funding)	미래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활동, 영업외 실제 투자자산의 회수, 실체의 재무거래 효과에 기인하는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		
범주	해당 수익 및 비용										
운영(Operating)	현재 서비스 또는 현재의 운영역량 변화와 관련된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										
투자(Investing)	미래 서비스를 위한 투자액 또는 미래의 운영역량 변화와 관련된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예: 특정 수선유지비, 손상차손, 현행가치 측정 관련 손익)										
자금조달(Funding)	미래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활동, 영업외 실제 투자자산의 회수, 실체의 재무거래 효과에 기인하는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										
	<p>→ 이 방안으로 범주화할 경우 공공부문에서는 IFRS 18의 영업 범주가 두 개(영업/비영업)로 분리되어 표시되며, 투자 및 재무 범주가 하나(자금조달)로 통합되어 표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으로 볼 때 전 세계 공공부문을 위한 별도의 범주를 식별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공부문의 수익·비용을 재무성과표에 IFRS 18의 범주와 상이하게 표시하는 대안은 국제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포괄적인 범주의 식별 및 정의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실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모든 공공부문실체에 유용하고 목적적합하며, 적용 가능한 범주를 식별하고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움. IASB의 경우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 회계 관점에서 근본적이고 널리 알려진 개념인 '영업, 투자, 재무'를 사용하기로 결정함</li> </ul> </li> <li>(b) 혼동 및 오적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범주를 통합하거나 범주의 구성을 수정하는 것은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명확성을 저해할 수 있음. 수익 및 비용의 경우 IFRS와 IPSAS 사이에 그 유형과 회계 처리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을 다르게 표시하는 것은 정보를 불명명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혼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공공부문실체의 접근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li> </ul> </li> </ul> </li> </ul> <p>IPSASB 논의 경과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현재까지의 IPSASB의 논의 및 분석내용을 정리하여 IPSASB 개념체계의 관련 지침에 함께 자문보고서 챕터 4에 수록함 (전문은 안건 11.3.1 참고)</li> </ul>										
11.2.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챕터 4)</th> <th style="text-align: center;">작성 근거</th> </tr> </thead> <tbody> <tr> <td>(a) 주제 관련 주요 배경</td> <td>2024년 12월 정례회의 논의 결과 기반으로 서술</td> </tr> <tr> <td>(b) 범주화의 개념적 이점에 대한 IPSASB의 견해</td> <td>2024년 12월 정례회의 논의 결과 기반으로 서술</td> </tr> <tr> <td>(c) 전 세계 공공부문의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수요 고려</td> <td>2024년 12월 정례회의 논의결과 및 2025년 3월 추가 분석 결과 기반으로 서술</td> </tr> <tr> <td>(d) IPSASB가 식별한 범주 도입 위한 두 가지 실무적 접근법(IFRS 18 범주 사용 vs 공공 부문 특유 범주 사용)</td> <td>2024년 12월 정례회의 논의 결과 및 2025년 3월 추가 분석 결과 기반으로 서술</td> </tr> </tbody> </table>	내용(챕터 4)	작성 근거	(a) 주제 관련 주요 배경	2024년 12월 정례회의 논의 결과 기반으로 서술	(b) 범주화의 개념적 이점에 대한 IPSASB의 견해	2024년 12월 정례회의 논의 결과 기반으로 서술	(c) 전 세계 공공부문의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수요 고려	2024년 12월 정례회의 논의결과 및 2025년 3월 추가 분석 결과 기반으로 서술	(d) IPSASB가 식별한 범주 도입 위한 두 가지 실무적 접근법(IFRS 18 범주 사용 vs 공공 부문 특유 범주 사용)	2024년 12월 정례회의 논의 결과 및 2025년 3월 추가 분석 결과 기반으로 서술
내용(챕터 4)	작성 근거										
(a) 주제 관련 주요 배경	2024년 12월 정례회의 논의 결과 기반으로 서술										
(b) 범주화의 개념적 이점에 대한 IPSASB의 견해	2024년 12월 정례회의 논의 결과 기반으로 서술										
(c) 전 세계 공공부문의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수요 고려	2024년 12월 정례회의 논의결과 및 2025년 3월 추가 분석 결과 기반으로 서술										
(d) IPSASB가 식별한 범주 도입 위한 두 가지 실무적 접근법(IFRS 18 범주 사용 vs 공공 부문 특유 범주 사용)	2024년 12월 정례회의 논의 결과 및 2025년 3월 추가 분석 결과 기반으로 서술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p><i>범주화 관련 예비견해(안) 논의</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F 위원 7명 중 4명이 IFRS 18의 범주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보다 구조화된 재무성과표 제공으로 이용자의 이해 분석·비교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IFRS 18의 범주의 사용을 지지하였음</li> <li>Staff는 상기 T/F 피드백과 이 안건에 제시한 추가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IPSASB가 자신의 예비견해를 자문보고서 챗터 4에 다음과 같이 제시할 것을 제안함</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5px;"> <p>IPSASB의 예비견해는 <b>재무성과표에</b>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하는 <b>수익 및 비용 과목들을 IFRS 18과 일치하는 범주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요구</b>하여야 한다는 것이다.</p> </div> <p><b>[IPSASB 의결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Staff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li> </ul>
	<p><b>당기순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의 표시</b></p> <p><b>[Staff 권고사항]</b></p> <p>Staff는 IPSASB가 자문보고서를 통해 다음을 제안할 것을 권고함</p> <p>(a) 안건 11.3.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문보고서의 챗터 5를 구성할 것</p> <p>(b) 당기순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 과목을 순자산변동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IPSAS 1, 재무제표 표시에 유지하고, 이러한 과목을 지칭하는 용어로 '기타재무성과(Other Financial Performance)'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예비견해를 자문보고서에 포함시킬 것</p>
11.2.2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수의 IPSAS 기준서는 당기순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특정 수익 및 비용을 순자산변동표상의 순자산에 직접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IFRS 18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임</li> <li>2024년 12월 회의에서 IPSASB는 분과별 회의를 통해 이러한 과목들과 관련된 IPSAS의 표시 규정들이 충분한 투명성과 소통을 제공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 한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원활한 다음 논의를 위해 Staff에게 다음을 지시한 바 있음</li> </ul> <p>(a) IASB의 경우 어떠한 수익 및 비용 과목들을 당기순손익 외부에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p> <p>(b) IFRS 18의 규정을 따르는 방안과 IPSAS 1의 규정을 유지·개선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각각 평가할 것</p> <p><b>[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범위에 개별 IPSAS의 측정 규정에 대한 검토는 포함되지 않지만, 당기순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비용 과목의 표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IASB가 어느 수익·비용 과목을 당기순손익과 그 외부에 인식하는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음</li> <li>IASB와의 논의 결과, Staff는 IASB의 경우 당기순손익의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비용 과목들(즉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의 목록은 각 기준서별 의사결정의 결과로 정해진 것으로, IASB는 기타포괄손익 관련 개념적 근거나 정의, 규정화된 목록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li> </ul>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ff는 상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IPSASB가 자신의 견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li> <li>(a) 재무정보의 <b>투명성이 최우선</b> 고려사항임. 투명성은 공공부문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기간의 보고실체의 재무성과를 보다 잘 분석하고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임</li> <li>(b) 특정 재무정보의 <b>위치</b>(예: 어느 재무제표에 표시되는지)와 당해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b>용어</b>(예: 기타포괄손익)가 <b>투명성을 강화</b>하거나 달성하기 위한 도구임. 이용자는 개념적으로 무결한 정보가 표시되는 것보다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기 원함</li> <li>(c) IPSASB는 IFRS 18 접근법과 IPSAS 1 접근법 중에서 <b>어느 표시 접근법이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할지 선택</b>해야 함</li> <li>• 또한 이 프로젝트의 범위에 어느 과목을 당기순손익 또는 그 외부에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음을 주지할 것을 IPSASB에 당부함</li> <li>(a) 투명성 강화 및 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제고를 달성 가능한 당기순손익 외부 인식 수익·비용의 표시 방법을 자문보고서를 통해 제안할 것</li> <li>(b) 특정 수익·비용 과목의 인식·측정·재분류·당기순손익 외부 표시 여부와 관련된 과거 의사결정에 대한 재평가는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li> <li>(c) 재분류 관련 규정의 경우 이 프로젝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 IPSAS 기준서들의 회계원칙에 기반하므로, 재분류 조정과 관련된 현재의 표시 지침은 계속 사용하도록 자문보고서를 통해 제안할 것</li> </ul>

*IPSASB 논의 경과 정리*

- Staff는 현재까지의 IPSASB의 논의 및 분석내용을 정리하여 IPSASB 개념체계의 관련 지침에 함께 자문보고서 챕터 5에 수록함(전문은 안건 11.3.2 참고)

내용(챕터 5)	작성 근거
(a) 주제 관련 주요 배경	2024년 12월 정례회의 및 분과별 회의 논의 결과 기반으로 서술
(b) 재무정보의 투명성 및 일반 원칙의 적용 관련 논의사항	2024년 12월 정례회의 및 분과별 회의 논의 결과 기반으로 서술
(c) IPSASB가 식별한 두 가지 표시 접근법 (IFRS 18 규정과 일치 vs IPSAS 1 규정 유지 및 개선)	2024년 12월 정례회의 및 분과별 회의 논의 사항 및 2025년 3월 추가 분석 결과 기반으로 서술
(d) 당기순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비용 및 관련 합계액을 지칭하는 용어 제안	2024년 12월 정례회의 논의 결과 및 2025년 3월 추가 분석 결과 기반으로 서술
(e) 재분류 조정에 관한 표시 지침의 유지 제안	2025년 3월 정례회의 안건에서 제안된 내용과 동일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p><i>‘위치’에 대한 예비견해(안)</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F 위원 7명 중 5명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IPSAS 1의 규정을 유지 및 개선하는 방안을 지지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현재와 같이 순자산변동표에 이러한 수익·비용 과목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회계책임 평가 및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된 공공부문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음</li> <li>(b) 정보의 위치는 IFRS 18과 다르지만 표시되는 정보는 동일함</li> <li>(c) 당기순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중요한 수익 및 비용 과목 관련 유용한 정보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만들기 위한 IPSAS 1 현행 규정의 개선 여지가 충분함</li> </ul> </li> <li>Staff는 상기 T/F 피드백과 이 안건에 제시한 추가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IPSASB가 자신의 예비견해를 자문보고서 챕터 5에 다음과 같이 제시할 것을 제안함</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5px; margin-top: 10px;"> <p>IPSASB의 예비견해는 당기순손익의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 과목을 <b>순자산변동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IPSAS 1 규정을 유지 및 개선</b>해야 한다는 것이다.</p> </div>
11.2.2	<p><i>‘용어’에 대한 예비견해(안)</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12월 분과별 회의에서 당기순손익의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 과목을 지칭하는 용어 대안들 중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은 없었음. 다만 Staff는 이러한 과목들을 ‘기타재무성과(Other Financial Performance)’로 지칭할 것을 제안하고, 그 근거를 자문보고서 챕터 5에 서술한 바 있음. 여기에 더하여 (1) 당기순손익(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과 (2) 기타재무성과(당기순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의 합계액으로 ‘재무성과 합계(Total Financial Performance)’를 제안함</li> <li>T/F는 Staff가 제안한 용어와 관련하여 IPSASB가 향후 채택할 표시 접근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절한 용어가 달라질 수 있어 하나의 ‘완벽한’ 용어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절반의 T/F 위원이 ‘기타재무성과’ 또는 ‘기타성과항목(Other Performance Items)’의 사용을 지지하였고, 일부는 IPSASB가 IFRS 18 규정과 일치시키는 접근법을 채택할 경우 ‘기타포괄손익(OCI)’로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함</li> <li>Staff는 상기 T/F 피드백과 이 안건에 제시한 추가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IPSASB가 자신의 예비견해를 자문보고서 챕터 5에 다음과 같이 제시할 것을 제안함</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5px; margin-top: 10px;"> <p>IPSASB의 예비견해는 순자산변동표상 당기순손익의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 과목을 지칭하는 용어로 <b>‘기타재무성과(Other Financial Performance)’</b>를 사용하고, 여기에 더하여 당기순손익(Surplus or Deficit)과 기타재무성과의 합계액을 지칭하는 용어로 <b>‘재무성과 합계(Total Financial Performance)’</b>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p> </div> <p><b>[IPSASB 의결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Staff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li> </ul>

## 6.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최근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개발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 이행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IPSASB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공공부문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에 착수하였고, 2024년 9월에 그 첫 번째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공개 초안(Exposure Draft)인 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를 발표하였다.

이 공개초안은 민간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 프레임워크 기반 위에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는데, IPSASB는 그 이유를 이러한 접근법이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면서도 공공부문 간 일관되고, 비교가능하며, 검증가능한 공시를 요구하는 기준 정립에 용이한 접근방법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개초안이 제안하는 기후 관련 공시사항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축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사항으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CFD)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sup>2)</sup>를 기반으로 구성된 것이다. 다른 하나의 축은 기후정책 결과와 관련된 공시사항으로,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의 다중 이해관계자 관점을 이용하여 공공부문의 규제자적 역할과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 그 밖에 공개초안은 기후 관련 공시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는 개념적 기반과 일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규정들은 IPSASB의 개념체계<sup>3)</sup>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IFRS S1, 일반 요구사항<sup>4)</sup>을 토대로 개발된 것이다. IPS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공개 자문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120일간 진행하였다.

2)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3)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4)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주로 향후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25년 12월 최종 공표문(final pronouncement) 공표를 목표로 자문위원회(CAG) 회의, 지속가능성 참조그룹(SRG) 회의, 기후 주제 작업 그룹(CTWG) 회의, 지속가능성 이행 포럼(SIF) 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 시사점

민간부문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필요성과 정보이용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요구사항) 및 IFRS S2(기후 관련 공시기준)가 제정·공표되었으며 국내 상장 공기업 또한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추후 최종 공시기준의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환경 이슈 전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과 이에 근거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동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현황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또한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주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IPSASB가 공공부문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개발에 있어 글로벌 자문 역할을 주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IPSASB는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요구사항) 및 IFRS S2(기후 관련 공시기준)를 기반으로 공공부문에 특화된 IPSASB ED 1,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을 개발하였으며, 2025년 2월에는 광범위한 외부 의견 수렴 활동을 실시하였다.

IPSASB는 2025년 12월 해당 공시기준의 최종 공표를 목표로 일정을 수립·진행 중에 있으며, IPSASB가 제정할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국내 적용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해당 기준을 직접 채택하지 않더라도 향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발 과정에서 유의미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표 6**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 13: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b>기후 관련 공시 - 주요 결정 사항 검토</b>
	<b>[목적]</b> 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에서 반영된 주요 IPSASB 결정 사항에 대한 개요를 제공
	<b>[배경]</b> <b>자문보고서-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b>
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1월, 세계은행은 “주권 기후 및 자연 보고: 위험 및 기회 공시 프레임워크 제안”을 발표하며, IPSASB가 공공부문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에 관한 글로벌 자문을 주도할 것을 촉구함. 2022년 5월, IPSASB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을 위한 자문 보고서를 발표함</li> <li>2022년 12월, 자문보고서 의견수렴 응답에서 확인된 강력한 지지에 기반하여 IPSASB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확정함. 초기 연구와 적용범위 설정 후 IPSASB는 2023년 6월에 공공부문에 특화된 기후 관련 공시 표준 개발을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함. IPSASB의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의 적용범위, 초점, 내용은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과 방향에 의해 형성됨</li> <li>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IPSASB의 강화된 기준 설정 프로세스와 IPSASB의 집중적인 논의 및 숙고의 결과, 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가 2024년 9월에 공개 자문을 위해 승인됨. IPSASB SRS ED 1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 까지 120일간의 자문 기간 동안 공개되었음. 이 기간 동안 광범위한 외부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안건 13.2.2에 요약됨</li> <li>IPSASB는 IPSASB SRS ED 1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정을 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 시 공공부문 실체의 일반목적재무보고를 위한 IPSASB 개념적 프레임워크 적용</li> <li>(b) ISSB 기준을 포함한 관련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을 바탕으로 구축</li> <li>(c) 다양한 중요성 개념과 그 실무 적용을 고려한 후, 중요성 정의를 IPSASB 개념적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조정</li> <li>(d) 권장실무지침(RPG) 3, 서비스 성과 정보 보고에 따라 실체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결과 보고에 집중</li> <li>(e) 공공부문 보고서 공공부문의 이중 역할과 광범위한 이용자 요구를 반영</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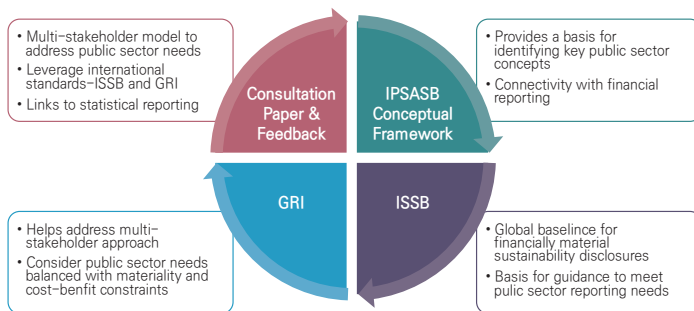
**표 6** 의 계속

**■ 안건 13: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	----

**[IPSASB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

- 2023년 3월, IPSASB는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잠재적 프로젝트의 적용범위를 자문보고서에 대한 응답, IPSASB 개념적 프레임워크,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기반으로 설정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함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기반으로 한 개발]**

11.2.1

- 2023년 9월(안건 13.2.1), IPSASB는 기후 관련 공시 기준 개발 접근법을 논의함. 기존 국제 지침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IPSASB SRS ED 1 개발 과정이 IPSASB가 재무보고 기준을 개발할 때 따르는 IASB 문서 검토 및 적용 절차와 일치한다고 판단함
- 기준 설정 절차와 지속가능성 참조 그룹(SRG) 및 기후 주제 작업 그룹(CTWG)의 조언을 바탕으로 IPSASB는 IFRS S2를 기반으로 IPSASB SRS ED 1을 개발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IFRS S1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결정함. 이 과정에서 GRI 지침도 적절한 경우 참고하기로 함
- 이에 따라 IPSASB SRS ED 1은 IFRS S2의 네 가지 핵심 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맞춰 구성됨. 이 네 가지 요소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를 선도하는 기관들이 프레임워크로 활용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과 일치함

**[IPSASB 개념적 프레임워크의 중요성 정의와 정합성 유지]**

- 2023년 12월(안건 6.2.3), IPSASB는 중요성의 정의와 IPSASB SRS ED 1에 가장 적절한 접근법을 논의함. 재무적 중요성, 영향 기반 중요성, 이중 중요성, 동적 중요성 등의 다양한 옵션을 검토함
- 지속가능성 참조그룹(SRG) 및 기후 주제 작업 그룹(CTWG)의 조언을 바탕으로, IPSASB는 중요성이 회계책임 이행과 의사결정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며, 실체별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함
- 이에 따라 IPSASB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해 IPSASB 개념적 프레임워크상의 중요성 정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함. 이를 통해 개념적 프레임워크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IPSASB SRS ED 1에 일관된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도록 함

표 6 의 계속

■ 안건 13: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p><b>[공공부문의 이중 역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3월(안건 10.2.3), IPSASB는 공공부문 실체가 보조금, 법률, 조세, 규제 등의 공공 부문 특화 수단을 통해 다른 실체나 개인의 활동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역할을 논의함</li> <li>IPSASB는 이러한 이중 역할이 공공부문의 핵심적인 차이점이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 부문 특화 원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민간부문 지침이 실체의 자체 운영을 다루는 기초를 제공하지만, 정책 및 규제 역할과 관련된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공부문 특화 원칙과 적용 지침이 필요하다고 결정함</li> <li>또한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범위는 기후 관련 성과 달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에 책임이 있는 실체만이 관련 공시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함</li> </ul>
11.2.1	<p><b>[성과 보고에 집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5월(승인된 5월 Check-in Meeting 회의록 참조), IPSASB는 보고의 적용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영향(impacts)', '산출물(outputs)', '성과(outcomes)'를 논의하였음. IPSASB는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에서 '영향'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명확한 보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li> <li>이에 따라 IPSASB는 RPG 3의 '성과' 및 '영향' 관련 지침을 참고하였음. IPSASB는 "기관의 산출물에 의해 직접 발생하거나 합리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영향"만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음. 따라서 RPG 3과 일관되게 '성과'를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고하는 개념과 지침을 적용하기로 하였음</li> </ul> <p><b>[보고 체계 내에서 IPSASB의 역할 명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12월(안건 10.2.2), IPSASB SRS ED 1 승인에 앞서 이루어진 주요 결정과 더불어, IPSASB는 전체 보고 체계 내에서 IPSASB의 임무를 논의하였으며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에 있어 IPSASB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였음</li> <li>IPSASB는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의 적용범위를 설정할 때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GPFRs)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야 하며, 보다 광범위하거나 일반적인 보고서와 구분해야 한다고 확인하였음. 또한 GPFRs 내 정보가 재무제표를 보완하고 강화하며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IPSASB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에 있어 핵심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함</li> </ul> <p><b>[의사결정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 제공 및 논의만을 위한 항목이며, 의사결정 필요사항 없음</li> </ul>

**표 6** 의 계속

■ **안건 13: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b>외부 의견 수렴 요약</b>																								
	<p><b>[목적]</b>                      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된 주요 외부 의견 수렴 활동을 요약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참여와 피드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p>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PSASB는 2024년 10월 31일에 IPSASB SRS ED 1을 공개하였으며, 2025년 2월 28일에 종료된 120일간의 자문 기간을 거쳤음. 기준(초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드백을 유도하기 위해 광범위한 외부 의견 수렴 활동을 수행함</li> <li>2025년 3월 3일 기준, IPSASB SRS ED 1에 대해 6개 지역 37개국과 18개 지역·국제 기구에서 총 82건의 응답이 제출됨. 안건 13.2.4에는 자문 응답 검토, 전문가 그룹과의 협의, 그리고 IPSASB SRS ED 1과 관련한 IPSASB 심의의 주요 일정 등 잠정 일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됨</li> </ul>																								
13.2.2	<p><b>[외부 의견 수렴 활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PSASB SRS ED 1은 2024년 11월 런던에서 대면 행사로 공식 발표되었으며, 이후 글로벌 온라인 행사도 진행됨. 캐나다 공인회계사협회(CPA Canada)가 해당 기준(초안)을 프랑스로 번역하였으며, 주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요약 문서(At-a-Glance)'와 웹캐스트도 제공됨. 또한 요약 브로슈어가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배포됨</li> <li>IPSASB는 IPSASB SRS ED 1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피드백을 수렴하기 위해 다섯 차례의 대면 지역별 원탁회의를 개최함. 해당 회의는 각 지역의 협력 기관과 공동으로 조직하여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영어가 주요 언어가 아닌 지역에서는 현지 언어로 발표할 수 있는 IPSASB 이사회 구성원 또는 Staff가 지원하여 원활한 소통을 진행함</li> <li>아울러 지역별 원탁회의 및 기타 외부의견 수렴 활동에 기여한 IPSASB 구성원, Technical Advisors, Observers들에게 공식적인 감사를 표함. 지역별 원탁회의의 주요 통계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개최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장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참석자 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협력 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9월 24~26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라틴아메리카)</td> <td style="text-align: center;">15개국, 19개 기관을 대표하는 32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라틴아메리카 정부회계포럼 (FOCAL) 공동 주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10월 2~3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필리핀, 마닐라 (아시아)</td> <td style="text-align: center;">18개국, 29개 기관을 대표하는 33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시아개발은행(ADB) 공동 주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10월 22~24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td> <td style="text-align: center;">17개국, 50개 기관을 대표하는 99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에미리트 공인회계사협회 (EAAA) 공동 주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11월 8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프랑스, 파리 (서유럽)</td> <td style="text-align: center;">19개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20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제적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네트워크들의 협의체인 '국제 회계법인 네트워크 협회(Forum of Firms)' 공동 주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2월 20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간다, 캄팔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td> <td style="text-align: center;">23개국, 42개 기관을 대표하는 55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범아프리카 회계사연맹(PAFA) 공동 주최</td> </tr> </tbody> </table>	개최일	장소	참석자 수	협력 기관	2024년 9월 24~26일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라틴아메리카)	15개국, 19개 기관을 대표하는 32인	라틴아메리카 정부회계포럼 (FOCAL) 공동 주최	2024년 10월 2~3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	18개국, 29개 기관을 대표하는 33인	아시아개발은행(ADB) 공동 주최	2024년 10월 22~24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	17개국, 50개 기관을 대표하는 99인	에미리트 공인회계사협회 (EAAA) 공동 주최	2024년 11월 8일	프랑스, 파리 (서유럽)	19개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20인	국제적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네트워크들의 협의체인 '국제 회계법인 네트워크 협회(Forum of Firms)' 공동 주최	2025년 2월 20일	우간다, 캄팔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3개국, 42개 기관을 대표하는 55인	범아프리카 회계사연맹(PAFA) 공동 주최
개최일	장소	참석자 수	협력 기관																						
2024년 9월 24~26일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라틴아메리카)	15개국, 19개 기관을 대표하는 32인	라틴아메리카 정부회계포럼 (FOCAL) 공동 주최																						
2024년 10월 2~3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	18개국, 29개 기관을 대표하는 33인	아시아개발은행(ADB) 공동 주최																						
2024년 10월 22~24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	17개국, 50개 기관을 대표하는 99인	에미리트 공인회계사협회 (EAAA) 공동 주최																						
2024년 11월 8일	프랑스, 파리 (서유럽)	19개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20인	국제적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네트워크들의 협의체인 '국제 회계법인 네트워크 협회(Forum of Firms)' 공동 주최																						
2025년 2월 20일	우간다, 캄팔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3개국, 42개 기관을 대표하는 55인	범아프리카 회계사연맹(PAFA) 공동 주최																						

**표 6** 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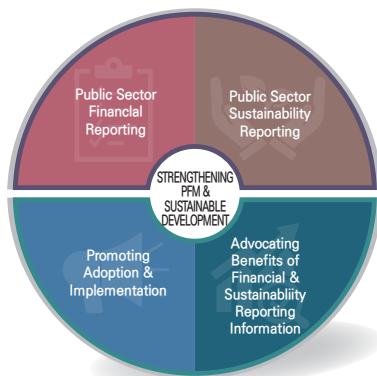
■ **안건 13: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원탁회의 외에도 IPSASB는 국제기구, 투자자, 원주민 단체 등 특정 이해관계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맞춤형 외부 의견 수렴 활동을 진행함.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2024년 12월 2일, 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PSAB) 원주민 자문 그룹과 온라인 원탁회의 개최</li> <li>(b) 2025년 1월 15일 및 17일, 세계은행 번영 포럼(World Bank Prosperity Forum) 패널 발표</li> <li>(c) 2025년 1월 29일, UN ISAR 지역 파트너십 회원(공공부문 보고 실무자 및 규제 기관 포함) 대상 브리핑</li> <li>(d) 2025년 2월 10일, 기후변화 관련 기관투자자 그룹 네트워크(IIGCC) 투자자를 대상으로 교육 세션 및 질의응답 진행</li> </ul> </li> <li>또한 IPSASB는 기준(초안) 발표를 홍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웹캐스트를 진행함. 특히 2025년 2월 4일 개최된 글로벌 온라인 원탁회의에는 104개국에서 461명 이상이 참석함</li> <li>IPSASB 직원들은 IPSASB SRS ED 1의 주요 개념에 대한 외부 의견 수렴 활동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함. 이 피드백과 접수된 의견서는 함께 분석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잠정 일정은 안건 13.2.4에 포함됨</li> </ul>
	<p><b>[의사결정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 제공 및 논의만을 위한 항목이며, 의사결정 필요사항 없음</li> </ul>
	<p><b>자문 응답 관리</b></p> <p><b>[의사결정 사항]</b></p> <p>IPSASB는 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자문 응답 및 피드백을 관리하는 제안된 접근 방식에 동의하는가?</p>
	<p><b>[제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taff는 IPSASB가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이 최종 발표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문 응답을 일관되게 관리할 것을 제안함</li> </ul>
13.2.3	<p><b>[배경]</b></p> <p><i>IPSASB의 2024-28 전략 이행</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12월 논의를 바탕으로, 직원들은 2024-2028 전략 및 작업 프로그램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의 다음 단계를 구체화하는 두 가지 핵심 영역을 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 2024년 12월 회의에서 논의된 잠재적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와 일치함(2025년 3월, 안건 12 참조)</li> </ul> </li> </ul>

표 6 의 계속

■ 안건 13: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b) 채택 및 이행 촉진 -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인식을 제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여기에는 기술적 실무적 용지침 제공, 교육 자료 발행, 외부 의견 수렴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ISSB가 채택한 접근방식

13.2.3

-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는 IFRS S1 및 IFRS S2 초안에 대해 1,400건 이상의 의견서 및 설문 응답을 받았으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 이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에 따라 ISSB는 IFRS S1 및 S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추가 지침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피드백 성명서(Feedback Statement)를 통해 명확히 함. 이는 기준(IFRS S1 및 S2)을 최종 확정된 후, 효과적인 채택과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IFRS S1 및 S2 승인 이후, ISSB는 안건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피드백 성명서(Feedback Statement)를 통해 IFRS S1 및 S2의 이행 지원이 향후 작업 프로그램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분석]

- Staff는 ISSB의 자문 및 작업 프로그램 접근 방식이 IPSASB가 최종 공표문을 개발하고 후속 작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a) IPSASB가 IPSASB SRS ED 1에 대한 자문 응답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함
  - (b)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기준(초안)의 이행 지원이 중요함을 보여줌
  - (c) IPSASB가 ISSB의 글로벌 기준, 기존 자료 및 지원 도구(부록 A 참조)를 활용하여 이행상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IPSASB SRS ED 1 자문 응답 관리에 대한 제안된 접근 방식

- IPSASB는 IPSASB SRS ED 1의 이행과 관련한 잠재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인식해 왔음. 공시 요구사항의 실용성 및 이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11월에 IPSASB 지속가능성 이행 포럼(IPSASB SIF)을 출범하였음(안건 13.2.4 참조). 해당 포럼은 전 세계 다양한 공공부문 기관을 대표하는 이행 리더(Implementation Leaders)들로 구성됨

**표 6** 의 계속

■ **안건 13: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1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 SRS ED 1과 관련하여 진행된 폭넓은 이해관계자 외부 의견 수렴 활동 및 소통 (의제 안건 13.2.2 참조)을 통해, 역량 부족 및 데이터 가용성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확인 됨. 이러한 우려는 IPSASB SRS ED 1이 최종 확정된 후에도 추가적인 지원과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최종 공표문의 활용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추가 자료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함</li> <li>• 지속가능성 참조 그룹(SRG) 또한 이행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IPSASB가 기준의 채택 및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Staff는 IPSASB SRS ED 1에 대한 응답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준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함</li> <li>• 그러나 기준 이행을 계획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한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침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최종 공표문의 신속한 확정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시급성에 대한 요구는 IPSASB 지속가능성 이행 포럼(IPSASB SIF)의 이행 리더(Implementation Leaders)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다수가 IPSASB가 기준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함</li> <li>• 기준의 신속한 확정과 적절한 실무적용지침 제공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Staff는 최종 공표문의 이행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프로젝트 단계를 수행할 것을 권장함</li> <li>• 제안된 프로젝트 단계는 IPSASB의 전략적 목표(문단 6 참조)와 정합성을 유지하며 다음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이행 지원 제공</li> <li>(b) IPSASB가 자문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최종 공표문 확정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함</li> <li>(c) IPSASB가 기타 국제 기준 제정 기구와 일관된 방식으로 기준의 채택 및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li> </ul> </li> </ul>												
	<p><b>[의사결정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SASB가 제안에 동의하는지?</li> </ul>												
<b>부록 A: IPSASB SRS ED 1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관련 자료 목록</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자료</th> <th style="text-align: center;">설명</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b>IPSASB SRS ED 1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성 자료</b></td> </tr> <tr> <td>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td> <td>IFRS S1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함</td> </tr> <tr> <td>IFRS S2: 기후 관련 공시</td> <td>IFRS S2는 기업이 기후 관련 공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td> </tr> <tr> <td>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td> <td>기업 및 기타 조직이 온실가스(GHG) 배출량 인벤토리를 작성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함. 이 기준에는 스코프 1, 2, 3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포함됨</td> </tr> <tr> <td>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 (스코프 3) 회계 및 보고 기준</td> <td>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하며, 스코프 3 온실가스(GHG) 배출량 보고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td> </tr> </tbody> </table>	자료	설명	<b>IPSASB SRS ED 1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성 자료</b>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IFRS S1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함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IFRS S2는 기업이 기후 관련 공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	기업 및 기타 조직이 온실가스(GHG) 배출량 인벤토리를 작성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함. 이 기준에는 스코프 1, 2, 3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포함됨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 (스코프 3) 회계 및 보고 기준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하며, 스코프 3 온실가스(GHG) 배출량 보고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자료	설명												
<b>IPSASB SRS ED 1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성 자료</b>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IFRS S1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함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IFRS S2는 기업이 기후 관련 공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	기업 및 기타 조직이 온실가스(GHG) 배출량 인벤토리를 작성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함. 이 기준에는 스코프 1, 2, 3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포함됨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 (스코프 3) 회계 및 보고 기준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하며, 스코프 3 온실가스(GHG) 배출량 보고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13.2.3 (부록)													

표 6 의 계속

■ 안건 13: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13.2.3 (부록)	<b>자료</b>	<b>설명</b>
	<b>IPSASB SRS ED 1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성 자료</b>	
	GHG 프로토콜 정책 및 조치 기준	다양한 조직과 기관이 정책 및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GHG) 배출량 및 제거량 변화를 추정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준
	GRI 보편 기준	GRI 보편 기준은 GRI 보고의 기초를 제공하며, 조직이 경제, 환경,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지원함
	SASB 산업 기준	SASB 기준은 77개 산업에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관련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식별함
	<b>기타 GHG 프로토콜 자료</b>	
	지역 규모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산정을 위한 GHG 프로토콜 글로벌 프로토콜	도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산정 및 보고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스코프 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포함됨
	GHG 프로토콜 공공부문 프로토콜	미국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운영의 고유한 구조의 필요에 맞춰 기업 기준(Corporate Standard)의 원칙을 해석하는 회계 지침
	스코프 3 배출량을 계산하는 GHG 프로토콜 기술적 지침	GHG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보조 지침으로, 기업이 스코프 3 배출량 인벤토리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b>IFRS 자료</b>	
	ISSB 기준 개요	문답 형식을 활용하여 ISSB 개요를 제공하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시 사항을 요약하며,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검토함
	TCFD에서 ISSB로 전환	TCFD에서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으로 모니터링 권한이 이관되는 의미와 작성자가 TCFD에서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함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작성자들을 위한 지침	관할 지역의 요구 사항이 없더라도 작성자가 ISSB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침
	IFRS 역량 구축 - 위험은 무엇인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과 기회들을 이해하고, 이를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숍 자료
	<b>IFRS S1을 지원하는 자료</b>	
교육 자료: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 및 중요한 정보의 공시	이 교육 자료는 중요한 정보의 특성과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개념을 설명함. 또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실체의 전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식별하고 공시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설명함	
교육 자료: IFRS S1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SASB 기준의 활용	이 교육 자료는 SASB 기준을 소개하고, 실체가 IFRS S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SASB 기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함	

표 6 의 계속

■ 안건 13: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자료	설명
	<b>IFRS S2를 지원하는 자료</b>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이행을 위한 산업별 지침	특정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 활동과 관련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 측정 및 공시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자료
	EY의 ISSB 기후 관련 공시 체크리스트	ISSB 기준 및 관련 지침에서 요구하는 기후 관련 공시 사항을 요약한 자료
	교육 자료: IFRS S2에 따라 기후 관련 공시만 보고할 경우의 IFRS S1 적용	실체가 IFRS S2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만 공시할 경우, IFRS S1의 어떤 요구사항이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
	비교 - IFRS S2와 TCFD 권고사항	IFRS S2와 TCFD 권고사항 간의 차이점을 요약한 자료
	GRI 기준과 ISSB 기준 적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호운용성 고려사항	GRI 305: 배출 2016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간의 상호운용 가능한 영역을 설명하며, 실체가 두 기준에 따라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
	<b>최종 공표문과 관련된 다른 프레임워크 및 지침</b>	
13.2.3 (부록)	ASCOR Tool - Transition Pathway Initiative	공공 투자자를 위한 지표 프레임워크로, 투자자가 국가의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을 평가하는 진척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됨
	비금융 실체를 위한 TCFD 시나리오 분석 지침	대형 및 중견 비금융 실체가 기후 관련 시나리오를 위험 관리 및 전략 수립 과정에 통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TCFD에서 개발됨
	OECD 공공 거버넌스 작업 보고서: 정부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정부 및 정부 중심 기관들이 기후변화 정책을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적 구조, 메커니즘 및 실무를 정리함
	COSO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의 달성(ICSR): COSO 내부 통제-통합 프레임워크를 통한 신뢰 구축	지속가능성 정보의 수집, 검토 및 보고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를 구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A4S 필수 지침: 가치사슬 전반에서 행동 유도	금융 전문가가 가치 사슬 전반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함

**표 6** 의 계속

■ **안건 13: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b>프로젝트 관리 - 향후 절차</b>
	<p><b>[목적]</b></p> <p>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와 관련된 향후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공하고, 프로젝트의 상세한 잠정 일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p>
	<p><b>[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관련 공시 공표문 최종 공표를 위해 IPSASB 및 Staff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함.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하려면 IPSASB와 Staff가 예상 일정 및 개발 프로세스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li> <li>•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Staff가 자문 의견과 응답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IPSASB가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2025년 남은 기간 동안의 세부 일정과 함께 제시함</li> </ul> <p><i>2025 IPSASB 지원 체계</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위원회(CAG)는 IPSASB SRS ED 1 개발 전반에 걸쳐 IPSASB에 지속적으로 유용한 조언을 제공해 왔으며, IPSASB의 Due Process에 따라 2025년에도 자문을 받을 예정임</li> <li>• 지속가능성 참조그룹(SRG)은 IPSASB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과 관련된 전략적 사안에 대해 IPSASB에 조언을 제공하고, IPSASB SRS ED 1 개발 과정에서 핵심 기술적 이슈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해 왔음. SRG는 2025년에도 IPSASB를 계속 지원할 예정임</li> <li>• 기후 주제 작업 그룹(CTWG)은 IPSASB SRS ED 1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해 왔음. IPSASB가 기준의 최종 공표를 위한 전략적 필요사항을 평가함에 따라, CTWG의 구성은 2025년 4월에 확정될 예정임</li> <li>• 2024년 11월에 출범한 지속가능성 이행 포럼(SIF)은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의 이행 리더들을 모아 IPSASB SRS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임. 이를 위해 SIF는 다음을 목표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실제 지속가능성 보고 사례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피드백을 수집하여 IPSASB SRS ED 1 개발에 반영하도록 지원</li> <li>(b) 기준의 최종 공표 이후 해당 기준의 채택 및 이행을 지원</li> <li>(c) 공공부문 실체가 기준 이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li> </ul> </li> <li>• 현재 SIF 이행 리더들은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에 참여하는 보고서 작성자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정부, 중앙정부 부처, 국제기구, 규제기관 등 다양한 기관을 대표함</li> <li>• IPSASB가 최종 기준 개발을 진행함에 따라 Staff는 SIF 이행 리더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 이슈 및 권고 사항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계획임. 이러한 논의는 보통 대면 IPSASB 회의 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이하의 잠정 일정에서 상세히 설명됨</li> </ul> <p><b>[잠정 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공표문 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IPSASB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정기적으로 수행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CAG 회의</li> <li>(b) SRG 회의</li> <li>(c) CTWG 회의</li> <li>(d) SIF 회의</li> </ul> </li> <li>• Staff는 핵심 이슈들을 분석하고, 초기 권고사항을 개발하며, 각 이슈에 적절한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여 협의할 계획임</li> </ul>
13.2.4	

표 6 의 계속

■ **안건 13: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13.2.4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은 Staff가 제시하는 2025년 계획 접근방식을 간략히 보여주는 잠정 일정으로, IPSASB의 논의 및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이슈들을 사전에 관련 지속가능성 전문가 그룹과 논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li> <li>• 본 일정과 활동은 향후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PSASB의 논의 및 결정 사항, 전체적인 접근방식 및 일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예정임. Staff는 프로젝트의 요구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고려하여 활동 및 절차를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임. 기술적 이슈에 따라 필요시에만 소집되는 CTWG 회의는 다음 일정에 포함되지 않음</li> </ul>		
	날짜	회의	안건
	3월	이사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의견 수렴 활동 결과 요약 검토</li> <li>• 자문 응답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li> </ul>
	4월	이사회 체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 응답에 대한 예비 검토</li> <li>• 주요 이슈 식별</li> <li>• 가능한 응답에 대한 논의</li> </ul>
	5월	SIF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이슈 및 가능한 응답에 대한 논의</li> </ul>
	5월	SRG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이슈 및 가능한 응답에 대한 논의</li> </ul>
	6월	CAG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개요 및 진행 상황 보고</li> <li>• 주요 이슈 및 가능한 응답에 대한 논의</li> </ul>
	6월	이사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 응답에서 확인된 주요 이슈 논의</li> <li>• 제안된 응답에 대한 논의</li> <li>• 프로젝트 최종화(finalization) 접근방식 및 일정 논의</li> </ul>
	7월	이사회 체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이사회 회의 지침 검토</li> <li>•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li> </ul>
	7월	SIF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안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li> </ul>
	8월	SRG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안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li> </ul>
	9월	이사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이사회 체크인 지침 검토</li> <li>•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li> </ul>
	10월	이사회 체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이사회 회의 지침 검토</li> <li>• 주요 원칙 최종화(finalization) 작업</li> <li>• 최종 공표문 초안 검토</li> </ul>
	11월	SRG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의견 및 조언 제공</li> </ul>
	12월	이사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공표문 승인</li> </ul>

**[의사결정 필요]**

- 정보 제공 및 논의만을 위한 항목이며, 의사결정 필요사항 없음

## 03 해외 재무결산 동향(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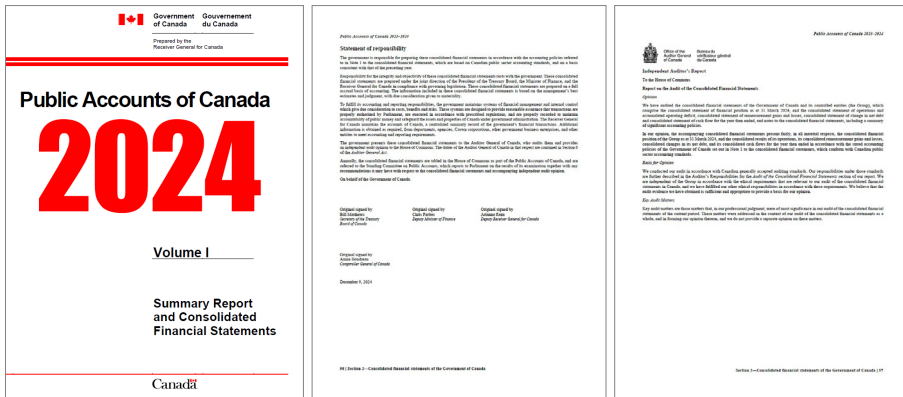
본 재무결산 동향은 2024년 12월에 발간된 캐나다 정부의 2023-24회계연도 재무결산서 Volume 1을 요약한 것으로, 원문(*Public Accounts of Canada 2024, Volume 1 : Summary Repor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anada.ca/en/public-services-procurement/services/payments-accounting/public-accounts/2024.html>

### 가. 결산서의 구성

「캐나다 재무결산서」 Volume 1은 총 12개의 절로 구성되며, 그중 제1절과 제2절에 핵심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 제1절 '재무제표의 논의와 분석'은 재무결산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제2절 '캐나다 정부의 연결재무제표'는 회계책임보고서, 독립된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총 5종으로 연결운영성과 및 누적운영적자표(Consolidated Statement of Operations and Accumulated Operating Deficit), 연결재정상태표(Consolidated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연결재측정손익표(Consolidated Statement of Remeasurement Gains and Losses), 연결순부채변동표(Consolidated Statement of Change in Net Debt), 연결현금흐름표(Consolidated Statement of Cash Flow)로 구성되며, 주석은 총 24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결산보고서 표지

회계책임보고서

독립된 감사보고서

## 나. 결산 요약

### 1)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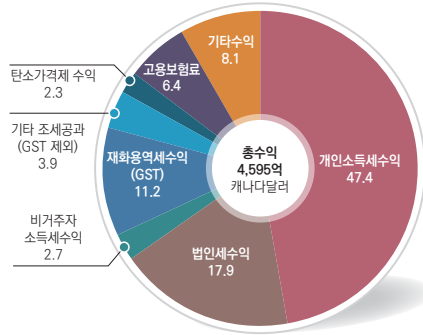
2024년 3월 31일 현재 캐나다 정부의 총수익은 4,595억캐나다달러, 총비용은 5,214억 캐나다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3월 29일(금)의 환율(1CAD=994.83KRW)을 적용하면 총수익은 약 457조원, 총비용은 약 519조원이다.

2024회계연도의 총수익은 전기 대비 117억캐나다달러(2.6%) 증가하였다. 이는 높은 고용률 및 임금 상승이 개인소득세수익을 98억캐나다달러 증가시킨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과 고용 증가로 고용보험료수익(Employment insurance premiums)이 26억캐나다달러 늘었고, 탄소배출 단위당 가격의 증가로 탄소가격제 수익(Pollution pricing proceeds)이 25억캐나다달러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 외에도 금리인상과 환차익 덕분에 정부의 이자수익과 외환수익이 증가해

기타수익이 37억캐나다달러 증가하였다. 반면 비금융부문의 이익 둔화로 법인세 수익이 115억캐나다달러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앞선 상승 요인이 감소분을 상쇄하며 총수익이 순증가를 보였다.

**그림 1** 2024회계연도 수익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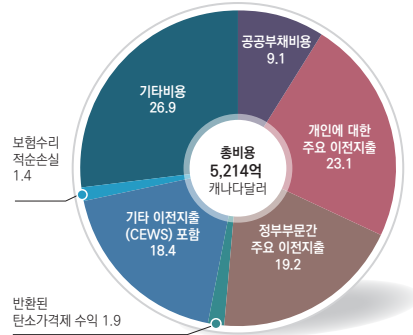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캐나다 재무부, *Public Accounts of Canada 2024, Volume I: Summary Repor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p. 14.

**그림 2** 2024회계연도 비용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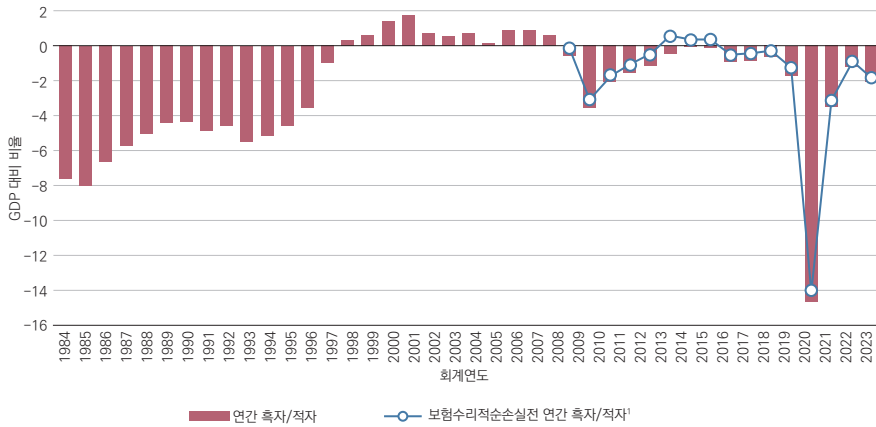


출처: 캐나다 재무부, *Public Accounts of Canada 2024, Volume I: Summary Repor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p. 18.

2024회계연도의 총비용은 전기 대비 383억캐나다달러(7.9%)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 복지 혜택 증가로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이 84억캐나다달러 증가했으며, 정부 부문간 주요 이전지출이 94억캐나다달러,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타비용(보험수리 적손손실 제외)이 104억캐나다달러, 평균 유효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공공부채비용(Public debt charges)이 123억캐나다달러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보험수리적손손실은 전기 대비 21억캐나다달러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기 보험수리 평가에서 할인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수리적이익의 상각이 주된 원인이다.

정부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2024회계연도의 연간 운영 적자(Annual operating deficit)는 619억캐나다달러이며, 보험수리적손실전 연간 운영 적자는 544억캐나다달러이다. 보험수리적손실전 연간 운영 적자는 공공부문연금 및 기타 직원·재향군인의 미래 복지 혜택에 대한 조정과 재측정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해당 회계기간 동안 정부의 계획된 운영 활동과 실제 실적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정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지닌다.

**그림 3 GDP 대비 연간 운영 흑자·적자(1984~2023년)**



주: 캐나다 정부는 2018년에 미적립 연금급여의 할일을 결정방법을 소급 적용하여 변경하였다. 그 변화를 반영하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정운영결과를 재작성하였다. 2009년 이전의 재작성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출처: 캐나다 재무부, *Public Accounts of Canada 2024*, Volume I: Summary Repor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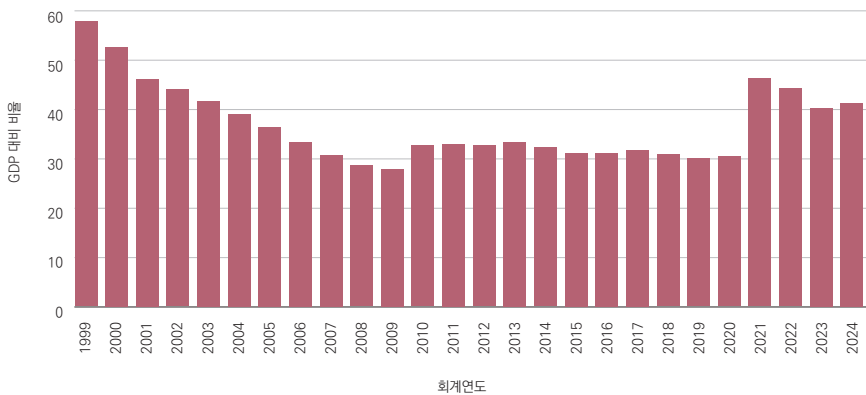
## 2) 자산 및 부채

2024년 3월 31일 현재 캐나다 정부의 총자산은 8,216억캐나다달러, 총부채는 2조 578억캐나다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3월 29일(금)의 환율(1CAD=994.83KRW)을 적용하면 총자산은 약 817조원, 총부채는 약 2,047조원이다.

2024회계연도의 총자산은 전기 대비 696억캐나다달러(9.3%)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자산 628억캐나다달러와 비금융자산 69억캐나다달러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금융자산의 증가는 주로 2024년 4월 1일 도래하는 대규모 채무 만기에 대비하여 현금 보유액을 확대한 결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이 261억캐나다달러 증가한 것과, 세수 증가 및 높은 법정이자율 등의 영향으로 미수세액이 221억캐나다달러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비금융자산의 증가는 재고자산이 재평가로 12억캐나다달러 감소하였으나, 건설중인자산이 72억캐나다달러, 선급비용 및 기타항목이 8억캐나다달러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2024회계연도의 총부채는 전기 대비 1,327억캐나다달러(6.9%) 증가하였다. 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은 이자부채무(Interest-bearing debt) 중 만기미도래채무가 1,118억캐나다달러 늘어난 데 있다. 만기미도래채무는 고정금리 시장성 국채, 물가 연동국채, 단기국채, 외화표시부채, 금융리스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채무 등으로 구성되며, 2024년 3월 31일 현재 총 이자부채무의 78.9%를 차지한다. 이러한 만기미도래 채무의 증가는 정부가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차입 규모를 늘린 결과이다.

**그림 4** GDP 대비 누적적자(1999~2024년)



출처: 캐나다 재무부, *Public Accounts of Canada 2024*, Volume I: Summary Repor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p. 23.

누적적자(순자산)는 총부채와 총자산의 차이를 나타내며, 누적 운영적자와 누적 재측정손익으로 구성된다. 2024회계연도 누적적자는 1조 2,362억캐나다달러로 전기 대비 631억캐나다달러 증가하였다. 이는 운영적자가 619억캐나다달러, 순재측정 손실이 13억캐나다달러 증가한 결과이다. 2024년 3월 31일 현재 GDP 대비 누적 적자 비율은 42.1%이며, 정부는 중기적으로 GDP 대비 누적적자 비율을 줄이는 것을 재정관리 목표로 삼고 있다.



## 다. 현금흐름

캐나다는 결산개요 중 현금흐름표 부분에서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유형자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ash used by capital investment activities)과 금융자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ash used by investing activities)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또한 운영활동 현금흐름과 두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합산한 '재무활동 전 현금유출액(Total cash used before financing activities)'을 별도의 핵심 지표로 제시하여 해당 연도에 정부가 차입 등 재무활동으로 조달해야 할 실질 현금 규모를 한눈에 보여준다.

2024회계연도 '재무활동 전 현금유출액'은 709억캐나다달러로, 전기 대비 168억 캐나다달러 증가하였다. 이는 캐나다 원주민 아동·가족 복지 서비스(First Nations Child and Family Services) 관련 최종 합의금 233억캐나다달러 지급에 따른 운영활동 순현금유출 확대, 유형자산 투자활동 순현금유출 26억캐나다달러 증가, CEBA<sup>5)</sup> 대여금 회수에 따라 금융자산 투자활동 순현금유출이 84억캐나다달러 감소한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현금수요를 충당하고 추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 등 재무활동으로 970억캐나다달러를 조달하였으며, 그 결과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전기 대비 260억캐나다달러 증가하였다.

**그림 5** 현금흐름표 요약

(in millions of dollars)

	2024	2023 Restated <sup>1</sup>
Cash used by operating activities .....	(46,950)	(24,353)
Cash used by capital investment activities .....	(13,498)	(10,865)
Cash used by investing activities.....	(10,478)	(18,940)
Total cash used before financing activities.....	(70,926)	(54,158)
Cash provided by financing activities .....	96,979	2,342
Net (decrease) increase in cash and cash equivalents.....	26,053	(51,816)
Cash and cash equivalents at beginning of year.....	49,006	100,822
Cash and cash equivalents at end of year .....	75,059	49,006

<sup>1</sup> Certain comparative figures have been restated. Details can be found in Note 2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Canada in Section 2 of this volume.

출처: 캐나다 재무부, *Public Accounts of Canada 2024*, Volume I: Summary Repor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p. 40.

5) CEBA(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무이자 및 부분 탕감 조건으로 제공하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다.

## 04 『2024 IPSASB 정례회의 안건 분석』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국가회계 재무 정보의 대외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회계기준과 국가회계예규의 품질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서 국제 표준의 위상을 가진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이하 'IPSAS')의 최신 제·개정 이슈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의 정례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였다. 또한 IPSASB 정례회의의 안건의 내용과 분석 결과를 모아 『2017~2019 IPSASB 정례회의의 안건 분석』과 『2022~2023 IPSASB 정례회의의 안건 분석』을 발간한 바 있다.

『2024 IPSASB 정례회의의 안건 분석』은 2024년도 IPSASB 정례회의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이슈 접근 방법과 제·개정 근거를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지난 2024년에 센터에서 참석한 IPSASB 분기별 정례회의의 출장보고서와 안건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IPSASB와 IPSAS의 소개'는 IPSASB의 목표와 역할, IPSAS의 제·개정 과정, 국가회계기준과 IPSAS의 관계를 간략히 보여준다. 제2부 '2024 IPSASB 안건분석 보고서 모음(프로젝트별)'은 IPSASB 정례회의의 안건의 내용, 분석 결과 및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으며, 이용자가 IPSASB에서 논의 중인 회계 이슈를 식별하고 찾아보기 용이하도록 IPSASB의 5개 제·개정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내용을 편집하였다.

본 책자는 2025년 6월 배포되었으며, 해당 파일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kipf.re.kr/gafsc/Publication/publication\\_OtherData/kiPublish/CC/Center/list.do](https://www.kipf.re.kr/gafsc/Publication/publication_OtherData/kiPublish/CC/Center/list.do))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표 1** IPSASB 안건분석보고서(프로젝트별)

IPSASB 프로젝트	2024				합계
	Q1	Q2	Q3	Q4	
① 재무제표 표시	√	√	√	√	4
② 리스	√	√			2
③ 지속가능성	√	√		√	3
④ 천연자원	√	√	√	√	4
⑤ 중요성 판단 기준				√	1

주: IPSASB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전체 개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가회계  
재지통계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 2025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7~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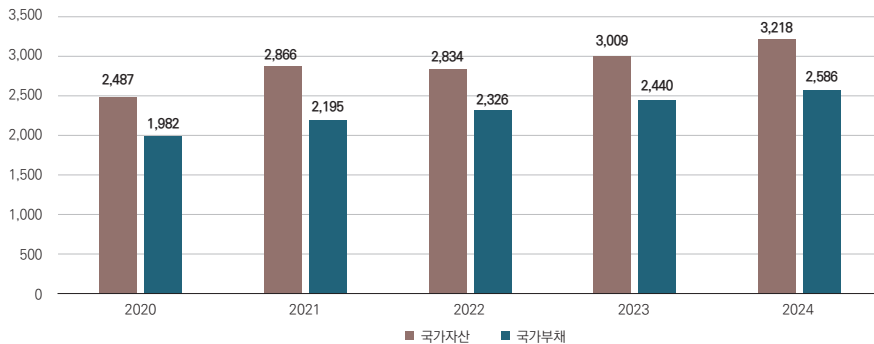
## 01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를 수정 반영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감사원은 결산검사 수행결과를 5월 20일 기재부에 송부하였다.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국가 자산은 2.8조원 감소하였고, 부채도 0.1조원 감소하였다.

2024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3,218.4조원, 부채는 2,585.7조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32.7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자산은 전년 대비 209.0조원(6.9%)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와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146.2조원(6.0%) 증가하였다.

그림 1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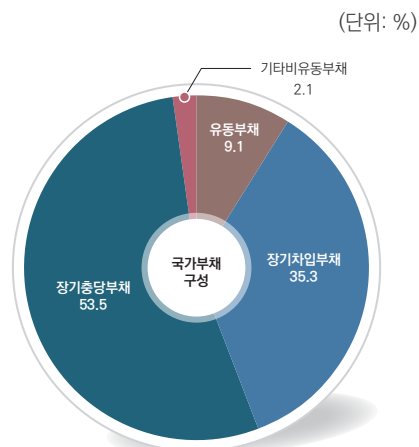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020~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21~2025,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24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3,218.4조원으로, 전년 대비 209.0조원 증가하였다. 주된 요인은 투자자산 171.8조원, 유동자산 25.0조원, 일반유형자산 11.3조원 증가이다. 2024년 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45.0%와 22.7%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유동자산 17.9% 순이다.

**그림 2** 국가자산의 구성



**그림 3** 국가부채의 구성



출처: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

2024년 말 현재 자산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397.5조원, 미수채권 41.4조원, 단기대여금 41.2조원 등 총 576.3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1,020.2조원, 기타투자자산 221.5조원 등 총 1,448.1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464.6조원, 전비품 124.2조원 등 총 732.2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257.7조원, 하천 72.9조원 등 총 424.0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2.5조원 등 총 2.8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22.5조원, 장기미수채권 12.7조원 등 총 35.1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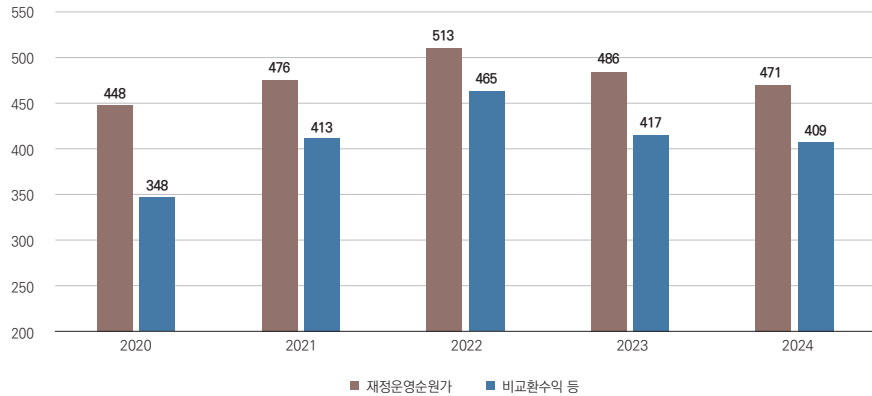
2024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2,585.7조원으로, 전년 대비 146.2조원 증가하였다. 주요 요인은 장기총당부채 90.1조원, 장기차입부채 39.6조원 증가이다. 2024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총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3.5%를, 장기차입부채가 35.3%를, 유동부채가 9.1%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03.4조원, 단기차입금 97.5조원 등 총 234.7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892.3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8.4조원 등 총 913.8조원이다. 장기총당부채 1,383.5조원은 연금총당부채 1,312.9조원, 퇴직수당총당부채 58.9조원, 기타 11.6조원(보증총당부채 6.4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유동부채 53.7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9.1조원, 장기미지급금 14.6조원이다.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는 470.6조원이며, 비교환수익 등 409.2조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61.4조원이다. 이는 재정운영에 따른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였음을 나타낸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15.2조원이 감소하였고, 비교환수익 등은 국세수익의 감소 등으로 8.0조원이 감소하여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도 68.6조원에서 61.4조원으로, 전년 대비 7.2조원 감소하였다.

**그림 4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20~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21~2025,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번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02 2025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 (7~9월)

‘2025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이 6월 18일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교육은 서울(4회),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세종 등 전국 6개 주요 도시에서 총 9회차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은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4회)도 함께 운영하여 보다 많은 교육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교육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국가회계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관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본 교육을 주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자는 본인의 업무와 수준에 맞는 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 제1차 국가회계이론 과정(2025. 6. 18.(수) 위드스페이스 P통합홀)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등의 과목을 통해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게 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다. 그리고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회계 업무 유형별 dBrain 오류 사례와 해결 방법을 다루며, 실무 공무원이 현장에서 오류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재무결산실무’ 과정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준비하는 담당자들을 위한 과정으로, 재무결산 담당자가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결산업무 진행 순서대로 세부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급 과정으로, ‘국가회계이론’을 사전에 수강하고 해당 교육 과정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표 1** 교육 개요

교육 기간	• 2025년 6~10월(총 13회차)
교육 지역 및 방식	• 전국 6개 주요 도시에서 집합교육(9회차)으로 진행 • 각 과정당 1개 차수(4회차)는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병행 실시
대상자	• 국가회계 관련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인원	• 각 회차당 약 80~120명
교육 과정	• 국가회계이론 과정(2일간, 10회) • 국가회계실무 과정(1일간, 10회) • 재무결산실무 과정(2일간, 2회) •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1일간, 1회)
수강 신청	• 국가회계교육 포털( <a href="https://www.kipf.re.kr/edu/">https://www.kipf.re.kr/edu/</a> )에서 신청

**표 2** 교육 과정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국가 회계 이론	1일차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5.0	1. 회계원리의 이해 2. 재무제표의 이해 3.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이해 4. 회계순환과정의 이해
		[온라인 교육] 회계순환과정 실습	-	1. 회계거래의 식별부터 계정의 마감까지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2.0	1. 국가재정체계 2. 국가회계의 의의와 구분 3. 국가회계법령의 개요 4. 국가회계기준의 체계와 주요내용 5.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2일차	[실습] 국가재무정보 기초사례 연습	1.0	1. 국가재무정보 이해를 위한 기초사례 2. 사례를 기초로 한 국가의 예산, 추경, 재정, 프로그램, 회계와의 관계

표 2 의 계속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국가 회계 이론	2일차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1.5	1. 세입세출거래의 복식부기 변환 2. 발생원인에 따른 세입세출거래의 세 가지 유형 3. 세입세출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 4. 수익·원가·자산·부채와 국가회계의 특성
		결산조정과 발생주의	1.5	1. 결산조정: 발생주의 재무정보로의 전환 2. 자산·부채 평가 3. 기간손익 조정 4. 비현금거래와 원가의 재분류
		[실습] 종합사례 연습	3.0	1. 종합사례의 기본 가정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현금흐름과 회계기록 3. 현금주의에 따른 복식부기 기록방식 및 회계처리 4. (현금주의) 수정전자산표 5. 발생주의 항목의 이해 및 회계처리 6. (발생주의) 수정후자산표와 재무제표
국가 회계 실무	1일차	업무유형별 dBrain 오류사례 및 해결방안	4.0	1. 유형별 dBrain 업무 처리 유의사항 - 수입·지출 관련 유의사항(1, 2, 5, 6, 9차 교육) - 국유재산, 물품 관련 유의사항(3, 4, 7, 8, 10차 교육)
		재무제표를 통해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2.0	1.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하는 이유 2. 재정운영표 살펴보기 3. 재정상태표 살펴보기 4. 주식 등 기타 정보 살펴보기
재무 결산 실무	1일차	재무결산의 이해	1.5	1.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의의와 도입 과정 2.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3. 국가재무제표의 이해 4.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0	1.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3. 재무장부 조회 및 점검 방법 4. 수정전자산표 마감 전 유의사항 및 마감
	감사원 지적사례	2.5	1.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2. 주요 감사원 지적사례	
	2일차	내부거래실무	1.5	1. 내부거래의 의의 2. 내부거래 제거방식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결산조정분개	2.0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2. 결산조정분개 오류사례
		결산보고서 작성	2.5	1. 결산작성지침 개요 2. 결산보고서 생성 3. 결산보고서 발행

표 2 의 계속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국가 회계의 활용	1일차	국가회계정보와 결산보고서	1.0	1.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2. 정보로서의 국가결산보고서의 이해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 그리고 재정운영표의 해석	3.0	1. 국가회계에서의 원가계산의 의미 2. 프로그램세출 정보 3.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의 관계 4.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특성 및 활용방안 5. 재정운영표의 이해 6. 종합사례
		자산, 부채, 그리고 재정상태표의 해석	2.0	1. 재정상태표 개념 및 의의 2. 자산구성: 금융자산과 서비스자산 3. 부채구성: 금융부채와 총당부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재정통계 동향



- 2024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 『2023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 01 2024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1년 재정통계 개편 이후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GFS)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를 매년 작성해 오고 있다.

### 가. 포괄범위 지정

매년 신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장성 테스트(원가보상률 및 정부판매비율)를 수행하여 비영리공공기관과 공기업(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으로 구분한다. 2025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4개이며, 모두 일반정부로 분류되었다.

### 나. 재정통계 통합 및 결과 송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등의 재정통계를 확정하면, 부문별로 재정통계를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고려하여 일반정부 재정통계(GFS)와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를 산출한 후 연말에 관련 재정통계를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 |   |              |   |
|---|--------------|---|
| ① | 포괄범위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매년 1월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신규 공공기관</li> <li>• (검토) 원가 보상률, 정부판매비율 등을 검토해서 기관 분류</li> </ul>          |
| ② | 작성지침 등 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FS 및 PSDS 작성지침과 템플릿 마련 및 배포</li> <li>• 템플릿 작성방법 관련 질의 및 응답</li> </ul>                           |
| ③ | 재정통계 작성 및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회계·기금재정통계 작성 및 공공기관 작성 내역 검토</li> <li>• (지방정부) 지자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재정통계 검토</li> </ul>          |
| ④ | 재정통계 합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거래 취합) 부문별로 내부에서 발생한 거래를 취합</li> <li>• (부문별 통합)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정부, 공공부문</li> </ul>             |
| ⑤ | 결과 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SDS) D1(국가채무), D2(일반정부), D3(공공부문) 발표 및 OECD 제출</li> <li>• ('01GFS) 일반정부 재정통계 IMF 제출</li> </ul> |

## 02 『2023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기획재정부는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발간하고 있다.

『2023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통해 GFSM 1986 기준에 따른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와 GFSM 2001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결산 재정수지를 발표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월별·연도별 재정통계와 추이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GFSM 1986 기준에 따른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통합재정수지

2023회계연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는 36.8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1.5\%$ )로, 통합재정수입은 543.6조원(GDP 대비 22.6%), 통합재정지출은 580.4조원(GDP 대비 24.2%)을 기록하였다.

부문별 수지는 일반회계 3.2조원, 기타특별회계  $\Delta 42.8$ 조원, 기업특별회계  $\Delta 1.0$ 조원, 기금 4.6조원, 세입세출외  $\Delta 0.8$ 조원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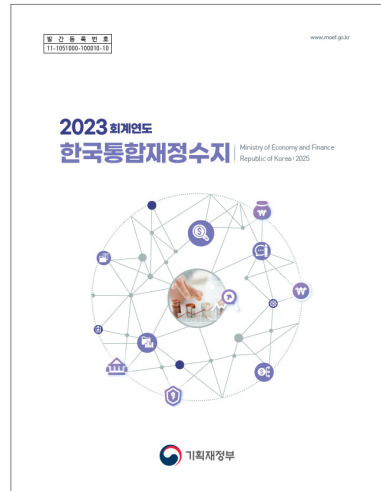


표 1 2023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총괄

(단위: 십억원, %)

구분	수입(A)	지출(B)	통합재정수지(A-B)
<b>합계</b> (GDP 대비, %)	543,586 (22.6)	580,354 (24.2)	△36,768 (△1.5)
일반회계	346,693	343,497	3,196
기타특별회계	16,772	59,552	△42,780
기업특별회계	4,077	5,080	△1,003
기금	175,767	171,198	4,570
세입세출 외	276	1,027	△751

출처: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25. 5. 21., p. 45.

## 나.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수입은 전년(588.3조원) 대비 7.6% 감소한 543.6조원을 기록하였다. 국세수입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51.9조원 감소하였고,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5.5조원 증가, 세외수입은 1.0조원 증가하였다.

표 2 전년 대비 수입원별 수입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국세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세외수입	자본수입	계
<b>2022년(A)</b>	395,939	83,444	105,941	3,007	588,332
<b>2023년(B)</b>	344,071	88,918	106,898	3,700	543,586
<b>증감(B-A)</b>	△51,868	5,473	957	693	△44,745
<b>(증감률)</b>	(△13.1)	(6.6)	(0.9)	(23.0)	(△7.6)

출처: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25. 5. 21., p. 47.

## 다. 통합재정지출

통합재정지출은 전년(652.9조원) 대비 11.1% 감소한 580.4조원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는 경상지출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6.4조원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9.0조원 증가하였다.

기금은 경상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35.6조원 감소하였고, 기업특별회계는 1.0조원 증가하였다.

**표 3** 전년 대비 회계·기금별 지출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기금	기업 특별회계	계
2022년(A)	379,872	50,564	11,605	206,816	4,045	652,902
2023년(B)	343,497	59,552	1,027	171,198	5,080	580,354
증감(B-A)	△36,376	8,988	△10,577	△35,618	1,036	△72,548
(증감률)	(△9.6)	(17.8)	(△91.1)	(△17.2)	(25.6)	(△11.1)

출처: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25. 5. 21., p. 47.



## 03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발생주의 통계작성 기준인 「재정통계편람 2001(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1: 이하 GFSM 2001)」에 따라 재정통계를 산출하여 IMF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다양한 재정지표 산출이 가능해졌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5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내용을 기반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분석하였다.

GFS의 작성대상인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가 지배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다. 2023회계연도 기준 일반정부의 재정수지는 29.3조원(GDP 대비 1.2%)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총자산과 부채는 각각 4,809.5조원(GDP 대비 200.3%)과 1,219.2조원(GDP 대비 50.8%)이다.

### 가. GFS 재정지표

GFS는 기초 저량에 기증 유량을 반영하여 기말 저량을 도출하는 체계이므로, 모든 경제적 거래가 재정통계에 반영되어 재정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GFS를 통해 산출되는 대표적 재정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GFSM 주요 재정지표

유형	2023년 규모 (GDP 대비)	산출식	의미	비고
순운영수지 (Net operating balance)	23.7조 (1.0%)	총수익-총비용	정부운영의 지속가능성	정부운영표
재정수지 (Net lending· Net borrowing)	△29.3조 (△1.2%)	총수익-총지출	정부활동이 경제의 기타부문 등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정부운영표
순자산 (Net worth)	3,590.3조 (149.5%)	자산-부채	재정활동의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순금융자산 (Net financial asset)	933.7조 (38.9%)	총금융자산 -부채	유동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총채무 (Gross debt)	1,219.3조 (50.7%)	총부채- 주식 및 기타지분과 파생상품부채	부채의 건전성 (PSDS 기준)	재정상태표

## 나.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

일반정부의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를 산출하는 정부운영표 주요 계정의 최근 5개 연도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2** 정부운영표 주요 계정(2019~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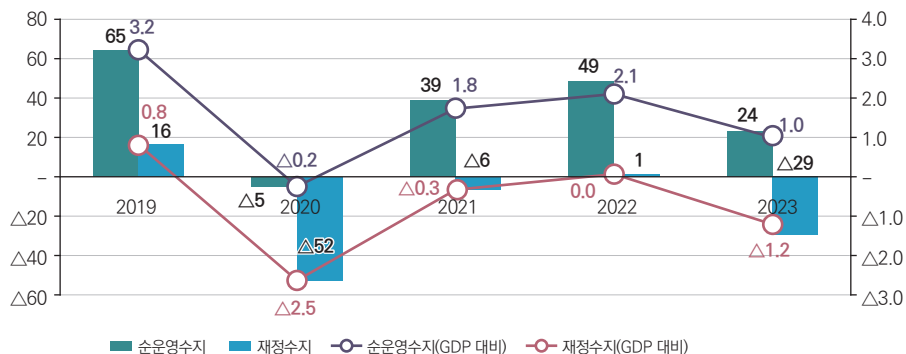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익(A)	655	3.4	666	1.6	765	15.0	842	10.0	817	△3.0
총지출(B=C+D)	639	11.2	718	12.4	772	7.5	841	9.0	846	0.6
총비용(C)	591	9.8	670	13.5	726	8.3	794	9.3	793	△0.1
비금융자산의 순취득(D)	49	30.7	48	△1.7	46	△3.9	48	3.9	53	11.0
<b>순운영수지(A-C)</b>	<b>65</b>	<b>△32.4</b>	<b>△5</b>	<b>△107.1</b>	<b>39</b>	<b>950.4</b>	<b>49</b>	<b>23.8</b>	<b>24</b>	<b>△51.5</b>
<b>재정수지(A-B)</b>	<b>16</b>	<b>△72.2</b>	<b>△52</b>	<b>△420.7</b>	<b>△6</b>	<b>87.7</b>	<b>1</b>	<b>117.6</b>	<b>△29</b>	<b>△2,684.8</b>

재정수지의 최근 5개연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흑자였으나 2020년에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2021년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2023년(△29.3조원, GDP 대비 △1.2%)에 다시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총수익 감소(조세 등 전기 대비 25.6조원 감소)와 총지출 증가(총비용은 전기 대비 0.5조원 감소한 반면, 비금융자산순취득은 전기 대비 5.3조원 증가)에 기인한다.

**그림 1** 재정수지 추이(2019~2023년)

(단위: 조원, GDP 대비 %)



## 다. 자산과 부채의 추세

일반정부의 재정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금액의 5개년도 추세는 다음과 같다.

**표 3** 재정상태표 주요 계정(2019~2023년)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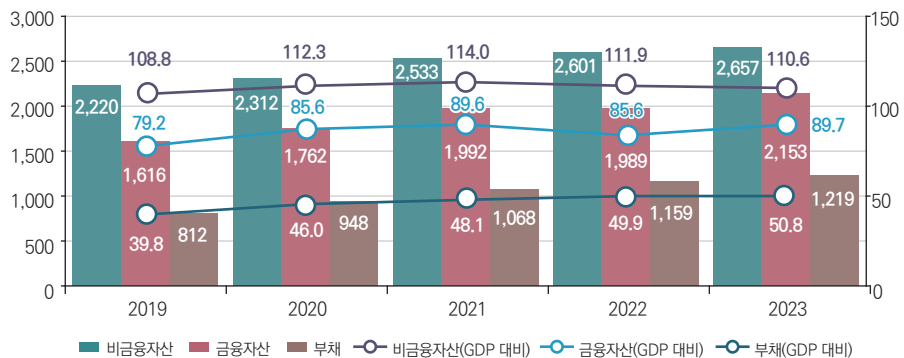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순자산	3,024	6.4	3,126	3.4	3,457	10.6	3,430	△0.8	3,590	4.7
자산	3,836	6.5	4,074	6.2	4,525	11.1	4,589	1.4	4,809	4.8
비금융자산	2,220	3.3	2,312	4.1	2,533	9.6	2,601	2.7	2,657	2.1
금융자산	1,616	11.1	1,762	9.0	1,992	13.0	1,989	△0.1	2,153	8.3
부채	812	6.7	948	16.7	1,068	12.7	1,159	8.5	1,219	5.2

2023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자산이 4.8% 증가하였고, 부채는 5.2% 증가하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재정상태표상 금융자산의 GDP 대비 비중은 2019년 79.2%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89.6%에 이른다. 이후 2022년에는 85.6%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89.7%로 다시 증가하였다. 비금융자산의 경우 2019년 GDP 대비 108.8% 수준에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14.0%에 이르렀으나, 2022년 111.9%, 2023년 110.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부채는 2019년에는 GDP 대비 39.8% 수준이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3년에는 50.8%로 상승하였다.

**그림 1**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및 부채 추세(2019~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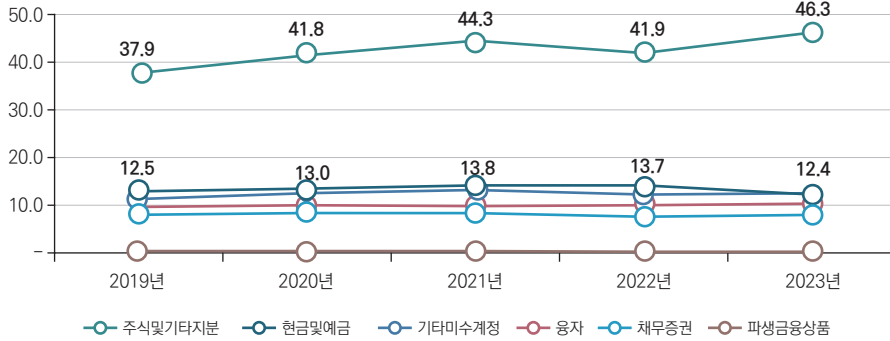
(단위: 조원, GDP 대비 %)



금융자산의 GDP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4.1%p 증가하였는데, 이를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주식및기타지분이 4.4%p, 기타미수계정이 0.6%p, 채무증권이 0.2%p, 용자가 0.1%p 증가한 반면, 현금및예금이 1.2%p, 파생금융상품이 0.03%p 감소하였다.

**그림 2** 금융자산 항목별 추세(2019~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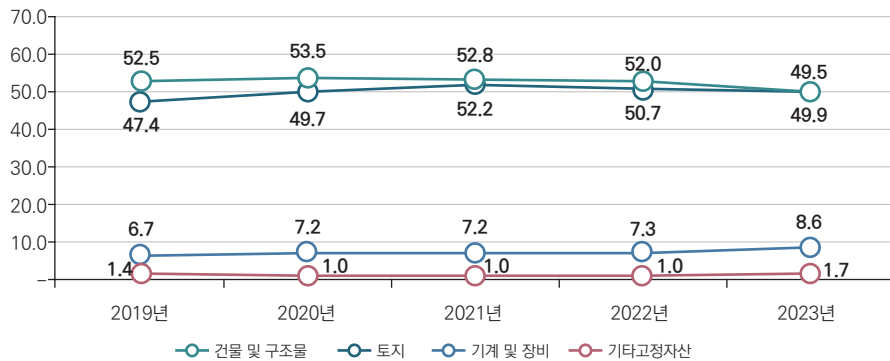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비금융자산의 GDP 대비 비중은 2023년에 전기 대비 1.3%p 감소하였다. 비금융자산의 구성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 및 구조물(비금융자산 중 44.8%)의 GDP 대비 비중은 전기 대비 2.5%p 감소하였고, 토지(비금융자산 중 45.1%)의 경우 GDP 대비 비중이 0.8%p 감소하였다.

**그림 3** 비금융자산 항목별 추세(2019~2023년)

(단위: GDP 대비 %)



## 라. 자산과 부채의 변동원인

GFS 체계를 따르면 정부 정책으로 인한 모든 경제적 거래가 재정통계 보고서에 집계되므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2023년 자산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산 중 비금융자산은 거래(취득-처분-고정자본소비)가 52.9조원 증가하고, 토지 평가 등으로 인한 보유손익이 0.6조원 증가하였으며, 기타내용변화가 2.4조원 증가하여 총 55.9조원이 증가하였다.

금융자산은 주로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주식및기타지분 취득 등의 거래로 29.8조원이 증가하고, 주식및기타지분 및 기타미수계정 등의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 137.0조원<sup>6)</sup>이 증가하여 총 164.1조원이 증가하였다.

2023년 부채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부채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채발행 등의 거래로 59.1조원, 기타변화로 0.7조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59.9조원이 증가하였다.

**표 4** 자산과 부채의 통합변동 명세

(단위: 조원)

	2023년 기초	변동 내역(flow)			2023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내용변화	
<b>자산</b>	4,589	83	138	△0	4,809
<b>비금융자산</b>	2,601	53	1	2	2,657
<b>금융자산</b>	1,989	30	137	△3	2,153
<b>부채</b>	1,159	59	0	1	1,219

6) 미국 은행권 위기와 중등 지정학적 위험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부각됐으나, 개별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국내의 주가가 상승하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지분증권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보유이익이 발생함

표 4 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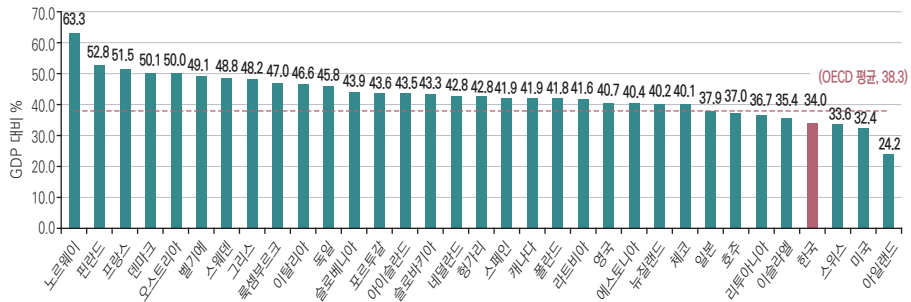
(단위: 조원)

	2022년 기초	변동 내역(flow)			2022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내용변화	
자산	4,525	138	△111	37	4,589
비금융자산	2,533	48	△18	37	2,601
금융자산	1,992	90	△93	0	1,989
부채	1,068	89	2	△0	1,159

## 마. 국제 비교

일반정부의 총수익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23년 우리나라 총수익은 GDP 대비 34.0%로, OECD 평균인 38.3%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림 4 2023년 일반정부 총수익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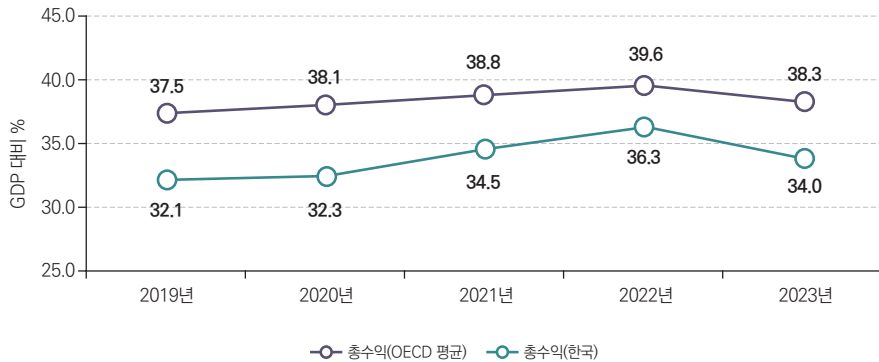


주: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수익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 116, 2024. 12.

우리나라 GDP 대비 총수익은 2019년 32.1%에서 2023년 34.0%로 1.9%p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2019년 37.5%에서 2023년 38.3%로 0.8%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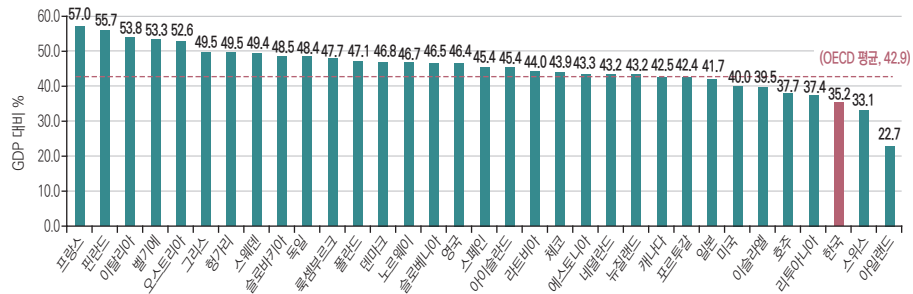
**그림 5** 2023년 일반정부 총수익의 추이(2019~2023년)



주: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수익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 116, 2024. 12.

2023년 일반정부의 총지출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총지출은 GDP 대비 35.2%로, OECD 평균인 42.9%에 비해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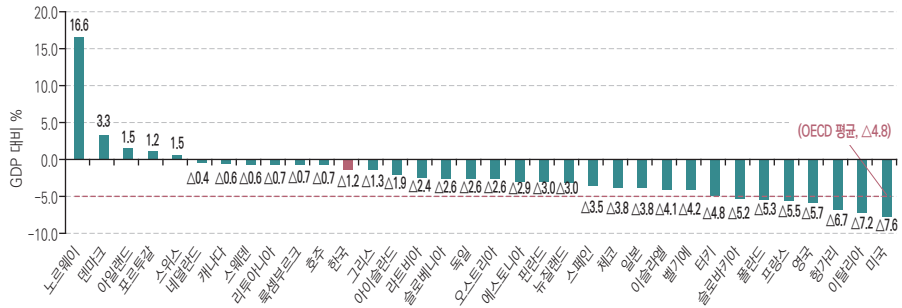
**그림 6** 2023년 일반정부 총지출의 국제비교



주: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지출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 116, 2024. 12.

2023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1.2\%$  적자로, OECD 재정수지 평균인  $\Delta 4.8\%$  대비 양호한 편이다.

**그림 7** 2023년 일반정부 재정수지의 국제비교



주: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재정수지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 116, 2024. 12.



국가회계  
재정토계



#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 동향



- 2024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분석
-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안내(9~11월)
- 2023년 공익법인 재무 현황

## 01 2024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분석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4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의거하여 회계처리 및 결산을 수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제12조에 따라 최근 5년간의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sup>7)</sup>에 관련 자료가 공시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알리오<sup>8)</sup>에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전력을 포함한 32개 공기업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이다.

7) 알리오, [www.alio.go.kr](http://www.alio.go.kr)

8) All Public Information In-One(ALIO):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구축한 시스템

## 가. 공기업 재무성과

2024회계연도 32개 전체 공기업의 매출액은 187조 3,7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818억원 증가하였다. 영업이익은 13조 1,608억원으로 전년 영업손실에서 17조 4,777억원 개선되었다. 당기순이익은 2조 8,104억원으로, 전년 당기순손실 대비 10조 8,041억원 개선되며 흑자 전환하였다. 기타포괄손익은 △1,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8억원 증가하였다.

최근 3년 동안 공기업<sup>9)</sup> 손익은 <표 1>과 같다.

**표 1** 2022~2024회계연도 공기업 손익

(단위: 억원)

유형	2022년 <sup>1)</sup>	2023년(a)	2024년(b)	증감(b-a)
영업수익(매출)	1,806,849	1,860,920	1,873,738	12,818
영업손익	△265,425	△43,168	131,608	174,777
당기순손익	△221,578	△79,937	28,104	108,041
총포괄손익	△179,716	△83,712	26,266	109,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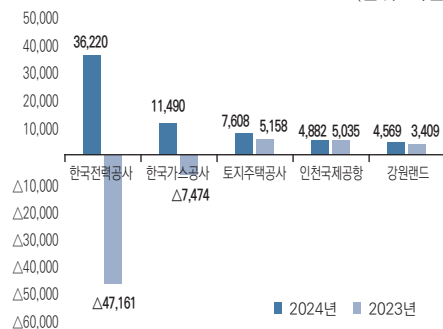
주: 1) 2022년 수치는 국회 제출(2023. 8.) 기준으로 작성됨

출처: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24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상위 및 하위 공기업은 [그림 1]~[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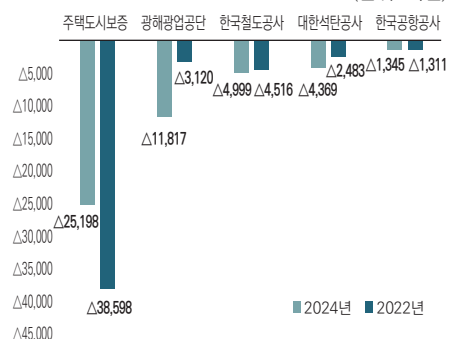
**그림 1** 당기순이익 상위 공기업

(단위: 억원)



**그림 2** 당기순이익 하위 공기업

(단위: 억원)



출처: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바탕으로 저자 작성

9) 2024년도 32개 공기업 중 자회사에 해당하는 10개 기관은 모회사가 연결하여 재무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합계에서 제외 ①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9개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②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1개 공기업(한국가스기술공사)

## 나. 재무성과의 주요 변동원인

2024회계연도 공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조 2,818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량 증가 및 판매단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5조 1,794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분양 매출 증가 및 공공주택용지 등 토지 매출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1조 6,883억원), 한국가스공사의 LNG 판매단가 하락으로 인한 가스판매 수입 감소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6조 1,673억원) 등의 영향이다.

2024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조 4,777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매출액 증가 및 연료비 단가 및 구입전력비 단가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12조 9,064억원)한 영향이 크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채권 회수 실적 개선에 따라 영업비용이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증가(1조 8,038억원)하였고, 한국가스공사 역시 LNG 도입단가 하락 및 기타경비의 감소로 영업비용이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1조 4,499억원 증가하였다.

**표 2** 주요 공기업 당기순이익 변동원인

(단위: 억원)

구분	기관	당기순이익			내역
		2023년	2024년	증감	
증 가	한국전력 공사	△47,161	36,220	83,381	판매단가 인상으로 매출액 증가(5.2조원), 발전량 및 연료비 하락으로 매출원가 감소(△7.7조원), 설비 증가에 따른 상각비·수선비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은 12.9조원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으로 전환
	한국가스 공사	△7,474	11,490	18,964	LNG 판매단가 하락으로 인해 매출액 감소(△6.2조원)하였으나, LNG 도입단가 하락 등으로 영업비용이 감소(7.6조원)하여 영업이익은 증가(1.5조원)하였고, 해외사업 유형자산 손상처분 감소 등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전환
	한국토지 주택공사	5,158	7,608	2,450	임대주택 분양전환 물량 및 공공주택용지 등 토지 매출 증가 등으로 매출액 증가(1.7조원), 영업이익은 0.3조원 증가하여 당기순이익 증가
감 소	주택도시 보증공사	△38,598	△25,198	13,400	회수실적 개선에 따라 보증비용 감소로 영업손실 감소(△4.0조원 → △2.2조원, 1.8조원) 및 당기순손실 감소

표 2 의 계속

구분	기관	당기순이익			내역
		2023년	2024년	증감	
감소	한국광해광업공단	△3,120	△11,817	△8,697	관계기업및공동기업관련손익(△0.7조원) 및 유형자산 손상차손 발생 등으로 당기순손실 증가
	한국철도공사	△4,516	△4,999	△484	다원사업수익 및 2023년 수탁매출채권 제거 기저효과에 따른 수탁사업수익 증가로 매출액 증가(0.5조원), 자산처분이익 감소 및 2023년 SR 연결해제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한 관계기업 손익 감소 등으로 당기순손실 증가

출처: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기관 제출 결산보고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공기업 재무상태

2024회계연도 공기업 자산은 752조 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 7,310억원 증가(4.0%)하였으며, 총부채는 540조 1,2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 3,131억원 증가(3.1%)하였다. 공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주로 에너지·운송 부문의 시설 투자 확대와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 추진에 따라 크게 변동하였다. 자산은 주로 전력, 도로 등 에너지·운송 부문 투자와 임대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의 임대·재고자산 증가, 에너지 부문의 전력설비 확충, 교통·수송 부문의 유료도로관리권 증가 등으로 확대되었다. 부채는 고속도로 건설비 투자재원 마련, 원전 해체 복구를 위한 충당부채 증가, 임대주택 건설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 및 사채 발행 확대 등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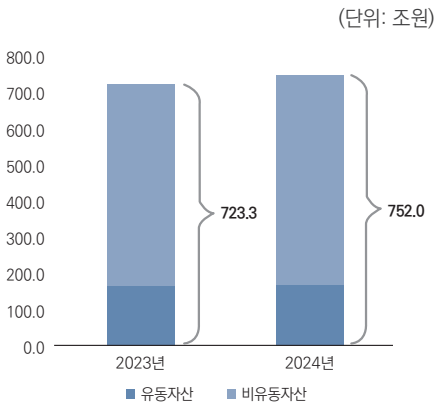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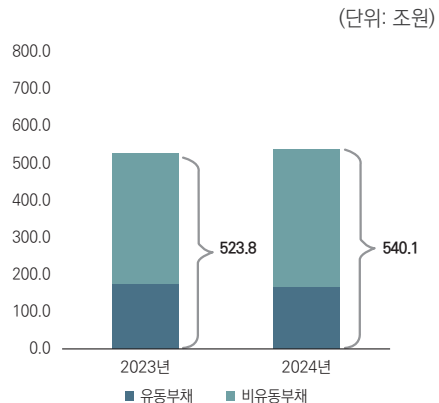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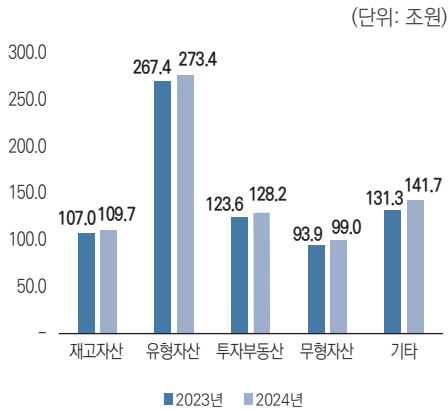
그림 4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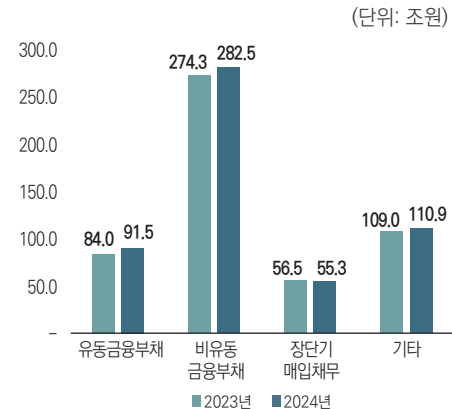
출처: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바탕으로 저자 작성

공기업 자산 구성은 발전 설비 등 유형자산(36.4%)과 임대주택 등 투자부동산(17.1%), 분양토지 등 재고자산(14.6%) 등이며, 부채는 금융부채(69.2%)와 장·단기 매입채무(10.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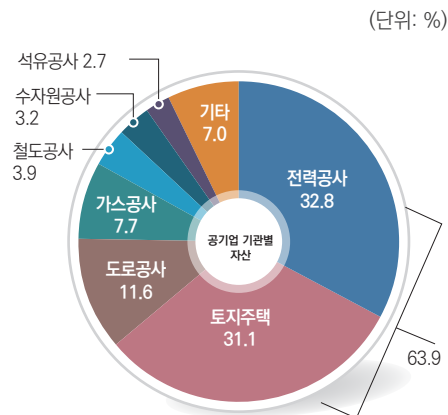
**그림 6** 부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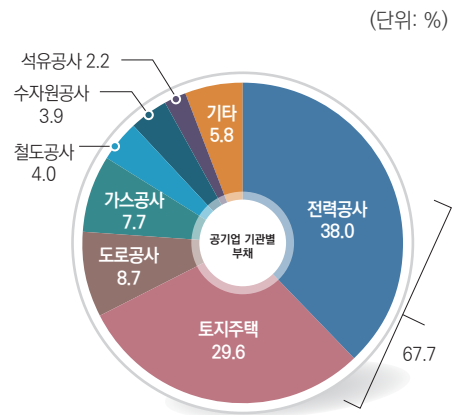
출처: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바탕으로 저자 작성

공기업의 전체 자산과 부채는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와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투자부동산 등은 전체 공기업 자산의 63.9%를 차지하며,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채는 전체 공기업 부채의 67.7%에 달한다.

**그림 7** 공기업 기관별 자산 구성



**그림 8** 공기업 기관별 부채 구성



출처: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라. 재무상태의 주요 변동원인

### 1. 자산·부채 주요 증감

2024회계연도 공기업의 자산은 전년 대비 28조 7,310억원 증가하였다. 한국전력 공사의 전력설비 건설 및 보강 등에 따른 유형자산 증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지분 증가, 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기 신도시 착공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동금융자산의 증가,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투입 등으로 임대자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4회계연도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16조 3,131억원 증가하였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채 발행 및 기금 용자 증가로 인해 7조 2,581억원의 부채가 늘어나, 전체 증가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건설 투자비 마련을 위한 사채 발행 및 차입 증가, 환율 변동에 따른 사채 평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채가 3조 1,634억원 증가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차입금을 일부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해체복구 등 충당부채 증가로 인해 총 2조 9,947억원의 부채가 늘었으며, 한국석유공사 역시 환율 상승에 따른 차입금 평가액 증가로 2조 2,350억원의 부채가 증가하였다.

**표 3** 주요 공기업 자산 변동원인

(단위: 조원)

구분	기관	자산			내역
		2023년	2024년	증감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	222.9	233.7	10.8	3기 신도시 착공 이후 공급 초기 단계로 재고자산(1조 7,458억원) 및 유동금융자산 증가(5조 42억원),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투입 등으로 임대자산 투자부동산 증가(4조 2,101억원)
	한국전력공사	239.7	246.8	7.1	전력설비 건설 및 보강 등으로 유형자산 증가(3조 1,072억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 증가(1조 6,235억원), 비유동금융자산 증가(1조 2,379억원)
	한국도로공사	82.2	87.1	4.9	고속도로 준공 및 개량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증가(2조 6,476억원) 및 건설 중 노선 증가에 따른 건설자산 증가(1조 8,787억원)
	한국석유공사	18.2	20.5	2.3	비축유 구매로 인한 비축유 증가(1조 2,479억원)와 석유 개발자산 등 유형자산 증가(9,517억원)

표 3 의 계속

구분	기관	자산			내역
		2023년	2024년	증감	
	한국광해 광업공단	5.5	4.8	△0.7	볼레오 손상차손(△1,098억원) 및 감가상각에 따른 감소로 유·무형자산 감소(△1,208억원), 지분법 평가 및 배당금 수령 등으로 투자주식 감소(△4,690억원)
감소	대한석탄 공사	0.9	0.4	△0.4	장성광업소 폐광(2024. 6.)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 및 갱도 시설 감가상각 등 영향으로 유형자산 감소(△3,448억원), 장성광업소 유형자산 대체 영향으로 투자부동산(유휴토지 등) 증가(237억원) 등
	한국공항 공사	5.0	4.8	△0.1	이연법인세자산 883억원 감액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190억원(2.4%) 감소

출처: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기관 제출 결산보고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차입금 및 사채

2024회계연도 공기업의 차입금 및 사채는 372조 9,3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 8,211억원 증가하였으며, 총부채의 69.0%를 차지한다. 공기업의 차입금의존도<sup>10)</sup>는 0.2%p 증가한 49.6%로, 민간(31.4%)<sup>11)</sup>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고 민간에 비해 자본조달이 용이한 공기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부문 공기업<sup>12)</sup>의 차입금 및 사채 규모는 203조 6,0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573억원 증가하였다. 환율 상승에 따른 차입금 평가액 증가로 한국석유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가 2조 96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0)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사채)/총자본

11)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2024. 12.

12) 에너지 및 부동산 분야별 공기업 차입금 및 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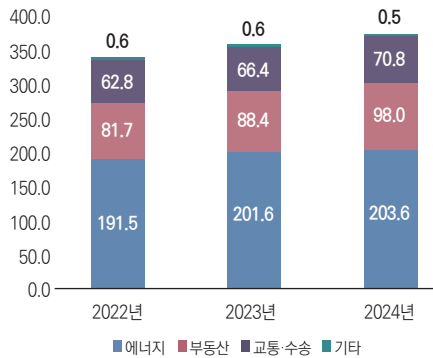
(단위: 조원)					
산업구분	기관명	2022년	2023년(A)	2024년(B)	증감(B-A)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42.9	38.9	39.1	0.3
	한국전력공사	120.6	133.6	132.5	△1.1
	대한석탄공사	2.3	2.4	2.4	△0.0
	한국석유공사	15.2	15.1	17.1	2.0
	한국지역난방공사	3.5	4.0	4.2	0.2
	한국광해광업공단	7.1	7.6	8.2	0.6
	<b>에너지 부문 합계</b>		191.5	201.6	203.6
부동산	주택도시보증공사	0.1	0.1	0.6	0.5
	한국토지주택공사	81.6	88.3	97.4	9.1
	<b>부동산 부문 합계</b>	81.7	88.4	98.0	9.6

부동산 부문 차입금 및 사채 규모는 97조 9,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5,904억원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채 발행 및 기금융자액 증가 등으로 차입금 및 사채가 9조 881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교통·수송부문의 차입금 및 사채는 70조 8,19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3,749억원 증가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사채 증가 등의 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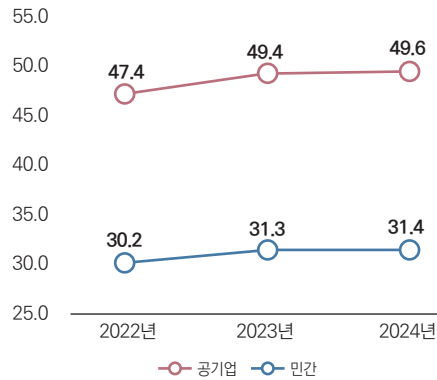
**그림 9** 공기업 차입금 및 사채 규모

(단위: 조원)



**그림 10** 차입금의존도 추이 민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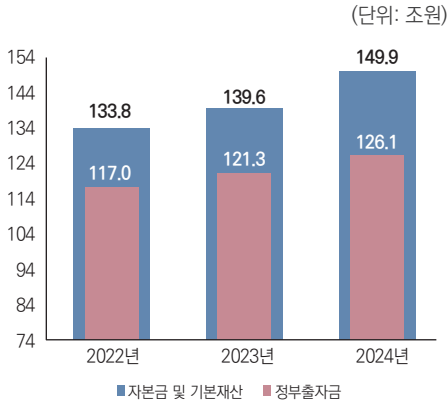


출처: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2024. 12.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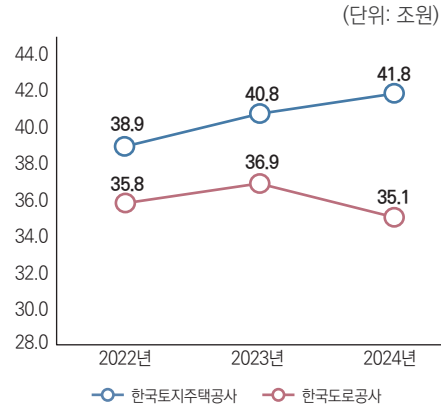
## 마. 정부출자금 및 배당금

2024회계연도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126조 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7,864억원 증가하여 전체 공기업의 자본금 및 기본재산의 84.1%를 구성하고 있다. 정부출자금의 61.0%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고속도로 사업 및 임대주택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자금은 전년 대비 1조 422억원 증가한 41조 8,256억원이며, 한국도로공사는 전년 대비 1조 8,298억원 감소한 35조 776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자금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자금은 전년 대비 4조 7,000억원 증가한 6조 9,621억원이다.

**그림 11** 공기업 자본금 및 정부출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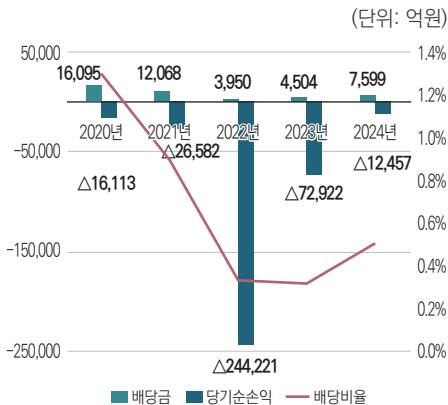
**그림 12** 정부출자금 주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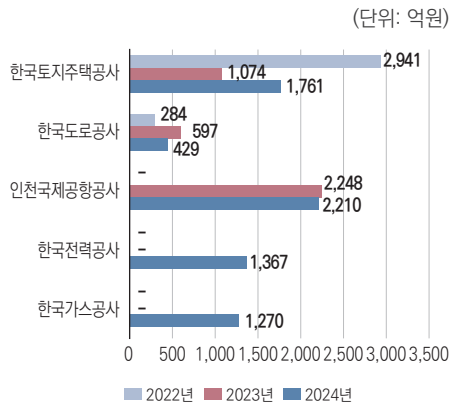
출처: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24회계연도 배당금은 전년 대비 68.7% 증가한 7,599억원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조폐공사 등 8개 기관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4년 만(2020년 최종 배당)에 1,367억원 규모의 배당을 재개하였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년 만(2021년 최종 배당)에 각각 1,270억원 및 449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배당금이 전년 대비 687억원 증가하고, 한국조폐공사도 6억원 증가하는 등 주요 기관의 배당 확대에 따라 배당총액은 전년 대비 3,096억원 증가하였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의 배당액이 전년 대비 각각 37억원, 168억원 감소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배당을 미실시하여 일부 감소(△479억원)하였다.

**그림 13** 공기업 배당금 추이



**그림 14** 주요 기관별 배당금 추이



출처: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바.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

전체 공기업의 2024회계연도 수익성·안정성·생산성 모두 전기 대비 개선되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0%로 전년 대비 9.3%p로 큰 폭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1.5%로 전년 대비 5.8%p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 개선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증가(8조 3,381억원)와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단가 하락에 따른 영업비용 개선 및 유형자산손상차손 감소에 따른 영업외이익의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1조 8,964억원)한 영향이 크다.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7.7%p 하락한 254.9%를 기록하였다. 이는 부채의 경우 전년 대비 16조 3,131억원(3.1%) 증가한 데 반해, 자기자본이 12조 4,180억원(6.2%)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액이 전년 대비 18.6조원 증가하였고 매출액 증가 폭(0.7%)보다 부가가치액 증가 폭(44.0%)이 높아 부가가치율 또한 전년 대비 9.7%p 증가한 32.4%를 기록하였다.

최근 3년 동안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는 <표 4>와 같다.

**표 4** 2022~2024회계연도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

(단위: %, %p)

	구분	2022년	2023년(a)	2024년(b)	증감(b-a)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14.7	△2.3	7.0	9.3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100)	△12.3	△4.3	1.5	5.8
안정성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251.0	262.7	254.9	△7.7
	이자보상비율 <sup>1)</sup> (영업이익/이자비용×100)	- <sup>1)</sup>	- <sup>1)</sup>	148.2	-
생산성	부가가치액 (법인세차감전순이익+금융비용+인건비 +임차료+조세공과+감가상각비)	16.9조원	42.2조원	60.7조원	18.6조원 <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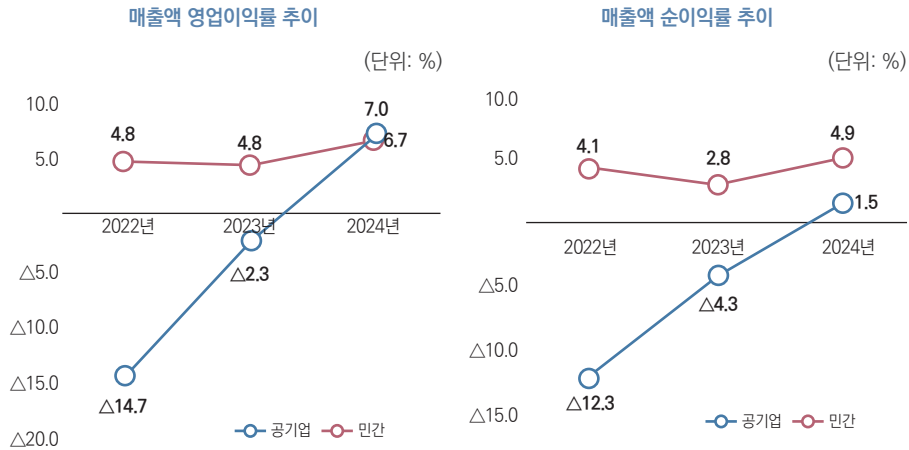
표 4 의 계속

구분	2022년	2023년(a)	2024년(b)	증감(b-a)
생산성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액/매출액×100)	9.3	22.7	32.4	9.7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평균)×100)	26.0	25.9	25.4	△0.5

주: 1) 이자보상비율이 부(-)의 값으로 표시하지 않음  
 2) 원단위 계산에 따른 단수차이 조정하지 않음

공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을 민간기업과 비교한 결과, 공기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민간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에너지, 부동산, 교통·수송 부문 전부분에 걸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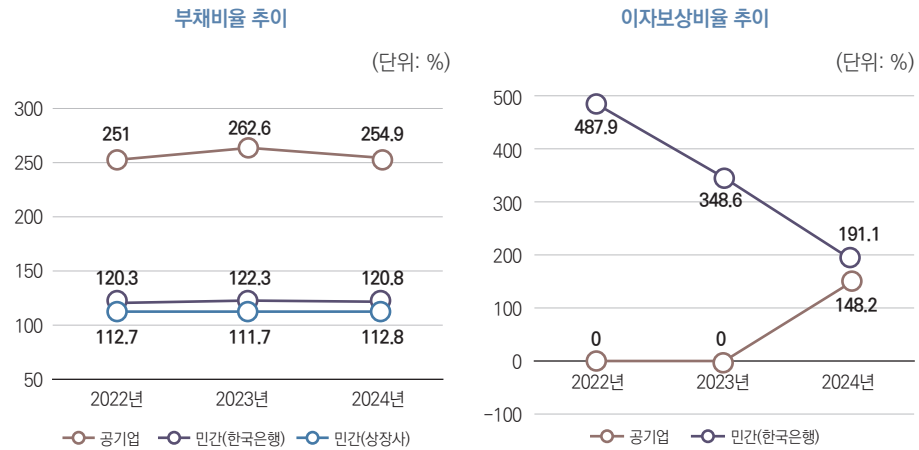
그림 15 공기업 수익성 지표 추이



출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4사업연도 결산실적」, 보도자료, 2025. 4. 2.

2024회계연도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여 안정성 지표가 일부 개선되었다. 공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해 회사채 발행이나 차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민간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높고 이자보상비율은 낮은 특징이 있다.

**그림 16** 공기업 안정성 지표 추이



출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4사업연도 결산실적」, 보도자료, 2025. 4. 2.

주: 2024회계연도 민간 이자보상비율은 2023회계연도 수치 적용  
출처: 한국은행, 「2023년기업경영분석」, 2024. 12.



## 02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안내(9~11월)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안내는 8월 초, 기획재정부 업무연락 포털 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본 교육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은 2024년 교육운영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가 높은 심화교육 및 실무교육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회계 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특수한 지분투자’ 등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과목은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고, 2025년부터 XBRL 기반 공공기관결산시스템(PIFRS)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실무교육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XBRL 및 PIFRS 작성기 사용 실무’ 교육은 공공기관 결산담당자의 XBRL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설되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실무자들의 결산 업무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3일 일정으로 구성된 본 교육은 총 4회차로 운영되며, 9~11월까지 대전(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1회, 서울(서울글로벌센터)에서 3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이며, 기타공공기관들의 교육 참여도 가능하다.



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교육포털(<https://www.kipf.re.kr/p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교육 일정

차수	지역	일정	시간	장소	수용인원
1차	대전	9. 10.(수) ~ 9. 12.(금)	3일(21시간)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장	100명
2차	서울	9. 17.(수) ~ 9. 19.(금)	3일(21시간)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100명
3차	서울	10. 22.(수) ~ 10. 24.(금)	3일(21시간)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100명
4차	서울	11. 5.(수) ~ 11. 7.(금)	3일(21시간)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100명

**표 2** 교육 커리큘럼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7.0H)	<b>K-IFRS 계정과목해설 -금융자산</b>	09:00~10:30	-금융자산 표시, 측정, 회계처리
	<b>K-IFRS 계정과목해설 -부채&amp;자본</b>	10:30~12:00	-채권발행 및 이자비용 인식, 상환 -총당부채 및 우발부채 회계처리 -자본의 세부 항목별 인식 및 측정
	<b>K-IFRS 계정과목해설 -수익</b>	13:00~14:00	-수익인식모형 -수익인식 회계처리
	<b>정부보조금</b>	14:00~15:30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주요 오류사례 및 FAQ
	<b>외부회계감사 주요 오류사례</b>	15:30~17:00	-주요 오류사례(자산, 부채, 손익 등)
2일차 (7.0H)	<b>K-IFRS 계정과목해설 -유무형자산 및 리스</b>	09:00~12:00	-유무형자산 측정, 감가상각, 손상 -리스 회계처리 및 주요 오류사례
	<b>종업원급여</b>	13:00~14:00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주요 오류사례
	<b>법인세회계</b>	14:00~15:30	-법인세 회계개요 -법인세주석 작성 과정 실습 -법인세 관련 주요 이슈사례
	<b>연결재무제표</b>	15:30~17:00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 -지분법 회계처리와의 차이 -연결 절차 실습 및 사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와의 차이
3일차 (7.0H)	<b>현금흐름표(작성실무)</b>	09:00~12:00	-현금의 범위 및 현금흐름 구분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간접법에 따른 현금흐름표 작성 -주석공시의 비현금거래
	<b>XBRL 및 PIFRS 작성기 사용 실무</b>	13:00~15:30	-XBRL 도입 배경 및 기본 개념 이해 -Taxonomy의 체계 및 특징 -PIFRS 작성기를 통한 결산서 작성실무
	<b>결산서 작성방법(실무)</b>	15:30~17:00	-회계처리, 결산, 주석 작성 유의사항

## 03 2023년 공익법인 재무 현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된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활용하여 2023회계연도 공익법인 재무 현황을 분석하였다.<sup>13)</sup>

### 가. 공익법인 현황

공익법인 사업유형은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로 구분<sup>14)</sup>되며 2023년 공익법인의 사업유형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2023년 공익법인 현황

(단위: 기관 수, %)

공익법인 사업유형	공익법인 수	
교육	1,949	16.3
문화	879	7.4
사회복지	3,371	28.2
의료	1,045	8.7
학술·장학	2,728	22.8
기타	1,979	16.6
합계	11,951	100.0

출처: 저자 작성

2023년 공익법인은 총 1만 1,951개<sup>15)</sup>로, 사회복지 분야가 3,371개(28.2%)로 가장 많고, 학술·장학(2,728개, 22.8%), 기타(1,979개, 16.6%) 분야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3) 공익법인 공시 및 공개시스템에서 2024년 6월 5일 조회(2022년 자료). 2025년 1월 14일 조회(2023년 자료)

14) 표준서식의 공익사업유형인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로 구분

15) 공공기관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자산, 수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일반 공익법인과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함(2023년 기준 중앙공공기관 143개, 지방공공기관 582개로 총 730개 제외). 이하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익법인으로 분석 수행

## 나. 공익법인 자산·부채 현황

**표 2** 공익법인 자산·부채 총규모

(단위: 억원, %)

유형	자산				부채			
	2022	2023	증감	증감률	2022	2023	증감	증감률
교육	1,147,635	1,201,114	53,479	4.7	244,011	255,395	11,385	4.7
문화	86,214	90,962	4,749	5.5	7,845	8,213	368	4.7
사회복지	210,568	221,174	10,606	5.0	41,898	44,835	2,937	7.
의료	269,545	280,246	10,701	4.0	153,298	161,523	8,225	5.4
학술·장학	234,915	260,194	25,279	10.8	32,908	33,634	726	2.2
기타	478,485	477,106	△1,379	△0.3	345,105	341,027	△4,078	△1.2
총계	2,427,363	2,530,798	103,435	4.3	825,064	844,627	19,562	2.4

출처: 저자 작성

2023년 공익법인의 총자산은 253조 7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3,435억원(4.3%) 증가하였다. 공익법인 총부채는 84억 4,6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562억원(2.4%) 증가하였다.

2023년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은 2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억원(5.3%) 감소하였으며, 평균 부채는 71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7.0%) 감소하였다. 총자산과 총부채는 증가하였으나, 공익법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자산과 평균부채는 감소하였다.

**표 3** 공익법인 자산·부채 평균 규모

(단위: 억원, %)

유형	자산				부채			
	2022	2023	증감	증감률	2022	2023	증감	증감률
교육	645	624	△21	△3.3	137	133	△4	△3.3
문화	117	106	△12	△9.8	11	10	△1	△10.5
사회복지	71	67	△5	△6.6	14	14	△1	△4.9
의료	259	268	9	3.5	148	155	7	4.9
학술·장학	93	96	3	3.3	13	12	△1	△4.7
기타	282	245	△37	△13.2	204	175	△29	△14.0
총평균	226	214	△12	△5.3	77	71	△5	△7.0

출처: 저자 작성

유형별로는 교육 분야 공익법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토지와 건물의 영향으로 평균자산이 624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은 평균 자산이 67억원으로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이 많았다. 평균부채의 경우 기타와 의료 유형에서 평균부채가 각각 175억원, 155억원으로 규모가 컸고, 문화와 학술·장학 유형에서 각각 10억원, 12억원으로 작게 나타났다.

### 1) 자산 세부 분석

2023년 공익법인 자산은 토지 49조 9,908억원(19.8%), 건물 55조 6,553억원 (22.0%), 주식 및 출자지분 17조 1,763억원(6.8%), 금융자산 87조 1,079억원 (34.4%), 기타자산 43조 1,495억원(17.0%)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공익법인 자산 세부 계정 현황

(단위: 억원, %)

자산	2022		2023		증감	증감률
	규모	비중	규모	비중		
토지	490,539	20.2	499,908	19.8	9,370	1.9
건물	548,517	22.6	556,553	22.0	8,036	1.5
주식및출자지분	150,172	6.2	171,763	6.8	21,591	14.4
금융자산	834,548	34.4	871,079	34.4	36,531	4.4
기타자산	403,587	16.6	431,495	17.0	27,908	6.9
자산총계	2,427,363	100	2,530,798	100	103,435	4.3

출처: 저자 작성

유형별로는 교육과 의료분야 공익법인에서 토지와 건물의 비중이 높았고, 문화분야 공익법인에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학술·장학,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의 경우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공익법인 유형별 자산 세부 계정 현황(비중)

(단위: %)

유형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합계
교육	27.2	30.8	3.5	23.1	15.4	100.0
문화	10.4	7.5	35.4	24.3	22.4	100.0
사회복지	16.4	21.8	12.2	35.4	14.2	100.0
의료	26.9	33.8	0.5	12.7	26.1	100.0
학술·장학	10.0	6.5	21.9	53.6	8.1	100.0
기타	5.6	4.2	2.4	66.7	21.0	100.0
총계	19.8	22.0	6.8	34.4	17.0	100.0

출처: 저자 작성

## ● 자산 계정별 상위 기관 현황

자산의 계정과목별 금액 기준 상위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다.

### ① 토지 상위 5개 공익법인

토지 계정 금액이 큰 공익법인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3조 86억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5개 기관 모두 교육분야 공익법인이라는 특징이 있다.

**표 6** 2023년 토지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토지 금액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	30,086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육	13,997
3	(학)홍익학원	교육	8,885
4	(학교)가톨릭학원	교육	7,242
5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교육	5,910

출처: 저자 작성

### ② 건물 상위 5개 공익법인

건물 계정 금액이 큰 공익법인은 (학)연세대학교로, 2조 3,473억원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5개 기관 모두 교육분야 공익법인이라는 특징이 있다.

**표 7** 2023년 건물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건물 금액
1	(학)연세대학교	교육	23,473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	14,053
3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교육	12,523
4	(학교)가톨릭학원	교육	10,699
5	(학)이화학당	교육	10,140

출처: 저자 작성

### ③ 주식 및 출자지분 상위 5개 공익법인

주식 및 출자지분 계정 금액이 큰 공익법인은 (학)포항공과대학교로, 1조 6,776억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 8** 2023년 주식 및 출자지분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주식 및 출자지분 금액
1	(학)포항공과대학교	교육	16,776
2	(재)삼성문화재단	문화	15,210
3	(재)유한재단	학술·장학	8,314
4	(복)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복지	5,691
5	(재)삼성꿈장학재단	학술·장학	5,184

출처: 저자 작성

### ④ 금융자산 상위 5개 공익법인

금융자산 계정 금액이 큰 공익법인은 중소기업중앙회로, 21조 7,615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로 인해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 9** 2023년 금융자산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금융자산 금액
1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217,615
2	(학)연세대학교	교육	19,709
3	대한소방공제회	기타	15,599
4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	14,522
5	(학)한양학원	교육	10,720

출처: 저자 작성

### ⑤ 기타자산 상위 5개 공익법인

기타자산 계정 금액이 큰 공익법인은 중소기업중앙회로, 6조 5,990억원의 기타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표 10** 2023년 기타자산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기타자산 금액
1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65,990
2	(학)연세대학교	교육	10,683
3	(학)일송학원	교육	9,666
4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	8,388
5	(복)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복지	7,971

출처: 저자 작성

## 2) 부채 세부 분석<sup>16)</sup>

2023년 공익법인 부채는 유동부채 28조 2,003억원(33.4%), 비유동부채 47조 4,524억원(56.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조 8,149억원(10.4%)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1** 공익법인 부채 세부 현황

(단위: 억원, %)

부채	2022		2023		증감	증감률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유동부채	299,556	35.5	282,003	33.4	△17,553	△5.9
비유동부채	444,384	52.6	474,524	56.2	30,140	6.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1,125	9.6	88,149	10.4	7,024	8.7
부채총계	825,064	100	844,675	100	19,611	2.4

출처: 저자 작성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동부채 비중은 학술·장학이 64.7%로 높은 반면, 비유동부채 비중은 의료와 기타가 각각 40.9%와 90.9%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중은 문화 및 사회복지가 각각 30.4% 및 26.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2** 공익법인 유형별 부채 세부 현황(비중)

(단위: %)

유형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합계
교육	48.6	31.1	20.3	100
문화	50.8	18.8	30.4	100
사회복지	46.9	26.9	26.2	100
의료	51.7	40.9	7.4	100
학술·장학	64.7	15.9	19.4	100
기타	8.1	90.9	1.0	100
총계	33.4	56.2	10.4	100

출처: 저자 작성

16) 결산서류 표준공시 자료는 부채 세부내역이 없어 부채 세부 분석은 재무상태표를 활용함. 표준공시와 재무상태표의 부채총계에 일부 차이 있음

## ● 부채 계정별 상위 기관 현황

부채의 계정과목별 금액 기준 상위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다.

### ① 외부차입 상위 5개 공익법인

외부차입 금액이 큰 기관은 (학)이화학당으로, 외부차입(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의 합)이 5,267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13** 2023년 외부차입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외부차입
1	(학)이화학당	교육	5,267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기타	4,760
3	(학)중앙대학교	교육	2,517
4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교육	2,132
5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의료	1,805

출처: 저자 작성

###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상위 5개 공익법인

부채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가장 큰 기관은 (학)연세대학교로, 1조 882억원을 계상하였다. 교육분야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2023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학)연세대학교	교육	10,882
2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	8,196
3	(학)일송학원	교육	6,842
4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교육	4,572
5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육	3,058

출처: 저자 작성

## 다. 공익법인 수익·비용 현황

2023년 공익법인의 총수익은 130조 6,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 6,673억원 (6.2%) 증가하였으며, 총비용은 129조 1,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3,637억원 (7.8%) 증가하였다.

**표 15** 공익법인 수익·비용 총규모

(단위: 억원, %)

유형	수익				비용			
	2022	2023	증감	증감률	2022	2023	증감	증감률
교육	569,744	627,464	57,719	10.1	569,665	626,381	56,715	10.0
문화	19,468	22,480	3,012	15.5	17,992	20,266	2,275	12.6
사회복지	175,552	191,099	15,547	8.9	169,681	186,656	16,976	10.0
의료	237,787	224,755	△13,033	△5.5	219,193	226,751	7,558	3.4
학술·장학	92,217	103,999	11,783	12.8	84,437	98,410	13,973	16.5
기타	134,825	136,470	1,645	1.2	137,087	133,227	△3,859	△2.8
<b>총계</b>	<b>1,229,593</b>	<b>1,306,267</b>	<b>76,673</b>	<b>6.2</b>	<b>1,198,054</b>	<b>1,291,691</b>	<b>93,637</b>	<b>7.8</b>

출처: 저자 작성

2023년 공익법인의 평균 수익은 111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3.4%) 감소하였으며, 평균 비용은 1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1.9%) 감소하였다.

**표 16** 공익법인 수익·비용 평균 규모

(단위: 억원, %)

유형	평균 수익				평균 비용			
	2022	2023	증감	증감률	2022	2023	증감	증감률
교육	319	327	7	2.3	319	326	7	2.2
문화	26	26	△1	△2.0	24	23	△1	△4.4
사회복지	60	58	△2	△3.1	58	56	△1	△2.1
의료	229	216	△13	△5.6	211	218	7	3.3
학술·장학	36	38	2	5.3	33	36	3	8.8
기타	79	70	△10	△12.0	81	68	△13	△15.5
<b>총평균</b>	<b>115</b>	<b>111</b>	<b>△4</b>	<b>△3.4</b>	<b>112</b>	<b>109</b>	<b>△2</b>	<b>△1.9</b>

출처: 저자 작성

교육 분야 공익법인의 평균 수익이 327억원으로 가장 큰데 이는 학교의 등록금수익으로 인한 효과이며, 의료 분야 공익법인도 의료수익으로 인해 평균 수익이 216억원으로 큰 편이다.

### 1) 수익 세부 분석

2023년 공익법인 수익은 사업수익 124조 927억원(95.0%), 사업외수익 4조 4,858억원(3.4%),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2조 482억원(1.6%)으로 구성된다.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7조 5,838억원(6.5%) 증가하였고, 사업외수익은 919억원(2.0%) 감소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은 1,754억원(9.4%) 증가하였다.

**표 17** 공익법인 수익 세부 현황

(단위: 억원, %)

수익	2022		2023		증감	증감률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사업수익	1,165,088	94.8	1,240,927	95.0	75,838	6.5
사업외수익	45,776	3.7	44,858	3.4	△919	△2.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8,728	1.5	20,482	1.6	1,754	9.4
수익총계	1,229,593	100	1,306,267	100	76,673	6.2

출처: 저자 작성

#### ● 사업수익 세부 분석

공익법인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부문의 기부금수익 8조 3,791억원(6.8%), 보조금수익 28조 4,617억원(22.9%), 회비수익 2조 669억원(1.7%), 기타수익 50조 3,733억원(40.6%)과 기타사업부문의 기타수익 34조 8,117억원(28.1%)으로 구성된다. 기부금수익은 전년 대비 7,402억원(9.7%) 증가하였고, 보조금수익은 1조 9,518억원(7.4%), 회비수익은 261억원(1.3%), 기타수익은 4조 4,231억원(9.6%) 증가하였다. 기타사업부문의 기타수익도 4,427억원(1.3%) 증가하였다.

**표 18** 공익법인 사업수익 세부 현황

(단위: 억원, %)

사업수익	2022		2023		증감	증감률
<b>■ 공익목적사업부문</b>						
기부금수익	76,388	6.6	83,791	6.8	7,402	9.7
보조금수익	265,099	22.8	284,617	22.9	19,518	7.4
회비수익	20,409	1.8	20,669	1.7	261	1.3
기타수익	459,502	39.4	503,733	40.6	44,231	9.6
<b>■ 기타사업부문</b>						
기타수익	343,691	29.5	348,117	28.1	4,427	1.3
<b>사업수익 총계</b>	<b>1,165,088</b>	<b>100</b>	<b>1,240,927</b>	<b>100</b>	<b>75,838</b>	<b>6.5</b>

출처: 저자 작성

유형별로는 의료와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기부금과 보조금수익이 사업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문화 67%, 기타 55%, 학술·장학 52%, 사회복지 48%)을 차지하였고, 의료와 교육은 기타수익(의료 99%, 교육 74%)의 비중이 높았다.

**표 19** 공익법인 유형별 사업수익 세부 현황(비중)

(단위: %)

유형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합계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공익목적사업기타수익	기타사업기타수익	
교육	2.5	21.3	2.6	31.0	42.6	100
문화	23.9	43.2	1.1	16.0	15.7	100
사회복지	17.4	30.1	1.0	46.0	5.5	100
의료	0.5	1.1	0.0	81.7	16.8	100
학술·장학	6.2	45.9	0.4	22.7	24.8	100
기타	19.1	36.1	2.1	25.4	17.3	100
<b>총계</b>	<b>6.8</b>	<b>22.9</b>	<b>1.7</b>	<b>40.6</b>	<b>28.1</b>	<b>100</b>

출처: 저자 작성

## ● 사업수익 계정별 상위 기관 현황

사업수익의 계정과목별 금액 기준 상위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부금수익 상위 5개 공익법인

기부금수익이 큰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2023년 8,305억원의 기부금을 인식하였다.

**표 20** 2023년 기부금수익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기부금수익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	8,305
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타	4,195
3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사회복지	3,137
4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사회복지	2,042
5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기타	1,961

출처: 저자 작성

### ② 보조금수익 상위 5개 공익법인

보조금수익이 큰 기관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2023년 5,709억원의 보조금을 인식하였다.

**표 21** 2023년 보조금수익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보조금수익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	5,709
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타	3,929
3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장학	3,309
4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장학	2,988
5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회복지	2,862

출처: 저자 작성

### ③ 회비수익 상위 5개 공익법인

회비수익이 큰 기관은 (학)이화학당으로, 2023년 2,145억원의 회비수익을 인식하였다. 학교법인이 등록금수익을 회비수익으로 분류하면서 상위 기관에 학교법인이 다수 포함되었다.

**표 22** 2023년 회비수익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회비수익
1	(학)이화학당	교육	2,145
2	(학)동원육영회	교육	1,725
3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교육	1,370
4	학교법인상명학원	교육	1,050
5	신용회복위원회	기타	748

출처: 저자 작성

### ④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수익 상위 5개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부문의 기타수익이 큰 기관은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 2023년 3조 942억원의 기타수익을 인식하였다.

**표 23** 2023년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수익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수익
1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	30,942
2	(복)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복지	19,946
3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9,794
4	한국과학기술원	교육	9,475
5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의료	8,604

출처: 저자 작성

### ⑤ 기타사업부문 기타수익 상위 5개 공익법인

기타사업부문의 기타수익이 큰 기관은 (학)연세대학교로, 2023년 3조 7,650억원의 기타수익을 인식하였다. 교육분야 공익법인 중 대학병원을 보유하는 법인이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수익을 기타사업부문 기타수익으로 분류하면서 상위기관에 포함되었다.

**표 24** 2023년 기타사업부문 기타수익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기타사업부문 기타수익
1	(학)연세대학교	교육	37,650
2	(학교)가톨릭학원	교육	34,631
3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교육	16,834
4	(학)인제학원	교육	12,698
5	(학)동은학원	교육	12,438

출처: 저자 작성

## 2) 비용 세부 분석

2023년 공익법인 비용은 사업비용 121조 8,661억원(94.3%), 사업외비용 3조 4,888억원(2.7%),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3조 8,142억원(3.0%)으로 구성된다.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9조 5,636억원(8.5%) 증가하였고, 사업외비용은 1,073억원(3.2%) 증가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3,072억원(7.5%) 감소하였다.

**표 25** 공익법인 비용 세부 현황

(단위: 억원, %)

비용	2022		2023		증감	증감률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사업비용	1,123,025	93.7	1,218,661	94.3	95,636	8.5
사업외비용	33,815	2.8	34,888	2.7	1,073	3.2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41,214	3.4	38,142	3.0	△3,072	△7.5
비용 총계	1,198,054	100	1,291,691	100	93,637	7.8

출처: 저자 작성

## ● 사업비용 기능별 분석

공익법인 비용 중 사업비용에 대한 세부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업비용은 기능별로 공익목적사업부문의 사업수행비용 77조 4,920억원(63.6%), 일반관리비용 11조 9,810억원(9.8%), 모금비용 3,779억원(0.3%)과 기타사업부문의 기타비용 32조 152억원(26.3%)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전년 대비 사업수행비용은 7조 8,333억원(11.2%) 증가, 일반관리비용은 3,064억원(2.6%) 증가하였고, 모금비용은 15억원(0.4%) 감소하였다. 기타비용은 1조 4,253억원(4.7%) 증가하였다.

**표 26** 공익법인 사업비용 기능별 세부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비용 기능별 분류	2022		2023		증감	증감률
<b>■ 공익목적사업부문</b>						
사업수행비용	696,586	62.0	774,920	63.6	78,333	11.2
일반관리비용	116,745	10.4	119,810	9.8	3,064	2.6
모금비용	3,795	0.3	3,779	0.3	△15	△0.4
<b>■ 기타사업부문</b>						
기타비용	305,899	27.2	320,152	26.3	14,253	4.7
<b>사업비용 총계</b>	<b>1,123,025</b>	<b>100</b>	<b>1,218,661</b>	<b>100</b>	<b>95,636</b>	<b>8.5</b>

출처: 저자 작성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사회복지유형에서 사업수행비용과 모금비용의 비중이 높았고, 일반관리비용의 비중이 낮았다. 의료와 문화유형에서 일반관리비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모금비용은 사회복지, 기타, 문화 순으로 높았으며, 기타비용의 경우 교육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27** 공익법인 유형별 사업비용 기능별 세부 현황(비중)

(단위: %)

유형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합계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기타비용	
교육	50.6	8.8	0.1	40.5	100
문화	72.7	16.5	0.2	10.6	100
사회복지	87.0	7.2	1.0	4.8	100
의료	67.4	16.8	0.1	15.7	100
학술·장학	73.5	5.8	0.1	20.7	100
기타	74.7	8.3	0.9	16.1	100
<b>총계</b>	<b>63.6</b>	<b>9.8</b>	<b>0.3</b>	<b>26.3</b>	<b>100</b>

출처: 저자 작성

## ● 사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상위 기관 현황

사업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였을 때 금액 기준 상위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수행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사업수행비용이 가장 큰 기관은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 2023년 2조 9,773억원의 사업수행비용을 인식하였다.

**표 28** 2023년 사업수행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사업수행비용
1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	29,773
2	(복)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복지	19,989
3	한국과학기술원	교육	9,953
4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9,628
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	8,368

출처: 저자 작성

### ② 일반관리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일반관리비용이 가장 큰 기관은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으로, 2023년 8,494억원의 일반관리비용을 인식하였다.

**표 29** 2023년 일반관리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일반관리비용
1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의료	8,494
2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	의료	2,934
3	(학)건국대학교	교육	2,640
4	창원한마음병원	의료	2,252
5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교육	2,173

출처: 저자 작성

### ③ 모금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모금비용이 가장 큰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2023년 256억원의 모금비용을 인식하였다.

**표 30** 2023년 모금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모금비용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	256
2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사회복지	253
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	사회복지	231
4	(학)학산학원	교육	215
5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기타	197

출처: 저자 작성

### ④ 기타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기타비용이 가장 큰 기관은 (학)연세대학교로, 2023년 3조 5,713억원의 기타비용을 인식하였다. 기타비용 상위 기관이 모두 교육 유형이라는 특징이 있다.

**표 31** 2023년 기타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기타사업부문 기타비용
1	(학)연세대학교	교육	35,713
2	(학교)가톨릭학원	교육	34,783
3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교육	15,376
4	(학)인제학원	교육	12,955
5	(학)동은학원	교육	11,613

출처: 저자 작성



### ● 사업비용 성격별 분석<sup>17)</sup>

사업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분배비용<sup>18)</sup> 12조 6,543억원(10.4%), 인력비용 52조 281억원(42.7%), 시설비용 9조 6,824억원(7.9%), 기타비용 47조 5,004억원(39.0%)으로, 분배비용은 전년 대비 2,520억원(2.0%) 증가하였고, 인력비용은 3조 5,328억원(7.3%), 시설비용은 1조 1,085억원(12.9%), 기타비용은 4조 6,693억원(10.9%) 증가하였다.

**표 32** 공익법인 사업비용 성격별 세부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비용 성격별 분류	2022		2023		증감	증감률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분배비용	124,023	11.0	126,543	10.4	2,520	2.0
인력비용	484,953	43.2	520,281	42.7	35,328	7.3
시설비용	85,739	7.6	96,824	7.9	11,085	12.9
기타비용	428,311	38.1	475,004	39.0	46,693	10.9
<b>사업비용 총계</b>	<b>1,123,025</b>	<b>100</b>	<b>1,218,652</b>	<b>100</b>	<b>95,627</b>	<b>8.5</b>

출처: 저자 작성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분배비용의 경우 기타(26.3%), 문화(21.2%), 사회복지(18.2%), 학술·장학(16.3%) 순으로 높았고, 인력비용의 경우 의료(55.9%), 교육(45.0%), 사회복지(44.6%) 분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와 교육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분배비용은 낮은 반면, 인력비용은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33** 공익법인 유형별 사업비용 성격별 세부 현황(비중)

(단위: %)

유형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교육	6.9	45.0	10.0	38.1	100
문화	21.2	25.9	8.3	44.6	100
사회복지	18.2	44.6	5.8	31.4	100
의료	0.6	55.9	7.2	36.4	100
학술·장학	16.3	23.7	5.9	54.1	100
기타	26.3	23.1	4.3	46.4	100
<b>총계</b>	<b>10.4</b>	<b>42.7</b>	<b>7.9</b>	<b>39.0</b>	<b>100</b>

출처: 저자 작성

17) 결산서류 표준공시 자료는 비용의 성격별 자료가 구분되지 않아 운영성과표를 활용함. 표준공시와 운영성과표의 비용총계에 일부 차이 있음

18)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포함)으로, 성격상 사업수행비용에서만 발생함

2023년 사업비용의 기능별 구분과 성격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34** 사업비용 기능별·성격별 구분

(단위: 억원, %)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사업비용 총계
사업수행비용	126,543	324,803	55,775	267,896	775,017
일반관리비용	-	63,275	17,171	39,357	119,803
모금비용	-	1,133	112	2,538	3,783
기타사업비용	-	131,070	23,765	165,213	320,049
<b>사업비용 총계</b>	<b>126,543</b>	<b>520,281</b>	<b>96,824</b>	<b>475,004</b>	<b>1,218,652</b>

출처: 저자 작성

### ● 사업비용의 성격별 분류 상위 기관 현황

사업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였을 때, 금액 기준 상위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다.

#### ① 분배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분배비용이 가장 큰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2023년 7,446억 원을 분배비용으로 인식하였다. 분배비용 상위 기관은 모두 사회복지와 기타 유형이었다.

**표 35** 2023년 분배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분배비용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	7,446
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타	5,122
3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회복지	3,192
4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사회복지	2,581
5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기타	2,514

출처: 저자 작성

### ② 인력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인력비용이 가장 큰 기관은 (학)연세대학교로, 2023년 1조 8,630억원을 인력비용으로 인식하였다.

**표 36** 2023년 인력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인력비용
1	(학)연세대학교	교육	18,630
2	(학교)가톨릭학원	교육	17,527
3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	12,343
4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교육	10,971
5	(복)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복지	8,430

출처: 저자 작성

### ③ 시설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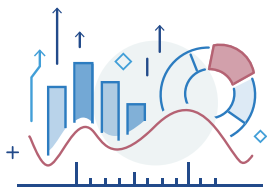
시설비용이 가장 큰 기관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2023년 3,196억원을 시설비용으로 인식하였다.

**표 37** 2023년 시설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시설비용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	3,196
2	(학)연세대학교	교육	2,888
3	(학교)가톨릭학원	교육	2,460
4	(학)한양학원	교육	2,395
5	(복)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복지	2,169

출처: 저자 작성



#### ④ 기타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기타비용이 가장 큰 기관은 (학)연세대학교로, 2023년 2조 2,174억원을 기타비용으로 인식하였다.

**표 38** 2023년 기타비용 상위 5개 공익법인

(단위: 억원)

순번	법인명	공익사업유형	기타비용
1	(학)연세대학교	교육	22,174
2	(학교)가톨릭학원	교육	16,627
3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	15,085
4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10,916
5	(복)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복지	9,456

출처: 저자 작성

## 라. 공익법인 사업 유형별 재무분석

공익법인의 유형별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규모별 분포를 통해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 1) 자산 규모별 비중

자산의 경우 의료와 교육 유형에서 자산 규모가 큰 기관의 비중(100억원 이상: 각각 52.1%, 42.5%)이 높았으며, 사회복지와 문화 유형은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것(5억원 미만: 각각 25.5%, 44.3%)으로 나타났다.

**표 39**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자산 규모

(단위: 기관 수, %)

자산 규모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
5억원 미만	387(19.9)	389(44.3)	858(25.5)	33(3.2)	397(14.6)	839(42.4)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34(12.0)	218(24.8)	1,087(32.2)	58(5.6)	1,221(44.8)	539(27.2)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25.7)	182(20.7)	1,145(34.0)	410(39.2)	740(27.1)	369(18.6)

**표 39** 의 계속

자산 규모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637(32.7)	77(8.8)	267(7.9)	491(47.0)	334(12.2)	190(9.6)
1,000억원 이상	191(9.8)	13(1.5)	14(0.4)	53(5.1)	36(1.3)	42(2.1)
공익법인 수	1,949(100)	879(100)	3,371(100)	1,045(100)	2,728(100)	1,979(100)

출처: 저자 작성

## 2) 부채 규모별 비중

부채의 경우 의료유형에서 부채 규모가 큰 기관의 비중(100억원 이상: 36.6%) 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부채 규모 5억원 미만인 기관의 비중이 과반 이상이였다.

**표 40**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부채 규모

(단위: 기관 수, %)

부채 규모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
5억원 미만	1,302(66.8)	719(81.8)	2,893(85.8)	74(7.1)	2,300(84.3)	1,492(75.4)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59(13.3)	98(11.1)	300(8.9)	133(12.7)	255(9.3)	279(14.1)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98(10.2)	47(5.3)	143(4.2)	456(43.6)	119(4.4)	147(7.4)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56(8.0)	15(1.7)	31(0.9)	356(34.1)	49(1.8)	54(2.7)
1,000억원 이상	34(1.7)	-	4(0.1)	26(2.5)	5(0.2)	7(0.4)
공익법인 수	1,949(100)	879(100)	3,371(100)	1,045(100)	2,728(100)	1,979(100)

출처: 저자 작성



### 3) 수익 규모별 비중

수익의 경우 의료와 교육 유형에서 수익 규모가 큰 기관의 비중(100억원 이상: 각각 36.5%, 30.6%)이 높게 나타났다. 수익 규모가 3억원 미만인 기관의 비중은 학술·장학(60.0%)에서 특히 높았다.

**표 41**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수익 규모

(단위: 기관 수, %)

수익 규모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
3억원 미만	468(24.0)	302(34.4)	734(21.8)	52(5.0)	1,636(60.0)	522(26.4)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54(13.0)	257(29.2)	863(25.6)	54(5.2)	521(19.1)	616(31.1)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54(18.2)	215(24.5)	1,200(35.6)	282(27.0)	366(13.4)	504(25.5)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78(14.3)	50(5.7)	336(10.0)	275(26.3)	79(2.9)	148(7.5)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16(26.5)	53(6.0)	225(6.7)	345(33.0)	106(3.9)	161(8.1)
1,000억원 이상	79(4.1)	2(0.2)	13(0.4)	37(3.5)	20(0.7)	28(1.4)
공익법인 수	1,949(100)	879(100)	3,371(100)	1,045(100)	2,728(100)	1,979(100)

출처: 저자 작성

### 4) 비용 규모별 비중

비용도 수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의료, 교육 유형에서 비용 규모가 큰 기관의 비중(100억원 이상: 각각 37.4%, 30.9%)이 높게 나타났다. 비용 규모가 3억원 미만인 기관은 학술·장학(62.0%) 유형에서 특히 높았다.

**표 42** 공익법인 사업유형별 비용 규모

(단위: 기관 수, %)

비용 규모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
3억원 미만	377(19.3)	297(33.8)	715(21.2)	43(4.1)	1,690(62.0)	537(27.1)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52(12.9)	271(30.8)	890(26.4)	51(4.9)	498(18.3)	607(30.7)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92(20.1)	212(24.1)	1,201(35.6)	281(26.9)	351(12.9)	509(25.7)

표 42 의 계속

비용 규모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26(16.7)	45(5.1)	330(9.8)	279(26.7)	71(2.6)	145(7.3)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21(26.7)	53(6.0)	222(6.6)	352(33.7)	98(3.6)	155(7.8)
1,000억원 이상	81(4.2)	1(0.1)	13(0.4)	39(3.7)	20(0.7)	26(1.3)
<b>공익법인 수</b>	<b>1,949(100)</b>	<b>879(100)</b>	<b>3,371(100)</b>	<b>1,045(100)</b>	<b>2,728(100)</b>	<b>1,979(100)</b>

출처: 저자 작성





## 공지사항



## 구독 안내

-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 발간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 구독을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mailto:gafsc@kipf.re.kr)



##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440 Fax 044.414.2570

